2025회계연도
국방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국 방 부	소관
병 무 청	소관
방위사업청	소관

2026. 8.

국 방 위 원 회

【 목 차 】

Ⅰ. 소관부처 회부 결산 ····· 1

Ⅱ. 심사경과 ····· 3

Ⅲ. 제안설명의 요지 ····· 5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11

Ⅴ. 대체토론 요지 ····· 339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340

Ⅶ. 심사결과 ····· 341

Ⅷ. 부대의견 ····· 342

Ⅸ. 소수의견의 요지 ····· 344

Ⅹ. 시정요구사항 ····· 345

2025회계연도 국방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6. 8. .

국방위원회

Ⅰ. 소관부처 회부 결산

1. 국방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 일반회계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 기금결산

- 군인연금기금
- 군인복지기금

2. 병무청 소관

○ 세입세출결산

- 일반회계

3. 방위사업청 소관

○ 세입세출결산

- 일반회계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6. 5. 29.

2. 회부일자 : 2026. 7. 1.

3. 상정 및 의결일자

가. 국방부 소관

-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6. 8.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6. 8. 24.)
  상정, 축조심사, 원안의결
-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26. 8. 31.)
  상정, 소위원회 심사보고, 원안의결

나. 병무청 소관

-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6. 8.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6. 8. 25.)
  상정, 축조심사, 원안의결
-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26. 8. 31.)
  상정, 소위원회 심사보고, 원안의결

다. 방위사업청 소관

-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6. 8.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6. 8. 25.)
  상정, 축조심사, 원안의결
-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26. 8. 31.)
  상정, 소위원회 심사보고, 원안의결

Ⅲ. 제안설명의 요지

1. 국방부 소관

(국방부장관 안 규 백)

2025회계연도 국방부 세출예산 현액은 46조 3,914억 원이며, 43조 8,567억 원을 집행하고, 7,963억 원은 이월, 1조 7,384억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688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3,343억 원은 수납하고, 2,313억 원은 미수납하였으며 32억 원은 불납결손 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4조 2,111억 원이며, 이 중 42조 6,691억 원을 집행하였고, 7,685억 원은 이월, 7,735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5,92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077억 원이며, 이 중 미군기지 이전사업 등에 5,860억 원을 지출하였고, 143억 원은 이월, 74억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6,15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5,726억 원이며, 이 중 군사시설 이전 등에 6,016억 원을 지출하였고, 135억 원은 이월, 9,575억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군인연금기금은 4조 6,682억 원을 조성하여, 연금지급금 등으로 4조 5,514억 원을 지출하고, 1,168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1조 1,786억 원을 조성하여, 복지시설 운영 및 전세자금 이자지원 등에 6,776억 원을 지출하고, 5,010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2. 병무청 소관

(병무청장 홍 소 영)

존경하는 진성준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2025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병무청은 병역자원이 감소되는 환경에서 적정충원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서 이루어진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2억 5천 6백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9억 1천 8백만원으로 이 중 7억 1천 2백만원을 수납하였고 2억 6백만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체납 과태료 4천 8백만원, 징계부가금 2천 1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731억 9천 6백만원으로, 이 중 97.4%인 4,610억 3천 8백만원을 집행하였고, 121억 5천 8백만원(2.6%)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사회복무이행지원, 병역의무자지원 사업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재무 결산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자산은 전년 대비 63억 2천 7백만원 증가한 3,866억 2천 5백만원이고, 부채는 전년 대비 567억 6천 7백만원 증가한 2,330억 9천만원입니다.

3.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사업청장 이 용 철)

존경하는 진성준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위사업청에 주시는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방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한 해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 첨단전력을 확보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방산생태계 구축과 방산수출 확대를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을 첨단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개혁과, 급변하는 미래 전장환경 대비를 위해 AI, 국방반도체 등 첨단기술 확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위사업청의 노력의 과정인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241억 원이며 9,904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5,163억 원을 수납하였고 4,740억 원은 미수납 상태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FMS 운용수익금과 출연금 반납액 등 경상이전 수입이며 주요 미수납 내역은 소송·중재 등으로 인해 징수가 지연된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 등의 위약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8조 545억 원입니다. 이 중 92.9%인 16조 7,714억 원을 집행하였고, 7,499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332억 원은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말 기준 자산은 전년 대비 2조 744억 원 증가한 31조 7,151억 원이고 부채는 전년 대비 6,369억 원 증가한 1조 1,371억 원입니다.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국방부 소관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1. 결산 총괄

○ 202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재정구조는 일반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그리고 군인연금기금과 군인복지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음.

가. 세입 및 기금수입 결산

○ 202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입 및 기금수입 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액 8조 189억원보다 3,626억원 감소한 7조 6,563억원을 징수결정하였고, 그 중 7조 3,741억원이 수납되고 2,761억원이 미수납되었음.

[2025년도 세입 및 기금수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일반회계	329,476	568,842	334,345	3,200	231,297	381,782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572,137	595,784	592,906	9	2,868	358,268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1,500,274	620,467	615,122	1,954	3,392	530,336
군인연금기금	4,605,166	4,682,876	4,668,174	95	14,607	5,099,683
군인복지기금	1,011,823	1,188,378	1,163,520	923	23,935	983,287
합 계	8,018,876	7,656,347	7,374,067	6,181	276,099	7,353,356

주: 여유자금회수 및 운용액 순계 기준

주: 기금 예산액은 수정액 기준

○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5,688억원으로 예산액 3,295억원보다 2,393억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중 3,343억원이 수납되었음. 징수결정액은 재산수입(145억원), 경상이전수입(4,829억원),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703억원), 기금전입금(11억원)임.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예산액 5,721억원보다 237억원이증가한 5,958억원을 징수결정하고 5,929억원을 수납하였음.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예산액 1조 5,003억원보다 8,798억원이 감소한 6,205억원을 징수결정하고 6,151억원을 수납하였음.

○ 군인연금기금은 예산액 4조 6,052억원보다 777억원이 증가한 4조 6,829억원을 징수결정하고 4조 6,682억원을 수납하였으며,

군인복지기금은 예산액 1조 118억원보다 1,766억원이 증가한 1조 1,884억원을 징수결정하고 1조 1,635억원을 수납하였음.

나. 세출 및 기금지출 결산

○ 2025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출 및 기금지출 결산 총액은 49조 6,883억원으로 일반회계 42조 6,691억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5,860억원,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6,016억원, 군인연금기금 4조 6,682억원, 군인복지기금 1조 1,635억원임.

[2025년도 세출 및 기금지출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2026년 예산
		전년도이월액	이·전용	이체					
일반회계	43,540,241	670,865	±683,865	-	44,211,107	42,669,084	768,514	773,509	45,898,906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572,137	35,554	±19,673	-	607,691	585,969	14,318	7,404	358,268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500,274	72,321	±3,997	-	1,572,594	601,601	13,521	957,472	530,336
군인연금기금	4,605,166	-	±172,708	-	4,605,166	4,668,174	-	3,519	5,099,683
군인복지기금	1,011,823	5,379	±4,357	-	1,017,202	1,163,520	11,146	56,426	983,287
합 계	51,229,641	784,119	±711,893	-	52,013,760	49,688,348	807,499	1,798,331	52,870,480

주: 여유자금회수 및 운용액 순계 기준

○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4조 2,111억원으로 그 중 42조 6,691억원을 지출하였고, 7,685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735억원임.

○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077억원으로 그 중 5,860억원을 지출하였고, 143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4억원임.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경우 세출예산 현액은 1조 5,726억원으로 6,016억원을 지출하였으며, 135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9,575억원은 불용하였음.

○ 군인연금기금은 지출 예산현액 4조 6,052억원보다 630억원이 증가한 4조 6,682억원을 지출하였고, 군인복지기금은 지출 예산현액 1조 172억원보다 1,463억원이 증가한 1조 1,635억원을 지출하였음.

2. 재원별 결산 내역

가. 일반회계

(1) 세 입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5,688억 4,200만원 중 3,343억 4,500만원이 수납되었고, 32억원이 불납결손, 2,312억 9,7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 재산 수입	24,226	14,502	13,086	22	1,394
- 관유물대여료	22,388	12,076	10,661	22	1,393
- 기타재산수입	1,838	2,426	2,425	0	1
□ 경상이전수입	228,813	482,945	251,388	3,178	228,379
- 벌금 및 몰수금 등	5,223	20,022	5,069	0	14,953
- 변상금 및 위약금	28,713	42,655	13,938	1,157	27,560
- 기타 경상이전수입	194,877	420,268	232,381	2,021	185,866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71,114	70,251	68,727	0	1,524
- 병원 수입	17,498	20,066	20,066	0	0
- 면허료 및 수수료	812	668	668	0	0
- 수업료	570	546	546	0	0
- 항공항만수입	2,293	3,067	3,067	0	0
- 기타 잡수입	49,941	45,904	44,380	0	1,524
□ 관유물매각대	4,179	0	0	0	0
- 토지매각대	4,179	0	0	0	0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군인복지기금전입금 등)	1,144	1,144	1,144	0	0
합 계	329,476	568,842	334,345	3,200	231,297

○ 미수납액 2,312억 9,700만원 중 대부분은 경상이전수입(2,283억 7,900만원)이며, 이 외 재산수입(13억 9,400만원),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15억 2,400만원)으로 이루어짐.

(2) 세 출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현액은 44조 2,111억원이고 그 중 42조 6,69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7,685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7,735억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A)	지출액 (B)	B/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세출	43,540,241	670,865	±369,191	±314,674	-	44,211,107	42,669,084	96.5	768,514	773,509

○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44조 2,111억원은 당초 예산액 43조 5,402억원 보다 6,709억원이 증가한 규모임.

전년도 이월액 6,709억원은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설계 지연, 감리방식 변경에 따른 계약체결 지연, 대관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

등에 따른 이월 2,890억원, 군수지원 및 협력과 관련하여 업체 납품지연 및 계약지연, 정산서류 및 업체대금 미청구 등 행정조치 지연 등에 의한 이월 1,481억원,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차수별 계약기간으로 인한 계약금액 이월, 해외파병부대 재보급수송일정 지연 등에 따른 이월 971억원, 급식 및 피복과 관련하여 보훈·복지단체 소송, 방탄복 방탄판 원자재 수급문제, 전투복 및 방탄헬멧 납품 지연으로 인한 이월 143억원, 과학화훈련 체계계약지연 및 생산기간 부족, 시설사업 공기연장 및 절대공기 부족 등에 따른 이월 677억원, 동원훈련장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부족, 전투장구 납품업체 대금청구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 95억원, 의무장비 및 물자 생산지연, 의무시설 사업 연도말 계약으로 인한 이월 120억원, 국방급여정보체계 등 신규 체계구축사업 계약이행지연, 시설연계 통신공사 시설본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월 153억원, 기타 사유로 인한 이월액 179억원 등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7,685억원이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오염토·지뢰발견 등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대관협의 지연, 선금지급 저조 등에 따른 이월 2,909억원, 군수지원 및 협력과 관련하여 계약유출 및 민원 등에 따른 계약지연, 정산서류 및 업체대금 미청구 등

행정조치 지연 등에 의한 이월 2,690억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25. 10. 1.~11. 12.) 영향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이월 증가, 해외파병부대 재보급 용역 정산일 미도래 등에 따른 이월 589억원, 급식 및 피복과 관련하여 계약업체 원자재 수급 지연, 부품 확보 지연 등에 따른 연내 납품 제한, 업체 생산능력 부족 및 대금청구 지연 등에 따른 이월 491억원, 과학화훈련체계계약 지연 및 생산기간 부족, 교육시설 대관협의 지연 및 공기 부족 등에 따른 431억원, 육군 스마트부대 확대 구축 등 신규 체계구축사업 계약이행지연, 시설연계 통신공사 시설 본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 261억원, 동원훈련장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부족, 훈련장비 납품 및 대금청구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 85억원, 의무장비 및 의무시설 사업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이월 64억원, 기타 사유로 인한 이월액 165억원 등임.

○ 이용액 3,147억원은 삼청교육대·제주4.·3사건·여순사건 등 과거사 관련 판결 증가에 따른 배상금 1,719억원, 입영 예상인원 대비 추가 입영에 따른 병내일준비지원사업 부족 재정지원금 727억원,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대법원판결 선고에 따른 배상금 532억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24. 12. 3.)에 따른 보상금 신청기간 연장으로 인한 부족 보상금 80억원 등임.

○ 전용액 3,692억원은 군무원 편성 운영률 대비 실제 운영률 초과 등에 따른 군무원인건비 부족분 1,476억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1,393억원,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4.9% 인상) 271억원, 경기 북부 등 집중호우로 인한 경계시설 등 재난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139억원, 배상금 및 보상금 부족분 95억원 등임.

○ 불용액 7,735억원은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관련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잔액 등 2,956억원, 군수지원 및 협력 관련 업체 이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집행잔액 등 1,520억원,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군수분야 준공 정산잔액 등 756억원, 급식 및 피복 분야에서 민간조리원 채용률 저조로 인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불용, 급식 및 피복 구매 집행잔액 등 539억원, 군인, 군무원 등 인건비 집행잔액 507억원 등임.

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1) 세 입

○ 2025회계연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5,957억 8,400만원 중 5,929억 600만원이 수납되었고, 9백만원이 불납결손, 28억 6,8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5년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재산수입	407	1,182	805	0	377
- 토지대여료	210	1,045	668	0	377
- 기타재산수입	197	137	137	0	0
□ 경상이전수입	198	4,091	1,597	9	2,484
- 변상금	153	1,639	152	3	1,483
- 기타경상이전수입	45	2,452	1,445	6	1,001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577	208	201	0	7
- 기타잡수입	577	208	201	0	7
□ 관유물매각대(토지매각대)	35,900	19,746	19,746	0	0
□ 전년도 이월금	0	35,554	35,554	0	0
□ 전년도 세계잉여금	52	0.03	0.03	0	0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535,003	535,003	535,003	0	0
합 계	572,137	595,784	592,906	9	2,868

(2) 세 출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6,076억 9,100만원이며, 5,859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년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미군기지이전사업	14,522	3,946	±2,762	18,468	17,990	17	461	8,278
- 평택기지이전사업	14,522	3,946	±2,762	18,468	17,990	17	461	8,278
□ 미군기지이전지원	47,660	31,608	±16,911	79,268	64,484	14,301	483	48,209
- 환경조사 및 치유	45,349	31,527	±16,911	76,876	62,821	14,055	0	46,694
- 기타이전지원	2,311	81	0	2,392	1,663	246	483	1,515
□ 공자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432,400	0	0	432,400	432,400	0	0	223,700
□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77,555	0	0	77,555	71,095	0	6,460	78,081
합 계	572,137	35,554	±19,673	607,691	585,969	14,318	7,404	358,268

○ 미군기지이전사업 예산현액은 184억 6,800만원으로 평택기지이전사업(국고채무부담행위 포함)비로 179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군기지이전지원사업 예산현액은 792억 6,800만원으로 환경조사 및 치유, 기타이전지원 사업비로 644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자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예산현액 4,324억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예산현액 775억 5,500만원은 710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음.

다. 국방 ·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 세 입

○ 2025회계연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6,204억 6,700만원 중 6,151억 2,200만원이 수납되었고, 19억 5,400만원이 불납결손, 33억 9,2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5년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재산 수입	60	149	149	0	0
- 기타재산수입	60	149	149	0	0
□ 경상이전 수입	175	2,843	705	1,954	184
- 기타경상이전수입	175	2,843	705	1,954	184
□ 관유물매각대	1,222,221	239,394	236,187	0	3,208
- 건물매각대	3,521	850	850	0	0
- 토지매각대	1,218,700	238,544	235,337	0	3,208
□ 전년도 이월금	0	72,320	72,320	0	0
□ 전년도 세계잉여금	264,775	305,761	305,761	0	0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3,043	0	0	0	0
- 기금예탁원금회수	0	0	0	0	0
- 기금예탁이자수입	13,043	0	0	0	0
- 예수금	0	0	0	0	0
합 계	1,500,274	620,467	615,122	1,954	3,392

(2) 세 출

○ 2025회계연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5,725억 9,500만원이며, 6,016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년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군사시설이전사업	652,763	71,060	+1,628 -1,634	723,817	484,436	12,872	226,509	428,001
□ 사유재산정리	70,154	1,261	±1,478	71,415	70,036	649	729	70,401
□ 공자기금예탁	767,234	0	0	767,234	37,000	0	730,234	19,814
□ 예수원금상환	885	0	±885	885	885	0	0	-
□ 예수이자상환	9,238	0	6	9,244	9,244	0	0	12,120
합 계	1,500,274	72,321	±3,997	1,572,595	601,601	13,521	957,473	530,336

○ 군사시설이전사업 예산현액은 7,238억 1,700만원으로 4,844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유재산정리사업 예산현액은 714억 1,500만원으로 700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음. 공자기금 예탁은 예산현액 7,672억 3,400만원 중 세입대상 토지매각 지연으로 370억원을 집행하였고, 공자기금 예수원금상환 예산현액 8억 8,500만원 및 예수이자상환 예산현액 92억 4,4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음.

라. 군인연금기금

(1) 개 요

○ 2025회계연도 군인연금기금의 운용 결산총액은 당초 예산액 4조 6,051억 6,600만원보다 630억 800만원이 증가한 4조 6,681억 7,400만원임. 예산 대비 운용액이 증가한 것은 주로 여유자금 회수 규모가 당초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임.

여유자금 회수액을 포함한 총수입액 4조 6,681억 7,400만원 중 여유자금운용액(1,167억 4,900만원)을 제외한 순수지출총액은 4조 5,514억 2,500만원임.

[2025년도 군인연금기금의 수입·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결산액 (B)	증 감	
		당초	수정(A)		(B-A)	%
수입 (자금조달)	자체수입	853,067	853,067	809,447	△43,620	△5.1
	정부내부수입	3,702,094	3,702,094	3,702,094	-	-
	여유자금회수	50,005	50,005	156,633	106,628	213.2
합 계		4,605,166	4,605,166	4,668,174	63,008	1.4
지출 (자금운용)	사업비	4,381,883	4,554,591	4,551,089	△3,502	△0.1
	기금운영비	353	353	336	△17	△4.8
	여유자금운용	222,930	50,222	116,749	66,527	132.5

주: 여유자금회수 및 운용액 순계 기준

(2) 내 용

○ 수입액 4조 6,681억 7,400만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 자체수입은 8,094억 4,700만원으로, 재산수입이 549억 4,900만원, 기여금 등 경상이전수입이 7,544억 9,800만원임.

- 정부내부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조 7,020억 9,400만원이며,

- 여유자금 회수는 1,566억 3,300만원으로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565억 400만원, 한국은행예치금회수 1억 2,900만원임.

○ 지출액 4조 6,681억 7,400만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 사업비인 군인연금지급으로 4조 5,510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고,

- 기금운영비로 3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여유자금 운용은 1,167억 4,900만원으로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1,166억 7,300만원, 한국은행예치금 7,600만원임.

마. 군인복지기금

(1) 개 요

○ 2025회계연도 군인복지기금의 운용 결산총액은 당초 예산액 1조 118억 2,300만원보다 1,516억 9,700만원이 증가한 1조 1,635억 2,000만원임. 예산현액 대비 운용액이 증가한 이유는 여유자금 운용이 계획 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임.

여유자금 예치액을 포함한 총수입액 1조 1,635억 2,000만원 중 여유자금 운용 지출액(5,843억 3,500만원)을 제외한 지출총액은 5,791억 8,400만원임.

[2025년도 군인복지기금의 수입·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결산액 (B)	증 감	
		당초	수정(A)		(B-A)	%
수입 (자금조달)	자체수입	532,613	532,613	624,467	91,854	17.2
	정부내부수입	308,075	308,075	151,835	△156,240	△50.7
	여유자금회수	171,135	171,135	387,217	216,082	126.3
합 계		1,011,823	1,011,823	1,163,520	151,697	15.0
지출 (자금운용)	사업비	568,795	570,535	516,358	△54,177	△9.5
	정부내부지출	62,609	62,826	62,826	0	0.0
	여유자금운용	380,419	378,462	584,335	205,873	54.4

주: 여유자금회수 및 운용액 순계 기준

(2) 내 용

○ 수입액 1조 1,635억 2,000만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 자체수입은 6,244억 6,700만원으로, 재산수입이 1,130억 2,900백만원, 복지시설운영수입이 4,772억원 5,300만원, 경상이전수입 및 융자원금회수 341억 8,500만원임.

- 정부내부수입은 1,518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70억 5,500만원, 주거지원보증금 수납금 844억원 7,100만원, 공자기금예탁이자수입 3억 900만원임.

- 여유자금회수는 금융기관예치금회수 등으로 3,872억원 1,700만원을 수납하였음.

○ 지출액 1조 1,635억 2000만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 장병복지향상사업, 전세자금융자, 학자금대부 등의 사업비로 5,163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 정부내부지출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에 따른 이자지급액 등으로 628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음.

- 한편, 여유자금운용은 5,843억원 3,500만원으로 주거지원보증금 반환금 983억 8,400만원, 금융기관 예치로 4,859억원 5,100만원을 지출하였음.

3. 재무제표 분석

○ 국방부의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중앙관서 전반의 자산·부채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가. 재정상태표

○ 2025회계연도 국방부의 자산은 287조 8,467억원으로 전년대비 8조 2,142억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전년대비 6조 9,025억원이 증가한 287조 1,954억원이며, 순자산은 6,513억원으로 나타남.

○ 자산은 금융자산 1조 9,526억원, 유·무형자산 278조 1,308억원, 기타자산 7조 7,634억원 등으로 구성됨. 자산은 전기말 대비 8조 2,142억원(2.9%) 증가한 것으로 이는 주로 군수품 도입 및 시설자산 취득 등 일반유형자산이 7조 663억원(2.6%) 증가하였기 때문임.

○ 부채는 차입부채 10조 270억원, 충당부채 276조 1,212억원 등으로 구성됨. 부채는 전기말 대비 6조 9,025억원(2.5%) 증가한 것으로 이는 주로 물가상승율 변동 등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등 충당부채가 8조 709억원 증가(3.0%)한 결과임. 그 결과 순자산은 전년대비 1

조 3,117억원 증가하여 6,513억원을 기록함.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A)	2024년(B)	증 감	
			A-B	증감률
자 산 합 계(a)	2,878,467	2,796,325	82,142	2.9
금융자산	19,526	17,870	1,656	9.3
유·무형자산	2,781,308	2,710,399	70,909	2.6
기타자산	77,634	68,056	9,578	14.1
부 채 합 계(b)	2,871,954	2,802,929	69,025	2.5
차입부채	100,270	105,728	△5,458	△5.2
충당부채	2,761,212	2,680,503	80,709	3.0
기타부채	10,472	16,698	(6,226)	△37.3
순 자 산(a-b)	6,513	△6,604	13,117	△198.6

나. 재정운영표

○ 본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수익은 8조 3,681억원으로 전년대비 7,180억원 증가하였으며, 비용은 64조 6,01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5,634억원 증가하였음.

○ 수익은 이전수익 14억원, 국가운영수익 8조 3,667억원으로 구성됨. 전년대비 7,180억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주로 기타국가운영수익 1조 3,296억원 증가, 자산처분이익 5,326억원 감소 등이 반영된 결과임.

○ 비용은 이전비용 2조 9,390억원, 국가운영비용 61조 6,620억원으로 구성됨. 전년대비 1조 5,634억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주로 연금비용 9,617억원, 인건비 8,632억원 증가, 감가상각비 4,029억원 감소 등이 반영된 결과임.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억원, %)

	2025년(A)	2024년(B)	증 감	
			A-B	비 율
수익(a)	83,681	76,501	7,180	9.4
Ⅰ. 이전수익	14	20	△6	△30.0
Ⅱ. 국가운영수익	83,667	76,481	7,186	9.4
비용(b)	646,010	630,376	15,634	2.5
Ⅲ. 이전비용	29,390	22,851	6,539	28.6
Ⅳ. 국가운영비용	616,620	607,525	9,095	1.5
재정운영결과(b-a)	562,329	553,875	8,454	1.5

주: 재정운영결과는 원가(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것으로 재정운영결과가 (+)이면 손실, (-)이면 이익을 의미함.

다. 순자산변동표

○ 국방부의 기말순자산은 전년도보다 1조 3,117억원 증가한 6,513억원으로 이는 본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52조 1,869억원, 조정항목이 5조 3,577억원 발생하였고,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56조 2,329억원 발생한 결과임.

○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53조 3,931억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1조 2,06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398억원, 자산재평가이익 △768억원 및 보험수리적손익 5조 4,713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5조 3,577억원의 조정이 발생하였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A)	2024년(B)	증 감	
			A-B	비 율
Ⅰ. 기초순자산	△6,604	94,071	△100,675	△107.0
Ⅱ. 재정운영결과	562,329	553,875	8,454	1.5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521,869	494,823	27,046	5.5
Ⅳ. 조정항목	53,577	△41,623	95,200	△228.7
Ⅴ.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6,513	△6,604	13,117	△198.6

라. 현금흐름표

○ 국가결산 개편에 따라 2025회계연도부터 현금흐름표를 신규 작성하였으며, 경상적인 정부운영을 나타내는 운영활동, 자산의 취득 및 처분활동을 나타내는 투자활동, 자금의 조달 및 이전 등 재무활동와 관련된 계정과목의 증감을 나타내는 재무활동으로 이루어짐.

○ 국방부의 현금흐름은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조 9,447억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조 1,690억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741억원으로 구성됨.

[현금흐름표 요약]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A)	2024년(B)	증 감	
			A-B	비 율
Ⅰ.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9,447	-	-	-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455,053	-	-	-
2.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355,606	-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1,690	-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54,466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46,156	-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741	-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6,201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3,942	-	-	-

1. 세출결산 총괄검토

○ 정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에서 국방부 소관 예산현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8.5%, 2022년 7.6%, 2023년 9.1%, 2024년 9.5%, 2025년 8.9%로 2023년, 2024년 증가 추세였으나 2025년에는 감소했음.

2025년도의 경우 정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498조 4,420억원)에서 국방부 소관 예산현액(44조 2,111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에 비해 0.6%p 감소한 8.9%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정부 전체 예산현액이 2024년에 비해 10.4% 증가한 것에 비해 국방부 소관 예산현액은 3.5% 증가한데 기인한 것임.

[최근 5년간 정부 대비 국방부 결산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현액	정부전체 (%)	4,258,810 (100.0)	4,978,955 (100.0)	4,490,672 (100.0)	4,515,605 (100.0)	4,984,420 (100.0)
	국방부 (%)	362,587 (100.0)	379,310 (100.0)	409,571 (100.0)	427,286 (100.0)	442,111 (100.0)
	비 중 (%)	8.5	7.6	9.1	9.5	8.9
지출액	정부전체 (%)	4,177,207 (98.1)	4,850,492 (97.4)	4,058,863 (90.4)	4,354,305 (96.4)	4,910,097 (98.5)
	국방부 (%)	347,394 (95.8)	364,804 (96.2)	389,731 (95.2)	414,575 (97.0)	426,691 (96.5)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월액	정부전체	26,477	27,933	20,056	14,416	20,866
	(%)	(0.6)	(0.6)	(0.4)	(0.3)	(0.4)
	국방부	9,515	8,596	9,672	6,709	7,685
	(%)	(2.6)	(2.3)	(2.4)	(1.6)	(1.7)
불용액	정부전체	55,127	100,531	411,753	146,885	53,457
	(%)	(1.3)	(2.0)	(9.2)	(3.3)	(1.1)
	국방부	5,678	5,909	10,168	6,002	7,735
	(%)	(1.6)	(1.6)	(2.5)	(1.4)	(1.8)
이체 및 이·전용액	정부전체	18,801	34,049	18,352	31,229	18,909
	(%)	(0.4)	(0.7)	(0.4)	(0.7)	(0.4)
	국방부	4,916	6,529	3,036	5,222	6,389
	(%)	(1.4)	(1.7)	(0.7)	(1.2)	(1.5)

주: 일반회계 기준
자료: 국방부

○ 2025년도 국방부 세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6.5%로서 전년대비 0.5p% 감소하였으며, 정부 전체 세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인 98.5%에 비하여 2.0%p 낮음.

○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의 경우 국방부는 2025년도 1.7%로 정부 전체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인 0.4%에 비해 1.3%p 높음[1].

○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의 경우 국방부는 2025년도 1.8%로 정부 전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인 1.1%보다 0.7%p 높은데, 이는 2024년 대비 국방부의 불용액 비율은 0.4%p 증가했고, 정부 전체 불용액 비율은 2.2%p 낮아졌기 때문임.

1) **국방부** 이월액은 **정부부처 전체 이월액 중 36.8%를 차지**하여 **전 정부부처 중 이월액 규모가 가장 큼**.

○ 예산의 이월, 불용, 이·전용 등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국방부는 이월, 불용, 이·전용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예측 및 관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음.

○ 한편, 2025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현액 대비 이체 및 이·전용 비율은 1.5%로서 정부 전체 예산현액 대비 이체 및 이·전용 비율인 0.4%에 비해 1.1%p 높으며, 2024년 대비 0.3%p 증가하였음.

「국가재정법」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보장하고 행정부가 집행단계에서 예산을 임의로 운용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의 이체 및 이·전용은 이에 대한 예외이므로, 가급적 그 규모를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세출 프로그램별 검토

○ 국방부 일반회계는 병력운영과 전력유지 부문으로 나누어지고, 12개 프로그램, 67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됨.

병력운영에는 급여정책, 급식 및 피복, 기금 전출금 프로그램이 있으며, 전력유지에는 국방정보화,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군수지원 및 협력, 군인사 및 교육훈련,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예비전력관리, 책임운영기관 운영,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국방행정지원이 있음.

[최근 5년간 연도별 프로그램 집행실적]

(단위: 억원, %)

사 업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급여정책	예산현액	153,159	159,588	171,427	179,173	186,277
	집행액	153,144	158,677	168,042	177,179	185,763
	집행률(%)	100.0	99.4	98.0	98.9	99.7
급식 및 피복	예산현액	25,056	26,134	26,959	26,498	25,262
	집행액	24,320	25,316	26,071	25,899	24,232
	집행률(%)	97.1	96.9	96.7	97.7	95.9
기금 전출금	예산현액	30,798	32,242	33,921	37,176	40,758
	집행액	30,471	32,225	33,921	37,130	40,758
	집행률(%)	98.9	99.9	100	99.9	100
국방정보화	예산현액	6,514	7,449	7,575	7,834	8,730
	집행액	6,246	7,165	7,250	7,585	8,209
	집행률(%)	95.9	96.2	95.7	96.8	94.0

사 업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현액	5,083	7,679	12,015	15,388	18,737
	집행액	4,658	6,162	9,898	14,941	18,587
	집행률(%)	91.6	80.3	82.4	97.1	99.2
군수지원 및 협력	예산현액	61,642	61,455	66,426	66,292	66,630
	집행액	57,330	58,366	62,360	63,920	62,420
	집행률(%)	93.0	95.0	93.9	96.4	93.7
군인사 및 교육훈련	예산현액	8,300	9,082	9,942	9,403	8,978
	집행액	7,377	8,350	8,896	8,252	8,060
	집행률(%)	88.9	91.9	89.5	87.8	89.8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예산현액	47,662	50,356	54,584	56,115	55,783
	집행액	42,294	44,896	47,920	51,971	49,918
	집행률(%)	88.7	89.2	87.8	92.6	89.5
예비전력관리	예산현액	1,737	2,027	2,863	2,537	2,632
	집행액	1,271	1,695	2,568	2,249	2,396
	집행률(%)	73.2	83.6	89.7	88.6	91.0
책임운영기관 운영	예산현액	2,072	2,193	2,386	2,559	2,611
	집행액	1,853	2,063	2,256	2,499	2,490
	집행률(%)	89.4	94.1	94.5	97.7	95.4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예산현액	12,216	13,477	13,889	16,080	16,815
	집행액	10,501	12,661	13,248	14,987	15,469
	집행률(%)	86.0	93.9	95.4	93.2	92.0
국방행정지원	예산현액	8,348	7,628	7,583	8,232	8,898
	집행액	7,928	7,229	7,301	7,963	8,388
	집행률(%)	95.0	94.8	96.3	96.7	94.3

자료: 국방부

○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의 12개 프로그램은 2021년에 비해 2025년 예산현액이 증가하였음.

○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프로그램은 2021년에 비해 2025년 예산현액이 368.6% 증가하여 총 12개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이는 병 봉급 인상과 관련된 병내일준비지원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임.

그 다음으로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사업은 예비군의 편성, 관리, 훈련 체계 등을 발전시켜 예비전력을 정예화시킴으로써 전시 즉시대응 동원지원체계 및 통합방위 작전 수행능력 확립을 위한 ‘예비전력관리’ 프로그램이 51.5%,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 37.6%, ‘국방정보화’ 프로그램 34%, ‘기금 전출금’ 프로그램 32.3%, ‘책임운영기관’ 프로그램 26%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이에 반해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은 0.8%, ‘국방행정지원’ 프로그램은 6.6%, ,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은 8.1%, ‘군인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8.2%,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프로그램 17%, ‘급여정책’ 프로그램은 21.6% 증가하여 2021년 대비 2025년 예산현액 증가율 평균인 21.9% 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2025년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프로그램의 예산현액 대비 평균 집행률은 96.5%인데 이는 전년 대비 0.5p% 감소한 것으로, 이는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프로그램, 예비전력관리 프로그램 등 일부 프로그램의 집행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군수지원 및 협력,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등 주요 프로그램의 집행률이 전년대비 부진했기 때문임.

○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프로그램은 의무시설개선(78.1%→95.4%), 재해보상금(73.8%→91%),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98.5%→99.9%)의 집행률 개선으로 2024년 대비 집행률이 2.1%p 상승하였음.

○ 이에 반해,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과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프로그램의 집행률은 2024년 대비 각각 2.7%p(96.4%→93.7%), 3.1%p(92.6%→89.5%) 하락하였음.

이는 업체 생산능력 부족에 따른 납품지연·계약해제, 오염토·지뢰발견 등 현장 여건 변동, 행정조치 지연 등에 따른 이월 및 불용액 과다에 따른 것으로 향후 동 예산 편성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1. 일반회계

가. 총괄 검토

(1) 국방예산 편성 관련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2025년도 국방예산 예산액은 61조 2,469억원으로,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 43조 4,007억원과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 17조 8,46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최근 5년간 국방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52조 8,401억원에서 2025년 61조 2,469억원으로 확대되었음.

[최근 5년간 국방예산 편성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528,401	546,112	570,143	594,244	612,469
전력운영비	358,437	379,195	400,974	417,712	434,007
방위력개선비	169,964	166,127	169,169	176,532	178,462

자료: 국방부

○ 다만,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국방예산 증가율을 상회하는 연도가 다수 나타남에 따라,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021년 2.38%에서 2025년 2.30%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국내총생산 및 국방예산 등 현황]

(단위: 억원, %, %p)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국내총생산 (GDP)	22,219,129	23,237,815	24,086,874	25,568,574	26,633,426
전년대비 GDP 증가율	7.94	4.58	3.65	6.15	4.16
국방예산	528,401	546,112	570,143	594,244	612,469
전년대비 국방예산 증가율	5.36	3.35	4.40	4.23	3.07
전년대비 GDP 증가율-국방예산 증가율	2.58	1.23	-0.75	1.92	1.10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	**2.38**	**2.35**	**2.37**	**2.32**	**2.30**

자료: 국방부, 한국은행

○ 한편, 정부는 2025년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국방비를 GDP 대비 3.5%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2]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7.54% 증액된 65조 8,642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음.

2)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 2025.11.14. 외교부.

현행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과 비교할 때, 3.5% 수준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국방예산의 약 1.5배 규모로 증액 편성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른 상당한 재원 투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 국가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재원 조달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GDP 대비 국방예산을 3.5%로 증액하는 목표연도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 정부의 국방예산 확대 편성 기조에 있어서, 그 규모적 확대뿐만 아니라 예산 배분의 전략적 내실화가 요구됨. 미래 전장 환경과 한반도 안보 상황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분야에 국방예산을 집중 투자하여야 할 것임.

○ 첫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한 자주적 대응능력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2026년도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전년 대비 21.3% 증액된 8조 8,387억원으로 편성된 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하여 대응 태세를 완비할 수 있도록 투자 기조를 유지하여야 할 것임.

○ 둘째, AI·드론 등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전력 육성에 투자를 확대하여야 할 것임. 2026년도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관련 예산은 2025년 1,915억원 대비 10% 이상 증액된 2,161억원으로, 교육훈련 여건 조성 등 미래전력 구성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 셋째,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에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2026년 예산에 당직근무비 인상, 사다리차 이용료 신규 지원, 소령 및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우수한 국방인력 획득 및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국방부는 GDP 대비 3.5%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재정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한편, 예산의 단순한 수치적 증액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주국방 역량 강화, 첨단전력 투자, 장병 처우 개선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기조를 지속적으로 내실화하여야 할 것임.

(2) 국방비 미지급 사태 관련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회계연도는 일정 기간의 재정수입과 지출을 구분·정리하기 위한 예산의 기본 단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2조[3]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3조에서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이른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4]하고 있음.

○ 그런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국방예산에서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연말 미지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이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에서 총 5,002억원 규모의 미지급금이 발생함.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의 미지급금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미지급금은 2026년 2월 2일 기준 전액 집행 완료되었다는 입장임.

3) **「국가재정법」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4)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025회계연도 전력운영비 연말 미지급금 집행현황]

(단위: 억원)

프로그램명	미지급금	집행액 ('26.2.2. 기준)	잔액(집행률(%))
계	5,002	5,002	0 (100%)
○ 급식 및 피복	610	610	0 (100%)
○ 국방 정보화	223	223	0 (100%)
○ 군수지원 및 협력	2,203	2,203	0 (100%)
○ 군인사 및 교육훈련	178	178	0 (100%)
○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1,517	1,517	0 (100%)
○ 기타 국방행정지원 등	271	271	0 (100%)

자료: 국방부

○ 국방부에 따르면 자금배정 신청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재정경제부는 연말 국고 자금 소요 집중에 따라 국고계좌의 일시적 잔액 부족이 발생하면서 자금 지출이 제한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경비의 집행이 지연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또한 재정경제부는 해당 경비가 실질적으로 2025회계연도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임.

○ 2025회계연도 연말 미지급 관련 주요 일자별 경과는 다음과 같음.

[연말 미지급 관련 주요 일자별 경과]

일자	내용
’25. 12. 26.	기획재정부(국고과) 한국은행 국고계좌 잔액 부족으로 자금 배정 제한 통보(기획재정부 유선 통보)
’25. 12. 31.	회계연도 종료일(12.31.) 기준 최종 미집행금액 5,002억 원으로 확인
’26. 1. 5.	재정경제부[5](국고과) 협의(결산 조기 마감 후 자금 배정 협의)
’26. 1. 9.	일반회계 결산 마감, 자금 신청(국방부) 및 배정(재정경제부) * ’25년 사고이월 7,685억 원
’26. 1. 9.	각 군 및 기관에 자금 배정 및 지출 시작
’26. 2. 2.	5,002억 원 전액 집행 완료

자료: 국방부

○ 다만, 비록 최종적으로 미지급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회계연도 종료 시점까지 정상적인 자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재정 운영의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군수·시설·급식 및 피복 등 다수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피계약업체의 자금 운용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국가계약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지연손해금 발생 가능성 역시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병 처우와 직결되는 경비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 군 사기 및 운영 안정

5) 2026년 1월 2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기획재정부 소관 사무 중 예산 기획 부문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면서 설립됨.

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정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연말 국고자금 운용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필수적인 국방경비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 자금배정 원칙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국방부 역시 연말 자금집행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월별 자금 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집행관리 개선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세출

(1) 장교인건비(1101-151): 사이버전문사관 활용 제고 필요 등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장교인건비(1101-151)는 군인(장교)의 기본급 및 제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 2025년도 예산액 4조 8,659억 500만원에 이·전용 등(증) 185억 6,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조 8,844억 6,600만원 중 4조 8,676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167억 9,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장교인건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4,865,905	4,865,905	-	18,561	4,884,466	4,867,668	-	16,798	5,026,083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① 사이버전문사관 활용 제고 필요

○ 사이버전문사관은 사이버 분야에 특화된 학사장교의 일종으로서, 사이버전[6]에 대비하여 사이버위협 분석, 사이버보안, 포렌식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국방부는 사이버전문사관 획득을 위해 군-대학 간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전문사관 양성을 위한 대학별 선발 정원, 지원금 및 복무기간 등은 다음과 같음.

[사이버전문사관 양성을 위한 대학 계약학과 현황]

구 분	고려대학교(사이버국방학과)	세종대학교(사이버국방학과)
선 발 정 원	30명	20명
지 원 금	등록금 전액(1인당 약 4,000만원)	
지 원 기 간	4년 (8학기)	
양 성 교 육	졸업 후 (육군학생군사학교, 전문사관 과정, 7주)	
군 분 류	육군(24) : 해군(3) : 공군(3)	육군(20)
임 관 경 로	학사장교	
병 과	정보통신병과	
복 무 기 간	7년 (의무 3년 + 가산 4년)	

주: 계약학과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원하므로 의무복무기간이 가산(+4년)됨
자료: 국방부

6) 정보화 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정보전 등을 의미함.

○ 그러나 사이버전문사관은 양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등 상당한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약학과 졸업생의 임관율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의무복무 기간 종료 이후 장기복무로 전환되는 비율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사이버전문사관 임관 및 복무 현황7)]

연도	졸업	임관	복무중	전역
2016년	28명	27명	2명	25명
2017년	28명	26명	-	26명
2018년	30명	27명	5명	22명
2019년	29명	24명	23명	1명
2020년	29명	20명	18명	2명
2021년	27명	17명	17명	-
2022년	25명	13명	13명	-
2023년	23명	4명	4명	-
2024년	24명	5명	5명	-
2025년	24명	7명	7명	-
2026년	25명	9명	9명	

자료: 국방부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부터 2026년 사이 임관한 인원은 각각 4명, 5명, 7명, 9명으로 졸업생 수에 크게 못 미치며,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임관한 인원 중 장기복무 인원은 각각 2명, 0명, 5명으로, 임관 대비 장기복무율은 각각 7%, 0%, 19% 수준에 불과함.

7)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는 2012년에 설립하여 2016년부터 임관하였고, 세종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는 2025년에 설립하여 아직 임관자가 없으므로 당해 표의 인원은 전부 고려대학교 출신 임관 현황임.

임관하지 않은 졸업생들은 장학금을 반환한 후 민간 정보통신 분야 등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장학금에 대한 국고 환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군 계약학과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진로 선택으로 인해 사이버전문사관 양성에 공백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음.

○ 사이버전은 인적 자원의 전문성이 핵심 경쟁력에 해당하며, 해당 인력 양성에는 상당한 교육비 및 시간이 투입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된 인력이 장기적으로 군에 잔류하지 못하고 민간으로 이탈할 경우, 장학금·교육비 등 양성에 드는 재정투입 대비 효율성 저하 및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국방부는 사이버전문사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장기복무를 유도할 수 있는 보상체계 개선, 경력관리 지원 등 실효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국방부 직할부대장 보직 군별 균형편성 필요

○ 국방부 직할부대는 국방부가 직접 관리하는 부대로 2025년 기준 총 28개가 있으며, 그 구성 인력은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소속 군인과 군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비전투 분야 장군 직위 감축 및 문민화 확대를 추진하면서, 국방부 직할부대장 보직의 일부를 군무원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해 왔음.

○ 한편, 문민기반의 확대와 합동성 등을 포함한 군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을 위해 2007년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국방부 직할부대의 인력 편성에 있어 특정 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군별 균형을 유지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은 육군 : 해군 : 공군 = 3 : 1 : 1의 비율을 원칙[8]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2025년 말 기준 국방부 직할부대장 보직 현황을 보면 군무원을 제외한 전원이 육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해군·공군 소속 지휘관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법률에서 정한 군별 균형편성 원칙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

8)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제30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 ①장성급(將星級)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은 해군 및 공군은 같은 수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의 비율로 하여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장 소속 및 계급 현황]

('25년 말 기준)

연번	부대명	부대장 소속	부대장 편성계급
1	국군방첩사령부	육군	중장
2	국군의무사령부	육군	준장
3	국군복지단	군무원	2급
4	계룡대근무지원단	군무원	2급
5	국군재정관리단	군무원	2급
6	국방부근무지원단	육군	준장
7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군무원	2급
8	국방정보본부	육군	중장
9	국방부조사본부	공석(직전 육군)	소장
10	국방시설본부	공석(직전 육군)	소장
11	국방정신전력원	군무원	2급
12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군무원	2급
13	합동군사대학교	군무원	2급
14	국군체육부대	군무원	2급
15	국방출판지원단	군무원	3급
16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군무원	2급
17	국방대학교	공석(직전 육군)	중장
18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	준장
19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군무원	2급
20	국방부검찰단	육군	준장
21	군사법원	육군	대령
22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육군	준장
23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육군	준장
24	국군심리전단	육군	대령
25	국군수송사령부	육군	준장
26	사이버작전사령부	육군	소장
27	드론작전사령부	육군	소장
28	전략사령부	육군	중장

주: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대학교, 국방시설본부는 25년 말 기준 공석이나, 직전 지휘관은 육군 출신임
자료: 국방부

○ 이와 같은 특정 군 중심의 편중 현상은 합동성 강화를 지향하는 국방개혁의 기본 방향[9]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각 군의 전문성과 경험이 균형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 운영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군별 균형 편성 원칙이 실질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국방부 직할부대장 보직에 대한 인사 운영 방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군구조"**라 함은 국방 및 군사임무 수행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군사력의 조직 및 구성관계로서 **육군**·**해군**·**공군이 상호 관련되는 체계**를 말한다.
6. **"합동성"**이라 함은 첨단 과학기술이 동원되는 미래전쟁의 양상에 따라 총체적인 전투력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3조(군구조의 개선) ①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해군·공군본부 등 군 상부 조직은 문민기반 위에서 통합전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그 기능 및 조직을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2) 부사관인건비(1101-152): 기본급 과다 편성 관행 시정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부사관인건비(1101-152)는 군인(부사관)의 기본급 및 제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 2025년도 예산액 7조 182억 9,000만원에 이·전용 등(감) 2,605억 1,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조 7,577억 7,600만원 중 6조 7,530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47억 5,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부사관인건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7,018,290	7,018,290	-	△260,514	6,757,776	6,753,022	-	4,754	7,172,239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부사관인건비는 기본 보수 성격인 기본급과 일반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포함한 제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음.

○ 이 중 최근 3년간 기본급 집행 실적을 보면 매년 상당 규모의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이용·전용 및 조정되는 등 반복적인 감액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행률 또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부사관인건비 기본급여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C)	불용액	집행률 (C/A)
2023	4,536,032	△90,824	4,445,208	4,379,131	66,077	96.5
2024	4,649,844	△219,509	4,430,335	4,411,465	18,870	94.9
2025	4,735,757	△274,969	4,460,789	4,460,556	233	94.2

자료: 국방부

[최근 3년간 부사관인건비 기본급여 감액 조정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합계	이용	전용	조정
2023	△ 90,824	-	-	△ 90,824
2024	△219,509	△ 47,211	△ 78,588	△ 93,710
2025	△274,969	△ 86,521	△147,219	△ 41,230

자료: 국방부

○ 최근 3년간 부사관인건비 기본급의 이·전용 등 감액 규모는 2023년 908억 2,400만원, 2024년 2,195억 900만원, 2025년 2,749억 6,900만원으로, 감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이 반복적이고 대규모의 감액 조정이 발생하는 것은 부사관의 실제 운영률이 2023년 91.8%에서 2025년 83.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예산편성 운영률과 실제 운영률 간의 격차 또한 2023년 2.5%p에서 2025년 6.6%p로 점차 확대되고 있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상정한 인력 운용 수준이 실제와 점점 더 괴리된 결과 기본급 예산이 실제 소요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최근 3년간 부사관 예산편성 대비 실제 운영률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편성운영률	실제운영률	편성운영률	실제운영률	편성운영률	실제운영률
합계	**94.3%**	**91.8%**	**92.7%**	**87.7%**	**90.4%**	**83.8%**
원사	99.4%	98.8%	99.5%	99.0%	99.2%	98.3%
상사	94.9%	97.8%	93.9%	96.6%	94.2%	94.0%
중사	98.3%	98.2%	98.4%	97.7%	99.0%	96.3%
하사	89.6%	86.5%	87.1%	76.1%	82.7%	65.4%
임기제 부사관	86.4%	51.7%	75.1%	39.0%	54.0%	38.6%

주: (예산)편성운영률 - 부대계획 상 계급별 정원 대비 실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편성 기준으로 산정하는 인원
자료: 국방부

○ 또한 감액된 재원은 일부 장교, 군무원 등 인건비 부족분 보전에 활용되고 있으나, 상당 부분이 급여정책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배상금, 재난지원금 등 타 사업으로 이용되고 있음.

[연도별 부사관인건비 이용 내역 중 타 사업 이용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2025	이용	부사관인건비 (1101-152)	110-01	67,000	일반배상금 (7136-301)	310-02	과거사 소송 배상금 예산 지원
2025	이용	부사관인건비 (1101-152)	110-01	4,151	재난관리활동 (2337-301)	330-03	포천 오폭사고 주민지원금 등 지원
2025	이용	부사관인건비 (1101-152)	110-01	4,671	군무원채용 (2439-306)	210-02	군무원채용 고용부담금 예산 지원
2025	이용	부사관인건비 (1101-152)	110-01	8,00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7131-301)	310-01	특수임무수행자보상 예산 지원
2025	이용	부사관인건비 (1101-152)	110-01	10,914	병내일준비지원 (2242-304)	310-04	장병내일준비지원적금 예산 지원
2024	이용	부사관인건비 (1101-152)	110-01	43,430	일반배상금 (7136-301)	310-02	5·18 관련 사건 다수 판결으로 인한 배상금 부족분 지원
2024	이용	부사관인건비 (1101-152)	110-01	3,781	인사정책지원 (2439-306)	210-02	군무원 채용 고용부담금 부족분 지원

자료: 국방부

○ 인건비 예산은 인력 규모 및 보수체계에 따라 비교적 예측 가능성이 높은 성격의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용 내역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되지 않은 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사실상의 완충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반복적인 과다 편성 및 감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국가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국방부는 부사관인건비 기본급의 최근 집행 추이 및 감액 조정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소요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예산 편성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인건비 재원이 타 사업의 재원으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군무원인건비(1102-151): 사관학교 등 군무원 교수 비율 저조 부적정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군무원인건비(1102-151)는 군무원의 기본급 및 제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 2025년도 예산액 2조 6,744억 9,100만원에 이·전용 등 1,449억 1,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조 8,194억 800만원 중 2조 8,048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145억 4,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군무원인건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2,674,491	2,674,491	-	144,917	2,819,408	2,804,860	-	14,548	2,840,117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육·해·공군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교의 교수는 현역 장교 신분의 교수와 민간인 출신의 군무원 교수로 구분됨[10].

○ 각 교육기관별 군교수 정원 관련 규정은 국방부훈령인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에서 정하고 있음.

○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4조[11]는 2017년까지 군교수 전체 정원 중 군무원 교수의 비율을 40% 수준(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는 2020년까지 2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12-30」[12]에 의해 사관학교 교수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사관생도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우수한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한다는 정책적 취지에 의거한 것임.

○ 그러나 2025년 말 정원 기준 군무원 교수 비율을 보면, 육군사관

---

10) 예외적으로 국방대학교의 경우 특정직공무원 신분의 교수 역시 두고 있음.

11)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제4조(군교수 인력비율)** ① 각 교육기관의 군교수 정원은 현역과 군무원, 전임직군교수와 순환직군교수 및 교수사관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참모총장은 교육기관의 교수 비율을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2017년까지 군교수 전체 정원 중 현역교수의 정원은 100분의 60수준**으로 하고 **군무원 교수의 정원은 100분의 40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방대학교**는 **2020년까지 100분의 20이상 수준의 군무원 교수 정원을 유지**한다.

12) 「국방개혁 기본계획 12-30」, 2012. 국방부
미래전에 대비하는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제' 구축 - 우수 민간인력 활용 확대 내용 중 일부

학교 25.5%, 해군사관학교 26.7%, 공군사관학교 18.8%, 국군간호사관학교 10.3%, 육군3사관학교 7.6% 수준으로 국방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교육기관에서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5년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교수 신분별 구성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현역교수(장교)		군무원 교수		군무원 교수 비율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기준	현원 기준
육군사관학교	165	151	123	112	42	39	**25.5**	25.8
해군사관학교	105	74	77	52	28	22	**26.7**	29.7
공군사관학교	117	96	95	76	22	20	**18.8**	20.8
국군간호사관학교	29	28	26	25	3	3	**10.3**	10.7
육군3사관학교	105	79	97	71	8	8	**7.6**	10.1
국방대학교	61	57	28	26	7	5	20	16.1

주: 국방대학교는 현역교수, 군무원교수 외 특정직공무원 교수(정원 26명, 현원 26명)를 두고 있음
자료: 국방부

○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8년 조직진단을 통해 민간교수 운영방식을 기존 군무원뿐만 아니라 특정직 공무원까지 확대해 민간교수 비율을 5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특정직 교수 증원은 행정안전부 및 재정경제부 협의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하여 군무원 교수 비율을 4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추진하였음.

또한 2024년에는 '사관학교 우수교수 확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무원 교수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 이후, 현역교수의 군무원 교수 전환 시기를 재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임.

○ 군무원 교수 비율이 법령상 기준에 미달하는 현 상황은 국방개혁 정책에서 지향하는 비전투 분야의 문민화 확대 기조와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국방부는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4조에 따른 기준이 실질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군무원 교수 채용을 확대하고,

민간교수 확대 계획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사관학교 등의 인력 운용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기본급식(1231-301): 군급식 민간위탁사업 입찰 관련 세부기준 마련 필요 등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기본급식(1231-301)은 양질의 급식 제공을 통한 장병의 체력 및 기본 전투력을 유지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1조 6,843억 9,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100만원과 이·전용 등(증) 132억 6,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6,977억 100만원 중 1조 6,299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416억 8,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0억 8,9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5년도 기본급식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기본급식	1,684,395	41	13,265	1,697,701	1,629,924	41,689	26,089	1,811,925
영내자 급식	1,394,994	41	31,046	1,426,082	1,358,660	41,689	25,733	1,531,843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국방부는 급식 운영 방식의 개선과 장병들의 군대 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도입하고 있음. 이러한 방안 중에 군급식 민간위탁이 있음.

군급식의 민간위탁은 ① 현역병 병역 자원 감소에 따른 비전투 분야의 부담 완화 필요성, ② 짧은 복무기간과 조리 업무 과다에 따른 급식 분야 종사병들에 대한 병력 관리 부담 증가, ③ MZ 세대의 급식에 대한 높은 요구, ④ 급식 전문 민간 기업의 전문성 활용, ⑤ 경직된 식재료 조달 체계의 극복 등의 이유로 실시되고 있음.

○ 2020년 6월 부사관학교를 시작으로 민간위탁 시범 사업을 실시한 이후로 2025년 말 기준으로 43개 부대로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19개 부대가 추가될 계획임.

2025년 말 기준 인원비율로 민간위탁 현황을 살펴보면, 육군 6.5%, 해군 34.3%, 공군 63.2%, 해병대 11.6%로서 총 13.4%의 민간위탁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비율이 2026년에는 육군 11.6%, 해군 40.6%, 공군 67.8%, 해병대 30.0%로서 총 19.5%까지 확대될 예정임.

[군급식 민간위탁 현황]

구분		2020~2022	2024	2025	2026
위탁건수		13	12	18	1
급식단가(원/인·일)		13,000	13,000	13,000	14,000
급식대상 국군장병 인원(A)	육군	323,926	310,045	307,126	299,424
	해군	20,426	21,678	21,617	21,343
	공군	34,243	34,473	34,414	35,331
	해병대	22,713	22,546	22,497	22,232
	계	401,308	388,742	385,654	378,330
위탁 대상 인원(B)	육군	8,115	14,465	19,965	34,625
	해군	2,900	3,700	7,420	8,670
	공군	5,670	9,419	21,759	23,949
	해병대	1,100	2,200	2,600	6,680
	계	17,185	29,784	51,744	73,924
위탁 비율 (B/A)%	육군	2.5	4.7	6.5	11.6
	해군	14.2	17.1	34.3	40.6
	공군	16.6	27.3	63.2	67.8
	해병대	4.8	9.8	11.6	30.0
	계	4.4	7.7	13.4	19.5

주 1. 급식대상인원은 해당 연도 예산 편성 기준 인원(2020~2022년 열의 인원은 2022년 인원)임
2. 2026년의 위탁 대상 인원(B)은 2026년 2월말 기준 해당 부대의 식수인원임
3. 2026년 민간위탁급식 시행 예정인 부대는 19개이며, 4월 현재 계약을 체결한 부대는 1개 부대임
4. 위탁비율(B/A)은 연도별 위탁 대상 인원(B)을 누적으로 계산

자료: 국방부

① 군급식 민간위탁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평가결과 공개 등 세부기준 마련 필요

○ 국방부는 2025년 급식방침을 통해 급식운영 여건 개선과 장병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용이 필요한 부대를 지속 검토할 계획을 밝히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군급식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은 군급식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와 직결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병영식당을 운영하는 각 부대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음.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체결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형태임.

이 경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원칙적인 낙찰자 결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고 있음.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군급식 민간위탁 사업의 입찰 절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시 사업규모에 따른 위원 수, 외부위원 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함.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함.

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야 함.

○ 2024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각 부대의 민간위탁 입찰 시 위원회 구성 현황 등을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우선 위원 수의 경우 5명에서 11명까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한 계약 건수가 14건으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위원수 분포 현황]

구분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계약 건수	3	3	14	5	3	3	1

자료: 국방부

32건의 계약 중 6건의 계약만이 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포함비율은 13~22%임. 이는 중앙관서의 장인 국방부 장관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지 않은 결과로 보임.

[외부위원 포함 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

구분	계약 1	계약 2	계약 3	계약 4	계약 5	계약 6
내부위원 수(명)	5	5	6	6	7	7
외부위원 수(명)	1	1	1	1	1	2
외부위원 비율(%)	17	17	14	14	13	22

자료: 국방부

○ 계약금액별로 계약 건수를 보면 100억 이상 200억 미만의 계약이 16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계약금액별로 위원 수를 보면 50억~100억 미만에서 위원 수 5~8명, 100억 이상 200억 미만에서 5~11명, 300억 이상 500억 미만에서 7~10명으로 계약금액이 커질수록 위원수도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다만, 개별 계약 건별로 위원 수를 보면 300억 이상 500억 미만의 계약에서 위원수가 7인인 건이 있는 반면 100억 이상 200억 미만에서 위원수가 11인인 경우도 있어 계약금액과 위원수가 반드시 비례관계에 있지는 않음.

[계약금액별 위원수 및 계약건수 분포 현황]

구분	50억- 100억 미만	100억- 200억 미만	200억- 300억 미만	300억- 500억 미만	계
위원수(명)	5~8	5~11	8	7~10	-
계약건수	10	16	1	5	32

자료: 국방부

○ 참고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르면 사업금액별로 1억원 미만은 위원 수 8명,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8명 이상, 50억원 이상은 9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사업금액별 평가위원회 구성기준(예시)]

사업금액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위원수	8명	8명 이상	9명 이상

자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한편, 기획예산처의 「기획예산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학계·연구계·경제계·법조계·협회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국방부는 관련 법령 및 타 기관의 사례를 참조하여 군급식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및 공개 범위의 기준이 필요함.

군급식의 민간위탁 사업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13]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함.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함.

○ 2024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각 부대의 민간위탁 입찰 시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를 살펴보면,

총 32건의 위탁사업 중 21건 공개, 10건 비공개, 1건 단독입찰에 따른 별도처리로 나타나고 있음. 비공개 건의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으나 모두 동일한 우리 군부대의 병영식당 위탁사업이라는 점에서 일부 부대는 공개가

13)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가능하고 일부 부대는 비공개하여야 한다는 전제는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한편, 각 부대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 내용을 보면, 평가결과 총점만 공개, 위원별 총점(위원명 비공개) 공개, 세부 평가결과(위원명 비공개) 공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음.

참고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르면 평가위원의 실명은 비공개로 하되 평가항목별, 입찰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있음.

○ 따라서, 국방부는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여부 및 공개 내용의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내용(예시)]

제안서 평가 결과

o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o 평가점수

평가항목*	입찰자				비고
	A	B	C	...	
XX 항목					
:					
:					
:					
:					
:					
:					
:					
YY 항목					
합계					

*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등

자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② 군급식 민간위탁사업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필요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는 제안서 평가 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기술능력평가 70, 입찰가격 평가 30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신설 2020.9.24.>	70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30	

자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 그런데 군급식 민간위탁의 제안서 평가 시에는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 평가 10을 기준으로 하는 기술강조형 유형으로 분류되는 입찰을 실시하고 있음.

○ 이는 각 중앙관서[14]의 장이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면서, 사업의 특성·목적·내용 및 요구되는 전문성·기술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 중시형, 기술·가격 균형형, 가격 중시형으로 구분하여 제안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임.

[계약의 유형별 배점한도]

구분	전문성·기술성 정도	배점범위(기술:가격)
기술강조형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경우	기술평가점수 최대 90점 (90:10)
기술·가격균형형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경우	(80:20~60:40)
가격중시형	전문성·기술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가격평가점수 최대 50점 (50:50)

자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다만, 현재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입찰의 주체인 각 부대의 장이 입찰공고 시 제안요청서에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정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입찰이 시행되고 있음.

14) 「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따라서, 국방부는 군급식의 민간위탁 입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시 적용할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③ 조달전문기관을 통한 조달계약 방안 검토 필요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15]에서는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추정가격[16] 1억원 이상의 수요물자,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등은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함. 다만, 천재지변, 국방과 관련되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해야 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음.

---

15)「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을 말함. 국가계약법 상 추정가격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이란 직접적인 정의는 없음.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예정가격, 추정금액 등을 정의하면서 간접적으로 추정가격을 정의하고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한편, 「방위사업법」[17]에서는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일괄적으로 군수품을 조달하도록 하면서, 각 군에서 직접 조달하거나 조달청에 요청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방위사업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방위사업법」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따라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중임.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서는 군수품의 조달을 군수품생산업체, 군수품구매주체에 따라 분류하고 중앙조달 대상을 열거하고 있음.[18]

---

17) 「방위사업법」
제25조(조달계획 및 방법)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침에 의하여 군수품의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군수품을 조달한다.
② 군수품은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일괄적으로 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거나 조달청에 요청하여 구매할 수 있다.

18)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0조(조달구분 및 대상) ① 군수품의 조달은 군수품생산업체 소재에 따라 국내조달과 국외조달로 구분하며, 군수품구매주체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하는 중앙조달과,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서 구매하는 부대조달, 방위사업청이 조달청에 요청 또는 위탁하여 구매하는 조달청조달로 구분하고, 기타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특정조달과 정부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대체조달 등으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다만, 특정조달의 경우에는 입찰 또는 협상에 국내·외 조달원이 차별없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기관과 각군·기관이 협의하여 집행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의해 각 사업본부에서 집행하는 중앙조달대상 및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위품목당 연간 조달계획금액 3천만원 이상 품목 또는 중앙조달 실적이 있는 품목. 다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품목 중 부대조달 실적이 있는 단일 군 소요품목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조달품목의 경우에는 각군에서 조달할 수 있다.
2. 중앙조달품목과 동류(同類)품목으로서 일괄 구매하는 품목
3. 법에 의하여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
4. 방산장비(별도 방산물자로 지정된 구성품 등을 포함한다) 및 중앙조달된 장비의 외주정비사업. 다만, 소규모 유지보수를 위한 계약은 제외한다.
5. 의약품 및 의무물자 중 중앙조달로 결정된 품목(예방약품, 세트장비 내용물 등을 말한다)
6. 주장비(主裝備)와 함께 패키지(Package)사업으로 추진하는 창 정비 개발사업

군수품구매주체에 따라서는 방위사업청에서 조달하는 중앙조달,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서 구매하는 부대조달, 방위사업청이 조달청에 요청 또는 위탁하여 구매하는 조달청조달로 구분하고 있고, 중앙조달 대상으로는 단위품목당 연간 조달계획금액 3천만원 이상 품목 등이 있음.

조달청 등에 요청 또는 위탁하여 구매할 수 있는 경우로는 연간 구매 추정액이 5,000만원 이상인 품목 등이 있음.[19)]

○ 한편, 「국군재정관리단령」(대통령령)에서는 5천만원 이상의 계약으로서 분야별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물품(「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이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공사·용역의 계약을 국군재정관리단의 관장 사항으로 규정하고,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에서는 총액기준 추정가격 1억원 이상(단, 1억원 미만 2단계 경쟁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중앙계약으로 요청 가능)

---

19)「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1조(위탁구매기준 등) ① 각 사업본부장은 군수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조달청 등에 요청 또는 위탁하여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부대 증·창설사업, 패키지화 사업, 교육훈련사업 등 긴급·적기 조달이 요구되는 경우, 안정적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소요군에서 중앙조달을 요구한 경우와 방위력개선사업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라고 판단 될 때에는 직접 집행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연간 구매 추정액이 5,000만원 이상인 품목
2. 연간 단가계약품목(제3자 단가계약품목을 포함한다)
3. 저장품
4. 연간 구매 추정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조달청 구매실적이 있는 품목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은 국군재정관리단이 수행하는 계약인 중앙계약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0]

다만, 군 부식물 및 증식은 중앙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그런데 2024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체결된 군급식 민간위탁 계약의 계약규모별 현황을 보면, 50억원~100억원 미만이 10건, 100억~200억 미만이 16건, 400억~500억 미만이 2건으로서 최소 50억원 이상의 대형계약으로 볼 수 있음.

[군급식 민간위탁의 계약규모별 현황]

구분	50억- 100억 미만	100억- 200억 미만	200억- 300억 미만	300억- 400억 미만	400억- 500억 미만	계
건수	10	16	1	3	2	32

자료: 국방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군수품조달관리규정」,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등에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구매 추정액 3천만원 또는 5,000만원 이상을 기준으

20)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제7조(중앙계약 범위) ① 일반회계 및 국방시설이전특별회계, 방위력개선사업(시설사업), 군인복지기금 중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과 대미사업,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중앙계약으로 하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국방부(소속기관 포함)가 국군재정관리단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앙계약으로 할 수 있다.
3.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 총액기준 추정가격 1억원 이상(단, 1억원 미만 2단계 경쟁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중앙계약으로 요청 가능)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중앙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 부식물 및 증식

로 중앙조달, 조달청조달 등을 규정한 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 조달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군급식 민간위탁의 경우 최소 50억원 이상의 대형계약으로 볼 수 있어 현재처럼 부대조달로 구매하는 경우 입찰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소지, 대형계약의 부대조달에 따른 각 부대의 부담 등을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음.

또한, 각 수요부대에서 조달하는 것이 적기 지원,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만한 사유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임.

○ 따라서, 국방부는 현재 부대조달로 추진되고 있는 군급식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수요부대 자체조달의 필요성, 조달전문기관의 전문성 활용, 대형계약의 자체조달에 따른 일선 부대의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의 중앙조달 또는 조달청의 조달청조달, 국군재정관리단의 중앙계약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④ 남은음식물 감량 우수사례 확산 필요

○ 국회는 2025년도 예산안의 심의·의결 시 군급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18) 국방부는 장병급식과 관련하여 잔반절감계획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급식체계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 국방부는 군 급식체계 개선을 위해, ① 군 급식 혁신 시범사업 확대, ② 민간위탁급식 확대 및 제도개선(민간위탁 표준계약조건 및 기본매뉴얼 마련 등), ③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정(군납식재료의 품질 및 위생·안전관리기준, 민간위탁급식 운영기준 마련 등) 등을 추진 중임.

○ 남은음식물 절감과 관련하여서는 2025년 국방부 급식방침 개정 시 잔반절감계획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시행 중임.

2025년 급식방침 > 3. 세부지침 > 가. 급식운영 일반 지침 - 식수인원 예측정확도를 높여 잔식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하고 배식 부족방지를 위해 대체급식 품목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 급식예산이 잔식 및 잔반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장병 선호품목을 적정량 청구하여 비선호품목 급식에 따라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 - 장성급 부대는 매월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을 점검하고 분기별로 성과분석을 통해 감소방안을 강구한다.(민간위탁 급식부대 제외) - 각군 본부 및 해병대 사령부는 각급 부대에 대한 처리량 및 감소방안 적용 결과를 연2회 국방부로 보고한다.(상반기 7월, 하반기 다음연도 2월)

○ 최근 4년간 남은음식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025년에는 총발생량 기준으로 전년비 21% 감소하였고 1인당 발생량 기준으로는 19.4% 감소하였음.

처리비용 기준으로는 전년비 10.1% 감소하였음. 발생량 감소율에 비해 처리비용 감소율이 낮은 것은 처리단가가 전년비 14.1% 상승하였기 때문임.

[남은음식물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kg,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발생(처리)량	102,000,000	114,000,000	105,000,000	83,000,000
전년비 증감률(%)	-	11.8	-7.9	-21.0
급식대상인원(명)	401,308	388,742	385,654	378,330
전년비 증감률(%)	-	-3.1	-0.8	-1.9
1인당 발생량	254.2	293.3	272.3	219.4
전년비 증감률(%)	-	15.4	-7.2	-19.4
처리단가(만원/톤)	18.8	17.5	18.5	21.1
전년비 증감률(%)	-	-6.9	5.7	14.1
처리비용	19,172	20,037	19,417	17,456
전년비 증감률(%)	-	4.5	-3.1	-10.1

주 1. 급식대상인원은 해당 연도 예산 편성 기준 인원임
2. 처리단가 = 처리비용/처리량
자료: 국방부

○ 종합해 보면, 2025년의 경우 남은음식물 발생량이 감소하였지만 처리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남은음식물 감축만큼의 처리비용 절감의 이득을 얻지 못하였음.

○ 한편,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폐기물처리협회는 매년 남은음식물 목표관리 및 감량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2025년도 대회에서 육군 제1611부대가 장려상을 수상하였음.

○ 육군 제1611부대는 2024년 대비 약 49%를 감량(1인당 발생량 약 45% 감량)[21]하였는데, 중대별 잔반량 체크 및 성과에 따른 포상, 과잉 식자재 구매 방지 등의 발생억제 대책과 함께 수분제거 후 배출 등의 감량 및 자원화노력을 병행하였음.

[2025년 집단급식소 감량경진대회 우수기관 사례]

기관(업)명	주요 내용
육군 제1611부대	- '24년 대비 약 49% 감량(1인당 발생량 약 45% 감량) - (발생억제) △중대별 잔반량을 매일 체크하고 결과 게시, △중대별 성과에 따라 포상 지급, △주 단위 재고조사를 통해 과잉 식자재 구매 방지, △추가배식대 설치, 수용인원 확대를 위한 식당 구조 개선, △배달음식 허용일 등 구매량 및 배식량 조절 등 - (감량 및 자원화노력) △수분제거 후 배출 등

자료: 한국폐기물협회, 2025년 집단급식소 남은음식물 목표관리 및 감량경진대회 결과 및 우수사례 안내, 2025. 12. 4.

21) 1인당 발생량 감량률 기준으로는 대회 수상 기관(업) 10개 중 최고 감량률임.

○ 육군 제1611부대는 2025년에 전년 대비 45%(1인당 발생량 기준)의 감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군 전체의 1인당 감량률 19.4%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임.

○ 따라서, 국방부는 남은음식물의 발생억제와 감량 및 자원화노력이 병행되는 이와 같은 성과들을 군 전체적으로 확산하여 남은음식물을 감량 및 자원화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예산절감에 앞장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⑤ 직영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군 급식혁신 시범사업' 등 지속 추진 필요

○ 2025년 기준으로 군별 위탁비율을 보면, 공군이 63.2%로 가장 높고 해군 34.3%, 해병대 11.6%, 육군 6.5%로 나타나고 있음.

[군별 군급식 민간위탁 현황]

구분		2020~2022	2024	2025	2026
급식대상 국군장병 인원(A)	육군	323,926	310,045	307,126	299,424
	해군	20,426	21,678	21,617	21,343
	공군	34,243	34,473	34,414	35,331
	해병대	22,713	22,546	22,497	22,232
	계	401,308	388,742	385,654	378,330
위탁 대상 인원(B)	육군	8,115	14,465	19,965	34,625
	해군	2,900	3,700	7,420	8,670
	공군	5,670	9,419	21,759	23,949
	해병대	1,100	2,200	2,600	6,680
	계	17,185	29,784	51,744	73,924
위탁 비율 (B/A)%	육군	2.5	4.7	6.5	11.6
	해군	14.2	17.1	34.3	40.6
	공군	16.6	27.3	63.2	67.8
	해병대	4.8	9.8	11.6	30.0
	계	4.4	7.7	13.4	19.5

주 1. 급식대상인원은 해당 연도 예산 편성 기준 인원(2020~2022년 열의 인원은 2022년 인원)임
2. 2026년의 위탁 대상 인원(B)은 2026년 2월말 기준 해당 부대의 식수인원임
3. 2026년 민간위탁급식 시행 예정인 부대는 19개이며, 4월 현재 계약을 체결한 부대는 1개 부대임
4. 위탁비율(B/A)은 연도별 위탁 대상 인원(B)을 누적으로 계산

자료: 국방부

○ 민간위탁이 용이한 후방·고정형 부대, 후방 사단·훈련소 중심으로 민간위탁이 실시됨에 따라 격오지·전방 지역을 위수하는 육군 및 해병대의 민간위탁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임.

연도별 민간위탁비율을 보면, 2022년 4.4%에서 2026년에는 19.5%까지 확대될 예정인데, 육군의 경우 전체 위탁비율보다 낮은 2022년 2.5%, 2026년 11.6%임.

○ 최근 3년간 “군 급식 및 피복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직영급식의 만족도가 향상되고는 있으나 민간위탁 급식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군급식 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2023	2024	2025
직영급식	3.34	3.53	3.81
위탁급식	3.95	4.22	3.97

자료: 국방부

○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군 급식 질 향상 및 조리병 업무경감을 위해 ’24년부터 ‘군 급식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 중임.[22)]

군 급식혁신 시범사업은 장병 선호를 반영한 일품요리 위주 식단

22) ’24년 1개 대대 → ’25년 4개 대대 → ’26년 3개 사단

(국을 생략하고 간단한 반찬과 메인요리 위주의 식단) 구성 및 조리병 업무경감을 위한 간편조리법(오븐 사용 및 완제품 활용한 조리)을 적용한 병영식당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국방부는 전방부대 직영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민간위탁 급식에 비해 낮은 직영급식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군 급식 혁신 시범사업'과 같은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5) 증/특식(1231-302): 기본급식비와 연계검토를 통한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증/특식(1231-302) 사업은 훈련 및 특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장병의 체력보강 및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1,164억 4,600만원에 이·전용 등(감) 101억 5,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62억 9,100만원 중 1,041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 3,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7,5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5년도 증/특식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증/특식	116,446	-	△10,155	106,291	104,178	1,438	675	102,216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증/특식(1231-302) 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2022년 1,576억 2,700만원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5년 1,164억 4,600만원으로 감소하였음.

집행률 측면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0% 내외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90% 내외의 비율을 보이는 것은 매년 10% 내외의 비율로 예산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증/특식 사업 최근 4년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2	157,627	-	△15,785	141,842	139,914	88.8	98.6	704	1,223
2023	151,797	704	△16,479	136,023	135,241	89.1	99.4	27	755
2024	128,497	27	△10,730	117,794	117,380	91.3	99.6	-	414
2025	116,446	-	△10,155	106,291	104,178	89.5	98.0	1,438	675

자료: 국방부

○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사업에는 예산의 추계가 면밀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예산 추계의 면밀성 측면에서 보면, 모든 장병에게 제공하는 기본

급식과 달리 증/특식은 특수한 보직 또는 임무를 수행 중인 인원에게 증식(간식)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해당 보직의 충원률 저조, 특수 상황 발생의 빈도 감소(재해복구 등) 등 외부여건에 따라 집행이 유동적이므로 예산 편성 시 실제 소요 파악이 기본급식비에 비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증/특식 예산은 실소요를 고려하여 매년 감액 편성하고 있고,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2026년의 1022억 1,600만원 대비 15% 감액한 868억 8,400만원을 국방부안으로 제출하였음.

○ 한편, 2025년에 증/특식 사업 조정(감)액 대부분이 기본급식비 사업으로 조정된 사정에 비춰보면 기본급식비 사업의 예산규모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방부는 증/특식 사업의 예산을 적정규모로 감액함과 더불어 적정규모의 기본급식비 예산 확보에도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025년도 증/특식 사업 예산 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에서		금액	~으로		조정 사유 (이용 또는 전용에 해당하지 않음)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기본급식 (1231-301)	210-04	60	증/특식 (1231-302)	210-04	환자치료증식 부족분 충당
증/특식 (1231-302)	210-04	252	기본급식 (1231-301)	210-04	기본급식비 부족분 확보
증/특식 (1231-302)	210-04	20	특수식량 (1231-303)	210-04	구명식량 부족 소요 충당
증/특식 (1231-302)	210-04	590	기본급식 (1231-301)	210-04	기본급식비 부족분 확보
증/특식 (1231-302)	210-04	510	기본급식 (1231-301)	210-04	기본급식비 부족분 확보
증/특식 (1231-302)	210-04	20	기본급식 (1231-301)	210-04	기본급식비 부족분 확보
증/특식 (1231-302)	210-04	1,501	기본급식 (1231-301)	210-04	기본급식비 부족분 확보
증/특식 (1231-302)	210-04	1,162	기본급식 (1231-301)	210-04	기본급식비 부족분 확보
증/특식 (1231-302)	210-04	5,629	기본급식 (1231-301)	210-04	기본급식비 부족분 확보
증/특식 (1231-302)	210-04	330	기본급식 (1231-301)	210-04	기본급식비 부족분 확보
증/특식 (1231-302)	210-04	135	기본급식 (1231-301)	210-04	기본급식비 부족분 확보
증/특식 (1231-302)	210-04	67	기본급식 (1231-301)	210-04	기본급식비 부족분 확보

자료: 국방부

(6) 특수식량(1231-303): 특수식량 비축 목표 조정 등 관리 철저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특수식량(1231-303)은 전시 또는 유사시 대비 비상 급식품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267억 3,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500만원과 이·전용 등(증) 2,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67억 7,400만원 중 267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5년도 특수식량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특수식량	26,739	15	20	26,774	26,755	7	12	26,853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국방부의 2025년도 급식방침에 따르면, 특수식량은 연도별 편성예산대로 확보하고, 유효기간 내에 순환 급식하여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음.

순환 급식은 소비기한(2~3년) 만료 6개월 전 급식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음.

< 2025년도 급식방침 >

마. 특수식량 운영

1) 전투/특전식량 및 구명식량 등은 '25년도 편성예산대로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가하락 외 기타 사유로 인하여 편성예산대로 집행 시 '25년도 말 기준으로 전투식량 인가량 초과가 예상될 경우에는, 인가량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편성예산에 미달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이로 인한 잔여 예산은 인가량 부족 유형의 전투식량을 조달하는 데 우선 사용토록 한다.

2) 전투식량은 유효기간 내에 순환 급식하여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군 간 전환소요가 발생할시 순환급식 물량(가용물량)범위 내에서 전환하여 급식하고 그 결과를 결산(정산)에 반영한다.

○ 최근 4년간 특수식량의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인가량은 2022년의 803만 대에서 2025년의 834만 대로 증가하였는데 순환량, 조달량 및 보유량은 모두 감소하였음.

이에 따라 특수식량의 비축률은 2022년 87.7%에서 2023년 96.2%까지 상승하였다가 2025년에는 81.7%까지 감소하였음.

○ 종합해보면, 2025년도 특수식량 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100%에 가까운데도 특수식량의 비축률은 81.7%에 머물고 있어 사업 예산과 사업 목표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국방부는 현 수준의 비축목표(인가량)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적정목표 설정 및 예산 확보를 통하여 특수식량 비축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수식량 관리현황]

(단위: 만 대, %)

구분	인가량(A)	순환량	조달량	보유량(B)	비축률(B/A)
2022년	803	398	347	704	87.7
2023년	771	219	365	742	96.2
2024년	836	210	182	748	89.4
2025년	834	284	227	681	81.7

주) 매 연말 기준임
자료: 국방부

(7) 기본피복(1241-301): 조달단가 예측의 정밀도 향상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기본피복(1241-301) 사업은 장병 기본임무수행에 필요한 전투복, 전투화 등 공통 피복류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3,570억 1,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1억 6,800만원과 이·전용 등(증) 132억 7,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671억 5,600만원 중 3,601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21억 8,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8억 3,2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5년도 기본피복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기본급식	350,712	3,168	13,276	367,156	360,144	2,180	4,832	391,449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기본피복 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85.9 ~ 93.4%의 비율을 보이다가 2025년에는 102.7%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129억원에서 357억원의 예산을 조정(감)하였으나 2025년에는 이례적으로 132억원을 조정(증)하였음.

[기본피복 사업 최근 4년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2	377,464	16,433	△12,966	380,931	352,381	93.4	92.5	18,070	10,480
2023	374,810	18,070	△35,702	357,178	321,990	85.9	90.1	10,073	25,115
2024	374,184	10,073	△18,525	365,731	345,877	92.4	94.6	3,168	16,687
2025	350,712	3,168	13,276	367,156	360,144	102.7	98.1	2,180	4,832

자료: 국방부

○ 동사업의 2025년도 세사업별 집행 현황을 보면, 개인방한피복류 세사업에서 326억 1,900만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이·전용 등(증)하여 165.7%의 집행률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전투복 세사업에서 55억 9,800만원을 이·전용 등(증)하였음.

조정(감)한 세사업 중에서는 잡화류가 148억 5,800만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이·진용 등(감)하여 61.3%의 집행률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운동복이 37억 5,000만원을 이·전용 등(감)하였음.

[2025년도 기본피복 세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편성액(A)	집행액(B)	이·전용 등	집행률(B/A)
개인방한피복류	49,760	82,455	32,619	165.7
전투복	45,572	52,293	5,598	114.7
신발류	10,424	11,092	720	106.4
전투화	27,430	27,855	1,009	101.5
간부보충피복	41,196	41,201	934	100.0
모자류	5,921	5,745	-156	97.0
군장품	5,568	4,927	-527	88.5
특수신분피복류	9,876	8,621	-1,162	87.3
근무복/정복	21,130	17,992	-2,633	85.1
내의류	40,676	36,098	-4,519	88.7
운동복	52,929	47,220	-3,750	89.2
잡화류	40,230	24,646	-14,858	61.3

자료: 국방부

○ 예산 조정이 이루어진 주요 품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우선, 개인방한피복류 중 기능성방한복(상의), 기능성방한복(하의)의 조달단가가 각각 122,323원에서 239,657원, 81,549원에서 158,967원으로 상승하였고 조달물량은 각각 105,492개에서 149,050개, 105,492개에서 22,510개로 변경하였는바 집행액은 편성액 215억 700만원 대비 배증한 392억 9,900만원임.

다음으로, 잡화류 중 기능성전투우의의 조달단가가 246,794원에서 414,865원으로 상승하였고 조달물량은 74,631개에서 9,984개로 변경하였는바 집행액은 편성액 184억 1,800만원 대비 77.5% 감소한 41억 4,200만원임.

결과적으로, 당초의 조달단가 예측이 크게 빗나감에 따라 기능성방한복 상하의 수량의 불균형이 초래되었고 기능성전투우의의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 따라서, 국방부는 조달단가 예측 체계를 점검하여 예측의 정밀도를 향상함으로써 전력지원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025년도 기본피복 주요품목별 결산 현황]

구분		편성			집행			변동 내용
세사업	품목명	단가 (원)	물량 (개)	금액 (백만원)	단가 (원)	물량 (개)	금액 (백만원)	
개인 방한 피복류	기능성 방한복 (상의)	122,323	105,492	21,507	239,657	149,050	39,229	• 조달단가 상승 • 조달물량 변경
	기능성 방한복 (하의)	81,549	105,492		158,967	22,510		
전투복	사계	64,768	258,331	16,732	70,600	365,633	25,814	• 조달단가 상승 • 조달물량 변경
	하계	60,627	201,189	12,198	67,570	268,163	18,120	
운동복	동운동복	53,325	326,566	17,414	49,382	365,725	18,060	• 조달단가 상승 • 조달물량 변경
	춘추운동복	47,617	345,200	16,437	40,551	379,412	15,386	
	하운동복	35,960	333,549	11,994	27,773	345,171	9,586	
잡화류	기능성 전투우의	246,794	74,631	18,418	414,865	9,984	4,142	• 기능성 방한복 등 방한피복류의 편성 대비 조달단가 상승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조정

자료: 국방부

(8) 특수피복(1241-302):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특수피복(1241-302) 사업은 경계초소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방한피복류, 전 장병 대상 침구, 방탄복, 특수임무 피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1,961억 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09억 9,800만원과 이·전용 등(감) 269억 8,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801억 1,300만원 중 1,585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21억 8,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3억 3,4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5년도 특수피복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특수피복	196,103	10,998	△26,988	180,113	158,593	2,187	19,334	171,630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특수피복 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조정(감)하였음. 특히, 2025년에는 예산액의 약 14%에 해당하는 269억원을 조정(감)하였음.

이에 따라,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2022년 91.7%에서 2025년에는 80.9%까지 감소하였음.

[특수피복 사업 최근 4년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2	210,509	30,491	△10,061	230,938	192,975	91.7	83.6	24,428	13,536
2023	245,949	24,427	△20,022	250,354	220,326	89.6	88.0	12,709	17,318
2024	194,905	12,710	△21,077	186,538	165,047	84.7	88.5	10,998	10,493
2025	196,103	10,998	△26,988	180,113	158,593	80.9	88.1	2,187	19,334

자료: 국방부

○ 세사업 및 주요품목별 집행현황을 보면, 방한피복류 중 매복깔개 및 무릎덮개는 전액 미집행하였고 방한화, 방한장갑, 방한용 스패츠는 축소 집행하였음.

[주요 품목별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품목명	편성액	집행액
방한피복류	매복깔개(육군)	21	-
	무릎덮개(육군)	731	-
	방한화(육군)	1,593	869
	방한장갑(육군)	454	374
	방한용 스패츠(육군)	275	187

자료: 국방부

○ 국방부는 이에 대해, 방한피복류의 경우 계획 대비 노후교체 소요가 감소하여 조달물량을 축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이 사업에서는 269억 8,800만원의 예산 조정(감)이 이루어졌는데, 한편에서는 개인용품 사업에서 특수피복 부족소요 지원을 위해 예산의 조정(증)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음.

[특수피복 사업으로 예산 조정(증) 사례]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5.11.19.)	개인용품 (1241-303)	210-01	108	특수피복 (1241-302)	210-03

자료: 국방부

○ 종합해 보면, 사업계획의 미흡한 수립으로 인한 방한피복류의 미집행 및 축소집행, 예산의 조정에 있어 사업 관리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국방부와 각군은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9)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2131-301): 외산 화상회의 장비 도입에 따른 보안성 검토 기준 부재 부적정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2131-301)은 국방 지능정보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보통신 기반환경을 개선·운영하는 사업으로,

○ 2025년도 예산액 2,770억 7,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억 800만원, 이·전용 등(감) 71억 9,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702억 8,800만원 중 2,493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91억 7,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7억 5,0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277,075	277,075	408	△7,195	270,288	249,365	9,172	11,750	292,157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화상회의 장비는 지휘관실, 회의실 및 작전상황실 등에서 작전회의, 상황관리 및 지휘통제에 활용되는 장비로서, 군사작전과 관련된 군사기밀 등 민감한 정보가 빈번하게 취급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요구됨.

○ 육군은 노후화된 화상회의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2025년 리스 방식으로 86개 부대에 11개 품목의 화상회의 장비를 도입하였음.

[2025년 육군 화상회의 장비 교체 사업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계약업체명	㈜글로벌텔레콤
계약일자	'25. 9. 25. ~ 12. 19.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납품계약액	1,563
'25년 예산액/집행액	108/108(임차료 최초 3개월분)
'26년 예산액	432(임차료 12개월분)
비고	11개의 제품을 부대별(86개소)로 납품 및 설치 (통합발주)

주: 해당 화상회의 장비는 임차료 방식으로 편성되어, 장비 납품 이후 5년간 리스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임.
자료: 국방부

○ 그러나 육군이 도입한 회상회의 장비 11종의 품목 중 코덱 등 2종의 품목은 보안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외국 제조사 장비로 확인되어 군 지휘통신 장비의 보안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임.

[육군 화상회의 노후교체 장비 중 일부 품목 현황]

(단위: 원, 대)

제품명	단가	수량	제조사 국적
코덱 (MeetingEye500)	5,693,037	116	중국
일체형 코덱(MeetingBar A10)	4,066,455	23	중국

자료: 국방부

○ 특정 국가에서 제조된 장비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과거 군에 납품된 외산 장비에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실제로 확인된 선례가 있어 보안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과거 육군 해·강안 경계시스템에 납품된 중국산 CCTV 1,300여 대에 대하여 국군방첩사령부가 점검한 결과, 악성코드를 유포한 이력이 있는 서버 IP가 발견되었으며, 저장 경로 임의 변경을 통한 영상정보 외부 저장, 원격 접속을 허용하는 인터넷망 개방 등 다수의 보안 취약점이 식별된 바 있어 육군은 2024년 해당 장비를 철거한 바 있음.

○ 한편, 미국 등 주요 우방국은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중국 관련 통신·영상감시 장비의 정부기관 조달을 제한하는 내용을 2019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명시한 바 있으며[23],

23) 미국「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제889조, Pub. L. No. 115-232, 115th Congress(2018).

2024년 미국 일부 주정부에서는 본 제조사의 제품에 대해 보안 문제점을 이유로 도입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음[24].

○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특정 국가의 장비 도입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금번 사업의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평가항목에도 외산 제품 배제와 관련된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보안 우려가 있는 장비가 도입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가 해당 장비 전수 분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적 보안성 검토에 상당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바,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지휘통신 장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안 위해 가능성이 있는 장비의 도입을 조달 단계에서 사전에 방지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특히 본 화상회의 장비와 연동되는 '전군 화상회의(VTC)망'은 기밀성이 요구되는 회의나 훈련 통제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안 위험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 따라서 국방부는 화상회의 장비 등 군 지휘통신 분야에 대하여

24) 미국 오클라호마주 관리·기업서비스청, 2024.6.18.

보안 취약성이 우려되는 특정 제조국 제품을 도입 단계에서부터 제한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 평가 기준 및 내부 조달 지침을 정비하고, 유사한 보안 위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도입되어 운영중인 외산 화상회의 장비에 대한 보안 적합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시 불용·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정보체계개발유지(2131-302) :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계약 외 과업 추가 지시에 따른 소송 패소로 지연손해금 발생 부적정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정보체계개발유지(2131-302)는 국방업무 전반에 대한 응용체계 개발과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로 국방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적시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25년도 예산액 1,877억 7,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28억 5,200만원, 이·전용 등(증) 559억 6,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565억 8,900만원 중 2,446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77억 6,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1억 7,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정보체계개발유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187,774	187,774	12,852	55,963	256,589	244,657	7,760	4,171	183,056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국방부는 2025년 12월 정보체계개발유지 사업에서 배상금 지급을 위해 총 583억 4,400만원의 재원을 134건의 이용(移用), 13건의 전용(轉用)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동 재원을 활용하여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을 대상으로 총 583억 2,9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였음[25].

[배상금 지급을 위한 정보체계개발유지 사업 이·전용 내역]

(단위: 건, 백만원)

구분	날짜	이·전용 건수	금액
이용	2025.12.26	134	53,160
전용	2025.12.26	13	5,184

자료: 국방부

○ 동 배상금은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의 과업량 산정 및 계약내용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방부는 2015년 각 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물자·탄약·군수지휘·장비정비 체계 등을 통합하는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을 발주하였으며, CJ올리브네트웍스·KCC정보통신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이를 수

25) 해당 배상금 지급의 근거가 된 사건의 판결 경과는 다음과 같음.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5531 판결(2024.1.11. 선고)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7640 판결 (2025.7.30. 선고)
제3심: 대법원, 25다216265 판결 (2025.12.11. 선고)
이하의 검토보고 는 위 판결의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함

행하였음.

○ 동 사업의 당초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였으나, 사업 규모 및 과업 범위 등에 대한 국방부와 수행업체 간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020년 3월에 최종 완료되었음.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계약 현황]

수행업체	CJ올리브네트웍스 컨소시엄
사업기간	'15.12. ~ '18.11. * 15개월 지체되어 '20.3월에 사업 완료
사업예산	275억원

자료: 국방부

○ 과업량과 관련하여, 동 사업은 당초 48,531FP(Function Point, 기능점수[26]) 규모로 발주[27]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이후 시점인 2016.8.1. 국방부의 요구로 6,301건의 기능(69,034.7FP)을 추가로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실제 사업 수행 결과 117,565.8FP의 과업을 수행하였으며,

이처럼 당초 계약 과업량과 실제 수행 과업량 간에 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과업 범위 및 납품기한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소송을 통해 일부 용역대금 및 부당이득 반

26)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에 있어 산출된 결과물의 세부 기능을 정량화한 후 그 수치에 단가를 곱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역대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ISO/IEC(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FP 방식 등이 활용됨.

27) 본 사업 제안요청서에는 FP(기능점수) 방식에 의하여 개발원가를 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환이 인정되어 국방부의 지급의무가 확정됨.

○ 이에 따라 국방부는 추가 과업에 대한 용역대금 및 미지급금 456억 3,500만원에 소송 기간 중 발생한 지연손해금 126억 9,400만원을 합한 총 583억 2,900만원을 2025년 12월에 지급함.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배상금 지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지급날짜	미지급금	지연손해금	총 액
계	2025.12.29.	45,635	12,694	58,329

자료: 국방부

○ 이 중 지연손해금 126억 9,400만원은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각각 연 6% 및 연 12%)[28]이 적용된 금액으로, 계약 단계에서 과업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었더라면 발생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축소될 수 있었던 재정지출로 보임.

또한, 이러한 지연손해금은 본래 사업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서,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

---

28) **「상법」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하였다는 점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유사한 정보화 사업 추진 시 기능점수(FP) 산정 및 과업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여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11) 정보통신운영지원(2131-303): 물가정보관리체계 DB 구매 및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비목 변경 집행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정보통신운영지원(2131-303)는 정보통신기반체계 장비운영을 위한 각종 전산용품·부수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25년도 예산액 168억 4,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8,400만원, 이·전용 등 10억 7,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80억원 중 171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3억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정보통신운영지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16,841	16,841	84	1,075	18,000	17,195	504	301	15,659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물가정보관리체계는 물가정보, 공사비 및 관리비 등을 공유·조회하여 계약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방망 내 시스템으로, 정보통신운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동 체계의 운용을 위해 월간 가격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매하고 이와 관련된 업데이트 및 체계 관리를 수행함.

○ 물가정보관리체계 사업은 가격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매 및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으로 구성되며, 최근 3년간 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음.

[최근 3년간 물가정보관리체계 사업 계약 현황]

계약년도	①가격정보DB 구매 업체			②유지보수 용역 업체	합계
	(사)한국물가협회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거래가격(주)	세이프라이스	
2023년	20.5백만원	20.5백만원	20.5백만원	16.5백만원	78백만원
2024년	20.5백만원	20.5백만원	20.5백만원	16.5백만원	78백만원
2025년	20.5백만원	20.5백만원	20.5백만원	16.5백만원	78백만원

자료: 국방부

○ 국방부는 그간 가격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매 및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모두를 일반수용비 비목(210-01)로 집행하여 왔음.

○ 다만, 물가정보관리체계 데이터베이스(DB) 구매 및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예산편성 비목상 일반수용비(210-01)보다는 관리용역비(210-15)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세출예산 과목 구분]

210-01 (일반수용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간행물의 구입비
210-15 (관리용역비)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자료: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국방부는 동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일반수용비 비목(210-01)으로 집행한 이유에 대해, 물가정보관리체계 사업은 외부업체로부터 물가 책자 및 가격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매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고,

외부업체(세이프라이스)의 시스템을 유지보수 비용은 물가 책자 및 가격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매에 따른 부수적 행위로 보아 일반수용비 비목(210-01)으로 통합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물가정보관리체계 DB 구매 및 유지보수 용역은 구매한 물가정보 데이터를 시스템에 업데이트하는 등 전산관리 영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일반수용비 비목(210-01)보다는 관리용역비

비목(210-15)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보다 적정한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이에 대해 2027년 예산 편성 시부터 물가정보관리체계 DB 구매 및 유지보수 용역사업은 관리용역비 비목(210-15)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국방부는 물가정보체계 DB 구매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부터 관리용역비 비목(210-15)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12) 진료지원(2231-301): 응급 진료업무보조비의 집행실적 제고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진료지원(2231-301)은 현역병이 휴가, 외출, 외박 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방부가 공단부담금을 납부하고, 군 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환자, 응급환자, 격오지 부대 환자에 대한 민간병원진료비 지원 등 진료여건을 보장하려는 사업임.

○ 2025년도 예산액 1,404억 3,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 4,900만원과 이·전용등(감) 29억 9,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377억 9,100만원 중 1,332억 1,700만원이 집행되고, 28억 3,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7억 4,300만원이 불용됨.

[2025년도 진료지원의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진료지원	140,435	349	△2,993	137,791	133,217	2,831	1,743	135,848
진료업무 보조비	4,218	-	△397	3,821	3,808	-	13	4,439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진료업무보조비 내역사업은 임상경험이 풍부한 장기군의관[29]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진료 업무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진료 실적 제고를 위해 지급하는 성과금과 유사한 성격의 제도임.

2025년에는 일반 진료업무보조비 35억 7,000만원과 신설된 응급 진료업무보조비 6억 4,800만원을 합한 총 42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진료업무보조비 편성 근거(2025년)]

(단위: 백만원)

2025년 본예산	
예산	산출내역
4,218	□ 진료업무보조비 : 4,218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4,218백만원 · 일반 진료업무보조비 : 140명 × 2,500천원 × 12월 × 0.85(지급률) = 3,570백만원 · 응급 진료업무보조비 : 108명 × 5건 × 100천원 × 12월 = 648백만원

*자료: 국방부

○ 2025년 예산부터 신규 편성된 응급진료업무보조비는 장기군의관이 응급진료를 한 경우 건당 10만원씩 상한 150만원을 기존의 진료업무보조비 월 상한 250만원에 더하여 주말 또는 일과 외

29) 지급대상은 ① 전문의를 취득한 장기군의관, ② 군 장학생으로서 전문의 취득 후 의무복무 3년을 마친 군의관이며, 교육훈련·위탁교육·연수 중인 장기군의관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시간 등에 응급진료를 보는 장기 군의관에게 실적에 연동하여 지급(총 상한 400만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에는 6억 4,800만원이 신규 편성됨.

○ 다만, 2025년도 진료업무보조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기존사업인 일반 진료업무보조비의 집행률은 97.9%로 양호하였으나, 신규사업인 응급 진료업무보조비는 예산 6억 4,800만원 중 3억 1,300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48.3%로 극히 부진하였음.

[2025년도 진료업무보조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집행액	집행률
일반 진료업무보조비	3,570	3,494	97.9
응급 진료업무보조비	648	313	48.3
진료업무보조비(합계)	4,218	3,807	90.3

○ 이는 2025년 9월까지 국방부가 응급진료 실적인정 기준 및 관리 규정을 포함한 훈령을 회계연도 개시 전이나 직후에 제정하지 못하고, 내부 검토 지연으로 지급체계를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임.[30]

이로 인해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응급진료업무보조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8월 말까지 지급실적이 전혀 없었음.

30) 국방부는 민간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진료과목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임. 국방부는 민간의 경우 일과 외 시간에 진료를 보면 무조건 수당을 받으나(당직 콜 수당), 군은 응급환자를 보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설계됨에 따라, 지급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정교한 기준 마련을 위해 오랜 논의가 불가피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응급 진료업무보조비는 응급 진료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초 성과 기반 제도로 설계되었으나, 훈령 마련이 지연되어 2025년 8월까지 집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응급진료 실적 촉진이라는 사업성과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었음.[31)]

○ 또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조속히 집행 가능한 상태로 사업관리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제도적 근거 마련이 9개월 지연되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응급진료업무보조비도 사실상 3분기 말에 이르러서야 집행가능하게 되어 예산집행의 적시성을 확보하지 못함.[32)]

○ 이와 같이 응급진료업무보조비는 2025년도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첫해부터 적지 않은 지연지급 방식으로 운영되어 사업 집행 및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따라서 국방부는 2025년도와 같이 집행부진 및 사업성과 미흡이 재발하지 않도록 응급 진료업무보조비의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31)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25년 9월에 훈령을 마련하였고, 이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응급진료 실적분을 9월에 소급해서 지급하였다고 설명함.

32) 2025회계연도 개시 후 9개월이 경과한 후 그동안 누적된 응급진료 실적을 소급 인정·지급할 경우, 새롭게 마련된 실적 인정기준의 공정성과 지급의 적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13) 의무장비획득(2231-302): 낙찰차액 축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강구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의무장비획득(2231-302)은 환자후송을 위한 구급차, 셔틀버스 등 의무기동장비획득과 군 병원에서 활용하는 진료장비 등 일반 의무장비획득을 하는 사업임.

○ 2025년도 예산액 401억 9,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9억 6,700만원과 이·전용등(감) 8억 5,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03억 700만원 중 371억 3,300만원이 집행되고, 15억 5,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6억 1,600만원이 불용됨.

[2025년도 의무장비획득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의무장비획득	40,196	967	△856	40,307	37,133	1,559	1,616	37,983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의무장비획득사업의 낙찰차액은 2024년 27억 1,600만원에서 2025년 38억 2,5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낙찰차액율은 2024년 8.6%에서 2025년 9.8%로 1.2%p 증가하였음.

이는 각 군 및 의무사가 장비별 조달예정단가가 최신 조달실적 단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낙찰차액율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임.

[2025년도 의무장비획득 사업 낙찰차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5년				
	낙찰 차액	낙찰 차액율	예산	조달 공고액 (A)	계약 금액	낙찰 차액 (B)	낙찰 차액율 (B/A)
육군	613	4.0	21,368	21,059	19,357	1,702	8.1
해군	260	6.5	2,078	2,252	1,974	278	12.3
공군	430	18	2,595	2,718	2,502	216	8.0
해병대	67	11.1	2,727	2,929	2,716	213	7.3
의무사	1,347	12.6	10,416	10,216	8,755	1,416	13.9
합계	2,716	8.6	39,184	39,174	35,304	3,825	9.8

자료: 국방부

○ 낙찰차액율 확대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이 하게 되면 국방부는 연례적으로 동 사업의 낙찰차액과 조달취소된 장비 예산[33] 등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신규 의무장비를 도입하거나 집행 후 잔액은 불용이나 전용 등을

33) 국방부는 잉여장비의 관리전환 보급, 인가정수 삭감, 편성액 대비 증가된 가격에 따라 해당 장비 도입 불가 등의 경우 조달취소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위한 재원으로 처리되어 예산편성의 부정확성과 예산의 비효율적 활용 문제가 발생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방부는 2025년도 낙찰차액 38억 2,500만원과 조달취소 장비 예산 29억 3,800만원을 합한 집행잔액 67억 6,300만원 중 49.2%인 33억 2,800만원을 집행하여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의무장비 71대를 도입하였음.[34)]

[2025년도 집행잔액 등을 활용한 의무장비획득 현황]

(단위: 대,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대수	총액	대수	총액	대수	총액	대수	총액
육군	13	109	33	2,012	12	768	22	1,438
해군	27	272	17	603	85	731	4	358
공군	10	434	47	426	3	42	11	113
해병대	11	30	10	158	3	22	4	216
의무사	13	1,362	25	951	58	2,100	31	1,215
합계	74	2,207	132	4,150	161	3,663	71	3,328

자료: 국방부 제출

또한, 국방부는 추가 의무장비 도입 후 남은 집행잔액은 다른 사업으로의 전용 등 8억 5,600만원과 불용처리 16억 1,600만원이 발생하였음.

34) 국방부는 국방예산운용지침에 근거하여 계약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소요 충당, 장병복지 및 위생여건 개선, 재난복구 및 안전관리, 작전/군수지원, 법령개정·제도개선, 국방 정책결정 지원, 생활 밀착형 민원 해소 등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소요에 한하여 집행잔액(낙찰차액, 계획목표량 달성 후 발생한 잔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의무장비 획득은 기존의 노후화된 장비를 동일 사양으로의 주기적 교체 뿐만 아니라 진보된 기술이 탑재되어 성능이 개선된 장비로의 교체와 새로운 의무장비 도입 등이 혼재되어 있고, 장비별로 업체들의 경쟁도가 높아질수록 도입단가는 낮아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음.[35)]

○ 따라서 국방부는 낙찰차액율 감소를 위해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의무장비 획득 도입단가에 기술진보와 경쟁도 등에 따른 조달실적 단가변동추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5) 국방부는 2025회계연도말인 2025년 12월 장비별 최근 3년간 조달실적 단가를 의무장비획득 요구기준 편람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경우 단순히 3년간 조달실적 단가 평균으로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동일 의무장비의 성능변화와 경쟁도 변화 추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14) 기동장비(2331-301): 표준차량의 낮은 보유율 개선 필요 등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기동장비(2331-301) 사업은 표준 및 상용차량의 정수 대비 부족 물량을 확보하고 수명초과 차량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2,044억 4,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8억 2,600만원과 이·전용 등(증) 92억 2,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154억 9,700만원 중 1,761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390억 8,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8,8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5년도 기동장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기동장비	204,447	1,826	9,223	215,497	176,119	39,089	288	329,069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앞서 보았듯이 기동장비 사업의 목적은 기동장비의 정수대비 부족 물량을 확보하고 수명초과 차량을 교체하는 것임.

그런데 표준 및 상용차량의 보유율 및 노후율 현황을 보면, 표준차량은 정수 19,277대에 보유 13,894대로서 보유율 72.1%이고, 이중 수명초과 노후장비는 1,558대로서 11.2%의 노후율을 보이고 있음.

상용차량의 경우 정수 37,843대에 보유 33,905대로서 보유율 89.6%이고, 이중 수명초과 노후장비는 6,350대로서 18.7%의 노후율을 보이고 있음.

[기동장비 보유 및 노후 현황]

구분	정수(A)	보유량(B)	보유율 (B/A,%)	수명초과 노후장비(C)	노후율 (C/B,%)
표준차량	19,277	13,894	72.1	1,558	11.2
상용차량	37,843	33,905	89.6	6,350	18.7

자료: 국방부

○ 표준차량은 1¼톤, 2½톤, 5톤 및 기타차량으로 분류되며, 인원 및 화물 수송은 물론 견인포 견인, 탄약수송, 폭발물 운반 등 전투에 필요한 전투지원차량임.

[표준차량의 분류]

구분	용도
1¼톤	인원 및 화물수송, 4.2″ 박격포 및 고속유탄 기관총 탑재
2½톤	인원 및 화물수송, 105밀리 견인포, 발칸포 견인, 탄약수송
5톤	인원 및 화물수송, 155밀리 견인포 견인, 탄약수송
기타	급수, 폭발물 운반, 산악작전차량 등 특수차량

자료: 국방부

○ 국방부는 표준차량의 보유율이 72.1%로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에 대해, 2015년 신형 중형표준차량(2½톤과 5톤) 개발 결정 후 신형 중형표준차량 도입 전까지 구형 표준차량 획득 물량의 축소 및 중단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36)]

표준차량별 보유 및 노후 현황을 보면, 2½톤은 정수 7,235대에 보유 5,629대로서 보유율 77.8%이고, 노후율은 3.7%임.

5톤은 정수 4,660대에 보유 2,641대로서 보유율 56.7%이고, 노후율은 23.4%임.

[표준차량별 보유 및 노후 현황]

구분	정수(A)	보유량(B)	보유율 (B/A,%)	수명초과 노후장비(C)	노후율 (C/B,%)
1¼톤	4,406	3,632	82.4	223	6.1
2½톤	7,235	5,629	77.8	208	3.7
5톤	4,660	2,641	56.7	618	23.4
기타	2,976	1,992	66.9	509	25.6
계	19,277	13,894	72.1	1,558	11.2

36) 구형 1¼톤 표준차량은 상용트럭으로 대체되어 더 이상 획득 소요가 없음.

구분	정수(A)	보유량(B)	보유율 (B/A,%)	수명초과 노후장비(C)	노후율 (C/B,%)

자료: 국방부

○ 구형 표준차량은 1970년대 도입된 기계식 차량으로 현재 상용 차량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수동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으며, 에어컨도 없는 등 안전 및 편의 장치가 부재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고 작전 효율성도 낮은 차량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중형표준차량 연구개발('19~'23년)」을 거쳐 자동변속기, ABS(브레이크 잠김 방지), ASR(바퀴 미끄럼 제어 장치), EHS(경사로 밀림 방지), 어라운드뷰, 에어컨 등이 장착된 신형 중형표준차량을 2025년 전력화하여 구형 표준차량을 교체하고 있음.

장병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 군 작전능력 발휘를 위해서는 구형 표준차량의 교체 기간을 단축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방부와 각군은 전투지원차량인 표준차량의 적정 정수를 책정함은 물론 책정된 정수에 대한 보유량 확보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구형 표준차량 조기 교체에도 힘씀으로써 장병안전 확보 및 전투지원 태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5) 일반장비(2331-306): 고시금액(2.3억원) 미만의 일반제품 구매 시 적용할 적격심사 기준 정비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일반장비(2331-306) 사업은 각군 및 국직부대(기관)의 정수 대비 부족한 공병장비, 병참장비 등 일반장비의 획득 및 수명초과 장비 교체를 통해 군수지원능력 강화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663억 5,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2억 400만원과 이·전용 등(감) 24억 9,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80억 6,000만원 중 653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3,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억 5,9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5년도 일반장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장비	66,355	4,204	△2,499	68,060	65,366	1,635	1,059	59,488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국방부와 각군의 2025년 계약현황에 따르면, 일반장비 사업에서는 총 482건의 구매계약이 이루어졌고 이 중 80%에 해당하는 385건의 계약이 고시금액(2.3억원)[37] 미만의 계약임.

[일반장비 사업 계약현황]

구분	계약 건수	비율(%)
고시금액 미만	385	80
고시금액 이상	97	20
계	482	100

자료: 국방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은 제6조, 제7조, 제9조에서는 각각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함)의 지정,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통한 계약상대자 결정, 직접생산의 확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38]

---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을 말한다.)
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
ㅇ 공사: 88억 원

3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또한, 경쟁제품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도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3억원)(이하 “고시금액”이라 함) 미만인 물품 및 용역(이하 “일반제품”이라 함)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39]

○ 경쟁제품 구매 입찰 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실적, 기술력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구매 증대) ①공공기관의 장은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② 공공기관의 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일반제품에 대해서는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적용하고 있으며,

동 예규에서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거나 직접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음.[40]

[판로지원법 상의 제품 구분 및 낙찰자 결정 시 적용 기준]

구분	적용 기준
경쟁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일반제품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물품 제조·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인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이하 "국방부 세부기준"이라 함)을 제정·운영 중임.

40)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5항 본문중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별표에 정한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국방부 세부기준은 일반제품에 적용되는 것으로서[41] 구매금액 10억원 이상과 미만의 2단계로 구분하여 심사항목별 배점을 배정하고 있음.

○ 한편,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등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제조·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인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조달청 세부기준”이라 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구매금액 10억원 이상과 미만으로만 구분한 국방부 훈령과 달리 조달청 세부기준에서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과 미만 및 고시금액 미만의 3단계로 심사항목 및 배점을 구분하고 있음.[42]

○ 국방부 세부기준과 조달청 세부기준의 주요 차이점으로는 조달청 세부기준에서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함에 따라 국방부는 2단계로 조달청은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임.

---

41)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42)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으로서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5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별표 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별표 3]

○ 종합해 보면, 우리 군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 구매 시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세부기준과 조달청에서 군수품의 제조·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세부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면서 평가기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군수품인 일반제품에 대한 국방부와 조달청의 각각 다른 적격심사 기준 적용은 입찰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고 동일한 제품에 대해 입찰 주체에 따라 다른 낙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부대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입찰로 군수품을 구매할 시 적용할 기준에 대한 혼선이 초래될 수 있음.

○ 따라서, 국방부는 판로지원법의 취지, 조달청과 다른 기준 적용에 따른 일선 부대의 혼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금액 미만의 일반제품 구매 시 적용할 적격심사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비교]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심 사
분 야</th><th colspan="2">조달청 세부기준(고시금액 미만)</th><th colspan="2">경쟁제품 세부기준</th></tr>
<tr><th>심 사 항 목</th><th>배점
한도</th><th colspan="2">심 사 항 목</th><th>배점
한도</th></tr>
<tr><td>계</td><td></td><td></td><td>100</td><td colspan="2"></td><td>100</td></tr>
<tr><td>Ⅰ. 해당
물품 납품
이행 능력</td><td>1.
경영
상태</td><td>가. 신용평가등급</td><td>30</td><td colspan="2">신용평가등급</td><td>30</td></tr>
<tr><td>Ⅱ. 입찰
가격</td><td>1. 입찰
가격</td><td></td><td>70</td><td colspan="2"></td><td>70</td></tr>
<tr><td rowspan="2">Ⅲ
신인도</td><td rowspan="2">1.
품질
관리
등
신뢰
정도</td><td rowspan="2">가. 기술인증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정책지원(군수품 정책 지원 포함)
바. 불공정계약행위
- 급식류는 ④품질하자, ⑤식품위생법 위반 등 주요법률 위반, ⑥농수산물의 원산지 위반 적용 포함
사.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td><td rowspan="2">+3
~
-5</td><td>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td><td>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td><td rowspan="2">+3
~
-2</td></tr>
<tr><td>2.
계약이행
성실도</td><td>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td></tr>
<tr><td>Ⅳ.
결격
사유</td><td>1.
해당
물품
납품
이행
능력
결격
여부</td><td>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나. 생산능력 부족으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제조에 한함)</td><td>-30

-30</td><td colspan="2">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td><td>-30</td></tr>
</table>

자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국방부)]

<table>
<tr><th rowspan="3">구분</th><th rowspan="3">심사분야</th><th rowspan="3">심사항목</th><th colspan="3">배점한도</th></tr>
<tr><th rowspan="2">제조</th><th colspan="2">구매</th></tr>
<tr><th>10억원
이상</th><th>10억원
미만</th></tr>
<tr><td>계</td><td></td><td></td><td>100</td><td>100</td><td>100</td></tr>
<tr><td rowspan="5">1)
당해
물품
납품
이행
능력</td><td>소 계</td><td></td><td>50</td><td>50</td><td>30</td></tr>
<tr><td>납품실적</td><td>①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②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td><td>10</td><td>10</td><td>미적용</td></tr>
<tr><td>기술능력</td><td>①기술인력 보유
②생산기술 축적정도</td><td>10</td><td>미적용</td><td>미적용</td></tr>
<tr><td>경영상태</td><td>신용평가등급</td><td>30</td><td>40</td><td>30</td></tr>
<tr><td>2)입찰가격</td><td></td><td>평점산식 참조</td><td>50</td><td>50</td><td>70</td></tr>
<tr><td rowspan="5">3)
신인도</td><td>품질정도</td><td>①품질관리, ②기술보유
③환경관리</td><td rowspan="5">+3
~
-7.2
/
(급식류)
+3
~
-10.0</td><td>미적용</td><td>미적용</td></tr>
<tr><td>계약이행
성실도</td><td>①품질하자, ②불공정 계약행위
③부당노동행위
④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급식류)
⑤경고장(급식류)
⑥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급식류)</td><td rowspan="2">+1.15
~
-7.2
/
(급식류)
+1.15
~
-10.0</td><td rowspan="2">+1.15
~
-7.2
/
(급식류)
+1.15
~
-10.0</td></tr>
<tr><td rowspan="2">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td><td>①고용창출, ②혁신형 중소기업
③장애인기업
④여성기업 지원 등</td></tr>
<tr><td>⑤정책지원</td><td>(급식류)
미적용</td><td>(급식류)
미적용</td></tr>
<tr><td></td><td>⑥산업안전</td><td></td><td></td></tr>
<tr><td rowspan="2">4)
결격
사유</td><td rowspan="2">당해물품
납품이행
결격여부</td><td>부도 등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td><td>-10</td><td>-10</td><td>-10</td></tr>
<tr><td>②생산능력 부족으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td><td>-10</td><td>미적용</td><td>미적용</td></tr>
</table>

자료: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표

(16) 병참물자(2332-302):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부합하는 예산편성 및 집행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병참물자(2332-302) 사업은 작전 및 부대 운영에 필요한 비품, 천막, 행정사무기기 등 자산성 물자와 행정소모품, 세척재료 등 소모성 물자의 획득·보급 및 장병급식 질 향상을 위한 현대화 취사기구, 가스 취사세트 소요, 기타 각종 취사기구 보충, 노후 교체 소요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2,441억 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2억 1,000만원과 이·전용 등(감) 68억 1,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434억 9,100만원 중 2,277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87억 3,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0억 1,2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5년도 병참물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병참물자	244,101	6,210	-6,819	243,491	227,744	8,735	7,012	308,757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현행 프로그램 예산제도(Program Budgeting System)는 성과지향의 예산체계로 ① 전략적 재원배분과 재정효과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며, ② 성과계획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집행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별로 예산을 운용하는 방식임.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 상하계층 구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에서는 리모델링 및 신축 병영식당에 대한 취사기구 및 취사비품 예산으로 378억 1,200만원을 편성 후 219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공사계획 변경 및 취소로 미집행된 집행잔액 159억 300만원은 노후된 취사기구의 교체를 위해 집행하였음.

[병영식당 공사 등에 따른 취사비품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	집행	집행잔액
육군	36,969	21,219	15,750
해군	97	97	0
공군	72	0	72
해병대	674	593	81
계	37,812	21,909	15,903

자료: 국방부

○ 한편, 동 사업의 주된 사업인 병영식당의 리모델링 및 신축공사는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2500프로그램) 사업 내 병영기본지원시설(2531-304)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음.

병영기본지원시설 사업은 병영식당, 목욕탕, 화장실, 급수시설, 전투체육시설, 여성필수시설 등 장병들의 병영생활 필수시설의 부족소요를 확보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장병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 병영기본지원시설(병영식당)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병영식당	118,200	28,996	△14,547	132,650	105,242	11,203	16,205	99,765

자료: 국방부

○ 즉, 병영식당의 시설공사에 종속되어 집행될 예정이었던 취사 비품 등의 구입 예산이 주된 사업인 시설공사가 편성된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2500프로그램) 사업과는 다른 군수지원 및 협력(2300 프로그램) 사업에 편성됨에 따라

주된 사업인 시설공사의 변경 또는 취소에도 불구하고 종된

사업인 취사비품 등의 구입 예산은 불용되지 않고 당초 예산에 편성된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임.

이는 사업별로 예산을 운용하는 방식을 택한 프로그램 예산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의 심사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방식임.

○ 따라서 국방부와 각군은 향후 예산 편성 시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동일 목적 사업은 동일 사업으로 편성 및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7) 물자유지(2332-305): 자산취득에 소요되는 조달수수료 등의 적정 편성 및 지출 방안 강구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물자유지(2332-305) 사업은 부대비품, 취사기구, 행정사무기기 등 적기 정비를 통한 효율적 물자 운용 및 정수기, 비데 임차료 확보를 통한 병영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655억 8,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억 1,200만원과 이·전용 등(증) 7억 4,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68억 3,400만원 중 630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19억 9,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6,8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5년도 물자유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물자유지	65,581	512	742	66,834	63,071	1,996	1,768	59,022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작성지침”이라 함)에 따르면,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는 자산취득비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있음.

수수료 및 사용료 집행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와의 구분 시에는 자산취득에 따른 등기비 등 수수료는 해당과목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작성지침 상의 수수료 및 사용료 규정]

구 분	210-01목(일반수용비)	기타비목에 계상
수수료 및 사용료	・물품관리위탁수수료 및 업무대행 수수료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등기 및 소송료 (인지대 및 법정 수수료)	・철도운송료는 210-02목(공공요금 및 제세)에, 기업특별회계에서 물자 조작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210-16목(기타운영비)에 계상 ・<u>자산취득에 따른 등기비 등 수수료는 해당과목에 계상</u> ・출장관련 고속도로통행료 및 주차료는 국내여비(220-01목)로 편성

자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참고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일반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규정하고 있음.[43)]

○ 그런데 동 사업의 집행현황을 보면, 병참물자 세부사업에서 취득한 자산취득에 소요되는 조달수수료 등을 업무대행수수료라는 대표계정과목명으로 물자유지 세부사업의 일반수용비로 집행하고 있음.

이는 사업별로 예산을 운용하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을 규정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작성지침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방부와 각군은 자산취득에 소요되는 조달수수료 등의 수수료에 대한 적정 편성 및 지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자산취득 및 수수료 집행현황(예시)]

(단위: 원)

계약명	금액	대표계정과목명	세목	세부사업
2025-04호조달청(일반비품 및취사비품노후교체)	24,19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5,600,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3,70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858,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2,07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480,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73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170,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4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일반유형자산의 평가) ① 일반유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定額法)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단위: 원)

계약명	금액	대표계정과목명	세목	세부사업
2025-05호조달청(정훈공보실비품) 물자발주	1,500,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6,48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1,500,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6,48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2,316,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10,58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990,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4,27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2025-06호조달청(7여단/보수교육대노후교체비품)	3,68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852,5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7,65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1,772,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74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173,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10,31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2,388,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2025-07호조달청(해안감시기동대대비품)구매	3,55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822,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7,74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1,792,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17,89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3,854,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2025-09호조달청(관사노후교체비품)구매	6,75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1,564,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6,48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1,500,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2,24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520,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2,48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576,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6,51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1,429,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2025-12호조달청(관사노후교체비품)(침대)	2,58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598,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2025-13호조달청(사단본부지휘부신규비품)구매	14,35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3,324,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2025-14-1호조달청(사단참	4,65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단위: 원)

계약명	금액	대표계정과목명	세목	세부사업
모실및보수교육대비품)	1,077,9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2,32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538,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2025-14-2호조달청(사단참	6,68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모실및보수교육대비품)	1,548,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2025-14-3호조달청(사단참	17,43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모실및보수교육대비품)	3,658,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2025-16호조달청(사단본부	6,218,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소회의실신규비품)	26,86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2025-20호조달청(취사장신	5,01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규비품(보관용선반))구매	1,160,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2025-20호조달청(취사장신	251,33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규비품(소독기)) 구매	58,180,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2025-23호조달청(31대대취	5,18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사장신축비품) 구매(2)	1,500,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2025-23호조달청(31대대취 사장신축비품) 구매(3)	1,200,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57,02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13,200,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10,36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2,400,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2025-23호조달청(31대대취	189,88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사장신축비품)구매(6)	43,954,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2025-23호조달청(31대대취	43,36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사장신축비품)구매(4)	10,038,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2025-23호조달청(31대대취	30,88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사장신축비품) 구매(1)	7,150,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2025-23호조달청(31대대취	8,79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사장신축비품)구매(7)	2,037,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2025-24호조달청(과학화훈	14,190,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련장비품)구매(2)	76,62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2025-24호조달청(과학화훈	9,800,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련장숙영지비품)구매	52,92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2025-25호조달청(2여단수	8,910	업무대행수수료	일반수용비	물자유지
송대창설비품)구매(2)	2,064,000	자산	자산취득비	병참물자

자료: 국방부

(18) 일반장비(유지)(2333-310):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 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일반장비(유지)(2333-310) 사업은 각군 및 국직부대에서 운용 중인 굴삭기, 발전기 등 공병장비, 제독차, 방독면 등 화학장비 및 기타장비에 대한 정비지원과 수리부속 적기 지원으로 장비 수명관리 및 가동률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679억 6,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9억 8,200만원과 이·전용 등(감) 3억 2,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26억 2,600만원 중 648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5,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5억 4,0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5년도 일반장비(유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장비 (유지)	67,966	4,982	△322	72,626	64,832	1,255	6,540	62,501

자료: 국방부

○ 일반장비(유지) 사업은 외주정비, 창정비를 위한 수리부속 구매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210-09), 재료비(210-11)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며 상세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2025년도 일반장비(유지) 사업 기능·비목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공병장비	36,204	2,112	550	38,865	34,891	595	3,379
- 일반수용비(210-01)	47	-	-	47	40	7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5,014	21	170	5,205	4,910	177	118
- 재료비(210-11)	30,826	2,085	247	33,157	29,493	404	3,261
- 국내여비(220-01)	316	-	133	450	442	7	-
- 자산취득비(430-01)	-	6	-	6	6	-	-
· 화학장비	20,704	2,265	160	23,129	20,401	189	2,539
- 시설장비유지비(210-09)	3,610	84	△0	3,694	3,503	75	116
- 재료비(210-11)	17,018	2,181	132	19,331	16,795	112	2,424
- 국내여비(220-01)	76	-	29	105	103	2	-
· 기타장비	11,058	606	△1,032	10,632	9,540	471	621
- 일반수용비(210-01)	56	-	△0	56	52	2	2
- 임차료(210-07)	7	-	-	7	7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224	121	△38	4,306	3,634	310	362
- 재료비(210-11)	5,962	290	△905	5,347	5,052	157	138
- 일반용역비(210-14)	143	-	△35	107	-	-	107
- 국내여비(220-01)	22	-	5	27	25	2	-
- 자산취득비(430-01)	645	195	△57	782	770	-	12
합 계	67,966	4,982	△322	72,626	64,832	1,255	6,540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국방부와 각군의 2025년도 일반장비(유지) 사업의 비목별 계약 현황을 계약 건수 기준으로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58건으로 29.7%, 재료비에서 593건으로 68.3%의 계약이 이루어 졌음

[2025년도 일반장비(유지) 사업 비목별 계약 현황]

구분	일반수용비 (210-01)	시설장비유지비 (210-09)	재료비 (210-11)	자산취득비 (430-01)	계
건수	2	258	593	15	868
비율(%)	0.2	29.7	68.3	1.7	100.0

자료: 국방부

○ 국방부와 각군은 주로 외주정비용역인 경우 시설장비유지비로, 수리부속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재료비로 집행하고 있음.

다만, 이 구분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타이어 정비를 예로 들면, 외주정비의 경우 모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집행하였지만 타이어를 직접 구매한 경우에는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로 집행한 경우가 혼재하고 있음.

[타이어 정비관련 계약 현황(예시)]

(단위: 천원)

계약명	세목	금액
'25년 90톤 크레인 타이어 외주정비	시설장비유지비(210-09)	16,456
25-276, 90톤 크레인(타이어) 외주정비	시설장비유지비(210-09)	16,531
25-267 크레인 타이어교체 외주정비	시설장비유지비(210-09)	8,228
타이어 1종(25-028)	재료비(210-11)	9,768
타이어 1종(25-048)	재료비(210-11)	12,300
타이어 1종(25-167)	재료비(210-11)	1,520
20비 25-57 타이어 등 3종	재료비(210-11)	10,370
타이어 등 5종 구매	시설장비유지비(210-09)	5,364
(일장) 다목적굴착기 타이어 구매	재료비(210-11)	50,656

자료: 국방부

○ 또한, 외주정비용역을 재료비로 집행한 경우도 발견되고 있음.

[재료비로 집행된 외주정비용역 계약 현황(예시)]

(단위: 천원)

계약명	세목	금액
25년 2급양대 발전기 정비 계약	재료비(210-11)	6,820
00부대 굴착기 외주정비 용역	재료비(210-11)	16,005
굴착기 정비용역	재료비(210-11)	10,784

자료: 국방부

○ 종합해 보면, 국방부와 각군은 외주정비용역인 경우 시설장비 유지비로, 수리부속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재료비로 집행하는

원칙 하에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출예산과목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운반구 유지비,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료비는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 비용 등으로 규정하면서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 등은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결국 집행지침에 따르면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와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 모두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음.

○ 따라서, 국방부와 각군은 외주정비와 수리부속 구매에 소요되는 예산을 집행지침이 규정한 대로 계상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의 구분]

구분	시설장비유지비(210-09)	재료비(210-11)
내용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목재, 석탄, 폐지 등 유류 이외의 연료구입비 포함)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기타 차량·비행기·선박 등 운반구 유지비 * 동력장치, 중장비, 운반구 등의 가동을 위한 유류의 구입비는 '유류비(210-08)목'에 계상 -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공사비(420-03)목'에 계상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물품(소모성물품은 제외)은 자산취득비(430-01)목에,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 등은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에 계상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 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자료: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9) 군사대학교육 (2432-301): 집행 잔액을 이월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의 재발 방지 방안 강구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군사대학교육(2432-301)은 국방대학교와 각군대학(합동군사대학교,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재료비, 강사료, 교육비품·장비 지원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액 114억 6,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300만원과 이·전용 등(증) 3,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5억 3,800만원 중 107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2,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7,6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5년도 군사대학교육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군사대학교육	11,469	33	37	11,538	10,740	323	476	11,645
각군대학	5,357	-	247	5,604	5,164	306	133	5,433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각군대학 내역사업은 합동군사대학교 및 각군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교육재료비, 강사료, 교육여비, 교육비품·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53억 5,700만원에 이·전용(증) 2억 4,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6억 400만원 중 51억 6,400만원이 집행되었음.

○ 국방부는 각군대학 내역사업을 통해 2025년도부터 M-MOOC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M-MOOC사업은 합동대 및 육·해·공군대학 원격교육과정으로 국방부, 국직부대, 부대에 근무하는 전 장병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강좌, 각 군 및 국직부대에서 병과별, 직책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 장병들의 국방 및 군사지식, 국방정책을 지원·홍보할 수 있는 자기개발 과정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계획은 42억원임.

○ 국방부는 2026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M-MOOC 사업추진에 필요한 스튜디오 임차료 3억 2,600만원을 요구했으나, 1,800만원만이 예산안에 반영되었음.

이에 국방부는 2026년도 스튜디오 임차료 부족분 3억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2025년도 12월 9일 군사대학 세부사업의 집행잔액

7,800만원을 세목조정하고, 병과학교교육 세부사업의 예산 2억 2,2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3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2025년 연도말에 이월처리하여 2026년 3월 17일 스튜디오 방송장비 설치리스료로 2억 8,849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년도 M-MOOC 스튜디오 관련 예산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명 (내역,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12.09.)	군사대학교육 (2432-301)	210-01	78	군사대학교육 (2432-301)	210-07
세부사업 변경 ('25.12.09.)	병과학교교육 (2432-302)	210-01	80		
		210-04	14		
		210-07	31		
		210-09	9		
		210-11	88		
계			300		

자료: 국방부

○ 다만, 국방부가 M-MOOC스튜디오 임차료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편성 및 국회의 예산심의·의결 등을 거쳐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함.

○ 또한, M-MOOC 스튜디오 임차료사업은 실질적인 집행예정 시기가 2026년도이므로, 2026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통해 집행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병과학교교육 등 2개의 세부사업들의 집행잔액을 예산변경하여 마련한 2025년도 예산 3억원에 대하여 임의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이월처리하고 2026년 3월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3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44] 및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예산집행임.[45]

○ 따라서 국방부는 연도말에 집행 잔액을 예산변경·이월하여 차년도 예산의 목적 외로 집행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44)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 여야 한다.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45) 집행지침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동 집행은 가, 나, 다에 모두 해당하는 집행임.
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다. 연도말에 다른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을 전용하여 불요불급한 소요에 충당하여 집행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등

(20) 과학화훈련 (2434-301): 첨단과학훈련장비의 집행지연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과학화훈련은 CBT(Computer Based Training)[46] 교육, 워게임·전투지휘훈련, 첨단과학훈련장비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년도 예산액 878억 3400만원에 이·전용 등(감) 84억 4,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72억 3,100만원 중 712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40억은 이월, 120억 3,7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5년도 과학화훈련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과학화훈련	87,834	7,841	△8,444	87,231	71,243	3,951	12,037	84,389
첨단과학훈련장비	52,736	7,000	7,076	52,660	39,771	1,841	11,048	57,272

자료: 국방부

46) CBT장비로는 PC, 모니터, 노트북, 전자칠판, 전자교탁 등 CBT 교육에 필요한 전산장비가 있음.

○ 첨단과학훈련장비는 첨단과학훈련 인프라 조성을 위한 실기동 모의훈련장비, 가상모의훈련장비 구축 등을 추진하는 내역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527억 3,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70억 원과 이·전용(감) 70억 7,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26억 6,000만원 중 397억 7,1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75.5%로 저조하였음.

○ 첨단과학훈련장비의 주요 내역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실기동모의교전장비가 집행률이 59.4%로 가장 낮았고, 가상모의훈련체계 구축은 74.3%로 저조함에 따라 동 내역사업의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였음.

[2025년도 첨단과학훈련장비의 주요 내역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주요 내역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실기동 모의교전장비	30,220	17,957	59.4
가상모의 훈련체계 구축	10,245	7,615	74.3
기타 교육훈련장비 유지보수	12,268	10,797	88.0

자료: 국방부 제출

○ 먼저, 실기동 모의교전장비의 집행률이 가장 낮은 이유로는 육군의 화생방 마일즈 장비 관련 사업추진 일시중단(4개월)과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목록화 작업(2개월)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어

예산액 26억 7,000만원이 전액이 불용처리되었고, 도시지역작전훈련장 과학화훈련체계 구축도 계획 대비 사업추진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본공사 착공에 들어가지 못함에 따라 집행률이 29.7%으로 저조하였기 때문임.

[2025년도 첨단과학훈련장비의 주요 내역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화생방 마일즈 장비(육군) *'25~'28년, 84식, 총사업비 5,800백만원	2,670	0	0.0
도시지역작전훈련장 과학화훈련체계 구축(육군) *'25~'28년, 3식, 총사업비 19,080백만원	7,094	2,108	29.7
합성훈련환경(STE) 플랫폼 구축(육군) * '25~'26년, 총사업비 11,070백만원	1,800	0	0.0

자료: 국방부 제출

○ 다음으로, 가상모의 훈련체계 구축의 집행부진 이유로는 합성훈련환경(STE) 플랫폼 구축사업이 2025년 9월 입찰공고 의뢰 후 산출내역서 및 원가검증에 2개월 가량 소요되는 사업추진 지연이 발생하여 연도내 계약 미체결로 예산액 18억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기 때문임.

○ 따라서 국방부와 육군은 첨단과학화훈련장비의 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공고 및 원가검증 소요 기간 등의 집행 지연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집행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21)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2436-302):연례적인 집행부진에 대한 사업추진절차의 개편 등의 개선방안 강구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2436-302)은 훈련장 부지매입, 훈련장 시설, 훈련장 시설유지 및 일반교육시설 건설 및 운영을 추진하는 사업임.

○ 2025년도 예산액 2,555억 1,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21억 3,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018억 9,100만원 중 2,493억 6,800만원이 집행되고, 289억 5,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35억 6,700만원이 불용됨.

[2025년도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255,516	52,133	△5,757	301,891	249,368	28,957	23,567	247,866
훈련장 시설	182,313	36,014	△13,355	204,972	160,724	26,968	17,280	178,084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훈련장 시설은 노후된 훈련장 시설을 보강하고 실전적인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한 제반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역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1,823억 1,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60억원 1,400만원 및 이·전용(감) 133억 5,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049억 7,200만원 중 1,607억 2,400만원이 집행되었음.

[연도별 훈련장 시설 내역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대비 집행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훈련장 시설	2021년	92.4	**84.9**	13.5	2.9
	2022년	87.4	**85.9**	10.1	4.3
	2023년	87.2	**80.3**	18.4	3.0
	2024년	93.7	**77.1**	22.0	5.8
	2025년	88.2	**78.4**	14.8	9.5

자료: 국방부

○ 훈련장 시설사업은 연례적 집행부진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2022년 85.9%, 2023년 80.3%, 2024년 77.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25년도 2024년과 유사한 수준인 78.4%로 저조하였음.[47)]

47) 2021회계연도 및 2022회계연도 국방위원회 결산 검토보고서 및 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훈련장 시설 내역사업에 대하여 사업관리 철저 및 집행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

○ 특히, 다음 표에 설명된 10개의 훈련장 시설에 대한 공사 건들의 경우에는 2025년 공사비가 10억원 이상 투입되었으나, 대관협의·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 따른 공기부족, 설계변경·지연, 오양토양 식별 등으로 인해 집행률이 50% 이하로 저조하였음.

[공사비 10억원 이상 편성사업 중 집행률(50% 이하) 저조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5년				2026 예산	비 고 (세부내용)
			비목	편성	집행	집행률		
육군 39사단 117여단 차단벽구조 사격장 신설	'23-'27	15,418	기본조사설계비	-	-		-	-(진도) 시공 8% -대관협의·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 따른 공기 부족
			실시설계비	-	-		-	
			공사비	4,063	1,293		0	
			감리비	44	202		346	
			시설부대비	11	11		5	
			소계	4,118	1,506	36.6	351	
육군 개금 예비군 훈련장 영내 실내사격장 조성	'23-'26	5,238	기본조사설계비	-	-		-	-(진도) 착공 예정 -사업부지 내 오염토양 식별에 따른 토양정화사업 중 (8월 종료 예상)
			실시설계비	-	-		-	
			공사비	2,136	196		915	
			감리비	339	0		145	
			시설부대비	23	23		6	
			소계	2,498	219	8.8	1,066	
육군 2작전사 서부권역 도시지역	'23-'27	17,835	기본조사설계비	-	-		-	-(진도) 시공 5% -대관협의 지연 및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 따른 공
			실시설계비	-	-		-	
			공사비	4,538	1,873		2,365	

었음.

① 2021회계연도 결산: 국방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사업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편성된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② 2022 회계연도 결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사업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편성된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③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주의): 국방부는 훈련장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와의 협의사항 및 설계 시 고려사항 등을 반영하고, 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연례적 집행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2025년				2026 예산	비 고 (세부내용)
			비목	편성	집행	집행률		
작전훈련장 신설			감리비	394	119		233	기 부족
			시설부대비	11	1		6	
			소계	4,943	1,993	40.3	2,604	
육군 17사단 합성훈련 환경 플랫폼 훈련장 개수	'25-'26	1,827	기본조사설계비	-	-		-	-(진도) 시공 20% -자체 설계 조치, 소방시설 보강 등 집행계획 변경으로 인한 설계 지연 -집행계획 변경 (기간 연장)
			실시설계비	-	-		-	
			공사비	1,579	0		-	
			감리비	169	0		-	
			시설부대비	7	7		-	
			소계	1,755	7	0.4	0	
육군 1사단 15여단 실내사격 훈련장 신축	'23-'27	725	기본조사설계비	-	-		-	-(진도) 착공 준비 중 -사업부지 내 오염토양 식별에 따른 토양정화사업 중 (5월 종료 예상)
			실시설계비	-	-		-	
			공사비	2,048	450		-	
			감리비	22	0		-	
			시설부대비	1	1		-	
			소계	2,071	451	21.8	0	
육군 15사단 소부대 과학화(VR) 훈련장 개수	'25-'26	1,346	기본조사설계비	24	24		-	-(진도) 공사계약 중 -사업대상건물 노후에 따른 안전진단 및 구조보강, 과학화 장비 제원 확인에 따른 집행계획 변경으로 설계 지연 -집행계획 변경 (기간 연장)
			실시설계비	36	36		-	
			공사비	1,155	0		-	
			감리비	124	0		-	
			시설부대비	7	7		-	
			소계	1,346	67	5.0	0	
육군 5사단 소부대 과학화(VR) 훈련장 개수	'25-'26	1,963	기본조사설계비	33	33		-	-(진도) 공사계약 중 -사업대상건물 노후에 따른 안전진단 및 구조보강, 과학화 장비 제원 확인에 따른 집행계획 변경으로 설계 지연 -집행계획 변경 (기간 연장)
			실시설계비	50	50		-	
			공사비	1,691	0		-	
			감리비	181	0		-	
			시설부대비	7	7		-	
			소계	1,962	90	4.6	0	
육군훈련소 실내사격 훈련장 신축	'23-'26	24,098	기본조사설계비	-	-		-	-(진도) 설계 60% -조달청 적정성 검토 후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대기 중
			실시설계비	-	-		-	
			공사비	10,885	0		-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2025년				2026 예산	비 고 (세부내용)
			비목	편성	집행	집행률		
			감리비	805	0		-	
			시설부대비	34	17		-	
			소계	11,724	17	0.1	0	
육군 보병학교 소부대 과학화(VR) 훈련장 개수	'25-'26	1,306	기본조사설계비	24	24		-	-(진도) 공사계약 중 -사업대상건물 지하층 특고압 수변전실로 인한 하중 초과 및 과학화장비 제원 확인에 따른 집행계획 변경으로 설계 지연 -집행계획 변경 (기간 연장)
			실시설계비	35	35		-	
			공사비	1,120	0		-	
			감리비	120	0		-	
			시설부대비	7	7		-	
			소계	1,306	66	5.1	0	
해병대 교육훈련단 도서관 신축	'23-'27	10,077	기본조사설계비	-	-		-	-토사처리장 선정 및 확보 지연에 따른 공사 착공 지연으로 집행 저조
			실시설계비	-	-		-	
			공사비	2,556	923		2,405	
			감리비	34	34		245	
			시설부대비	6	1		3	
			소계	2,596	958	37	2,653	

자료: 국방부 제출

특히, 육군 개금 예비군훈련장 영내 실내사격장(집행률 8.8%)과 육군 17사단 합성훈련 환경 플랫폼 훈련장 개수(집행률 0.4%) 및 육군 15사단 소부대 과학화(VR) 훈련장 개수(집행률 5.0%)은 집행률이 10% 이하로 극히 저조하였고, 공사비가 편성되었으나 설계지연·변경, 오염토양 식별 등으로 본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 보임.

○ 따라서 국방부는 훈련장 시설사업에 대하여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설계변경·오염 토양 식별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규모·공사예산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및 추진절차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2) 간부확보장려사업 (2439-301): 실효성 있는 간부확보 성과 제고 방안 강구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간부확보장려사업은 대학·전문대 재학생 중 지원자에게 가산복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산복무지원금 사업과 학사 및 학군사관 후보생, 단기복무부사관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단기복무장려금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예산액 933억 8,000만원에 이·전용 등(감) 179억 9,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53억 8,100만원 중 750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3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5년도 간부확보장려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간부확보장려 사업	93,380	-	△17,999	75,381	75,060	88	233	159,993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간부확보장려사업은 2025년도 예산액 933억 8,000만원 중 750억 6,000만원에 그쳐 집행률은 80.4%으로, 전년도의 89.5% 대비 9.1%p 감소하였음.

○ 내역사업별로 살펴보면, 장교 가산복무지원금은 집행률이 105.2%로 양호하였는데 반해, 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과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각각 62.6%와 60.4%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내역사업별 집행부진 사유는 다음과 같음.

[2025년도 간부확보장려사업 인원기준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명, %)

구분	2025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편성 인원	집행인원	인원 집행률
간부확보장려사업	93,380	75,060	80.4	9,629	7,524	78.1%
장교 가산복무지원금	41,472	43,625	105.2%	4,821	4,753	98.6%
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	3,116	1,951	62.6%	742	304	41.0%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48,792	29,484	60.4%	4,066	2,467	60.7%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 먼저, 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은 전문대 재학생 중 지원자에게 등록금 상당의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받은 기간만큼 부사관으로 가산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중기복무 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사업임.

2025년도에는 예산편성인원 742명 중 304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어 계획인원 대비 지급실적이 41.0%에 그쳤고, 당초 예산액 31억 1,600만원 대비 19억 5,100만원이 집행되어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비율도 62.6%에 불과하였음.

지급대상자 선발률은 2021년 88.8%에서 2024년 41.4%까지 하락한 후 2025년에는 57.9%로 일부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2021년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지원비·선발률 현황]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지원비	2.4	2.0	1.1	0.8	1.8
선발률	88.8%	77.9%	49.5%	41.4%	57.9%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이러한 실적은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병과 초급간부 간 상대적 보상격차 축소, 복무기간 차이, 근무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부사관 지원기반이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25년 부사관 정원대비 운영률은 평균 83.8%으로, 다른 계급 대비 하사의 운영률이 65.4%로 저조하였음.

[2025년 부사관 정원대비 운영률 현황]

(단위: %)

구 분		정원대비 운영률
부사관(합계)		83.8
	원사	98.3
	상사	94.0
	중사	96.3
	하사	65.4
	임기제	38.6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은 하사로 임관하여 중사급 이상으로 근무하는 중기복무 부사관을 확보하려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중단기 복무 부사관 운영률 제고를 위해서는 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 집행실적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

○ 다음, 내역사업인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은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단기장교 지원율이 감소하자, 우수한 장교 인력 확보 및 금전적 보상 제공 차원에서 2011년부터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2025년 예산편성인원(4,066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평균 집행인원 3,566명분에 더하여 졸업 후 사관후보생 선발자를 위해 500명분(60억원)을 합산하여 편성되었음.

졸업 후 사관후보생 선발자에 대한 단기복무장려금 지급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절차기간

소요로 인하여 2025년 하반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져 500명분의 예산이 불용되었음.

이를 고려하더라도 졸업 후 사관후보생 선발자 500명분을 제외한 당초 계획인원 3,566명 대비 69.4%인 2,467명에 대하여만 단기복무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져 집행실적과 사업성과가 저조하였음.

○ 이러한 2025년도 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과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집행부진은 지원금 지급만으로는 우수한 중단기 간부확보 성과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 따라서 국방부는 중·단기 간부에 대한 보수·수당의 합리적인 인상방안 마련, 자산형성 지원 및 주거 개선 등을 통해 실질적인 처우와 복지개선 정책과 병행하여 간부확보장려사업 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3) 병영생활관(2531-301) : 해병대 병영생활관 사업 집행률 제고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병영생활관(2532-301)은 노후·협소한 병영생활관을 개선함으로써 병사들의 기본권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병영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2025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2,589억 7,900만원에 추경증액 113억 1,600만원, 전년도 이월액 296억 8,900만원에 이·전용 등(증) 215억 4,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215억 3,200만원 중 2,485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418억 4,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11억 3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병영생활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258,979	270,295	29,689	21,548	321,532	248,581	41,848	31,103	336,444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병영생활관 사업은 노후·협소한 병영생활관을 개선함으로써 병사들의 기본권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병영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각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병영생활관, GOP소초 병영생활관, 교육생생활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병대 방문조사를 통해 도서지역 부대 등의 생활여건을 점검한 결과, 수질 문제 및 반복적인 물 사용 제한 등 일부 부대의 생활환경이 열악한 사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48].

[국가인권위원회의 해병대 방문조사 당시 현황 사진]

	
샤워기 필터 모습 현황	샤워기 헤드 미부착 현황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48) 2024년 해병대 방문조사에 따른 장병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 등. 국가인권위원회. 2024.7.31.

○ 이처럼 해병대 부대의 장병 생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은 장병 복무여건 향상을 위해 적기에 추진될 필요성이 크다고 보임.

○ 그러나 병영생활관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해병대 병영생활관 사업의 2025년도 예산현액 기준 집행률은 32.3%에 불과하며, 세부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5년도 해병대 병영생활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51,280	51,280	5,904	△11,258	45,926	14,822	14,220	16,883	32.3

자료: 국방부

○ 특히 해병대 병영생활관 사업은 일부 특정 사업의 집행만 부진한 것이 아니라, 사업 전반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각의 결산 현황 및 사업 부진 사유는 다음과 같음.

[2025년도 해병대 병영생활관 단위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편성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집행 부진사유
2사단 노후 애기봉 중본	851	1,499	5	-	1,494	0.3	대관협의 지연
2사단 노후 원골중본	1,003	1,808	640	904	263	35.4	
2사단 노후 불기둥 소초	470	875	4	-	870	0.5	
연평부대 우도경비대	1,441	208	115	5	87	55.3	
1사단 노후 모포소초	1,378	273	133	-	138	48.7	
1사단 두원소초	11,605	12	10	-	2	83.3	
2사단 말도 소초	1,418	118	1		117	0.8	
2사단 노후 볼음소초	905	2,708	769	-	1,939	28.4	
2사단 노후 북성리중본	1,284	3,640	123	803	2,713	3.4	
2사단 노후 서검소초	1,013	4,064	331	553	3,180	8.1	
6여단 고봉포 중본 등 6개	4,166	1,660	21	72	1,567	1.3	행정 절차 추가 진행 (행정 절차 개선 검토)
1사단 노후 나아소초 등 8건	6,222	830	206	-	625	24.8	행정 절차 추가 진행 (경계작전 효율성 검토)
연평부대 탄약소대 등 3건	1,931	62	32	3	27	51.6	행정 절차 추가 진행 (사업 타당성 재검증)
6여단 노후 염수개소초	751	1,620	196	1,215	209	12.1	현장여건 (업체부도)
6여단 노후 17중대	691	1,137	191	673	273	16.8	
2사단 노후 염하중본	1,200	4,037	435	2,564	1,038	10.8	현장여건 (연약지반)
2사단 노후 무학소초	720	2,749	198	2,383	168	7.2	
임시숙영 시설 7건	5,579	3,400	1,296	728	1,376	38.1	현장여건
기타 사업	8,652	15,226	10,116	4,317	798	66.4	기타

자료: 국방부

○ 주요 집행 부진 사유는 공원점용 및 산지전용 허가, 지자체 공유지 무상대부계약, 전력증설 협의 등 대관협의 진행(130억원), 행정절차 추가 진행(23억원)으로 계획대비 설계가 지연되었고, 연약지반 보강공사 및 업체부도 등 현장여건 반영(106억원)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해병대 병영생활관 사업은 최근 3년간의 집행실적을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집행률이 높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2023년도 집행률은 49.1%, 2024년도는 74.7%, 2025년도는 32.3%로 나타나고 있는바, 사업 추진과정에서 집행 지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해병대 병영생활관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23	31,823	1,276	3,956	37,055	18,197	17,937	922	**49.1**
2024	40,047	17,937	△11,228	46,756	34,946	5,904	5,906	**74.7**
2025	51,280	5,904	△11,258	45,926	14,822	14,220	16,883	**32.3**

자료: 국방부

○ 따라서 해병대는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병영생활관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관협의 및 행정절차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집행 부진 요인을 면밀히 관리하여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24) 병영기본지원시설(2531-304): GOP 지역 여성시설 설치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 집행 부진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병영기본지원시설(2531-304)는 군인(장교)의 병영식당, 목욕탕, 화장실, 급수시설, 전투체육시설, 여성필수시설 등 장병들의 병영생활 필수시설의 부족소요를 확보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장병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 2025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2,144억 1,800만원에 추경증액 526억 5,500만원, 전년도 이월액 386억 8,700만원에 이·전용 등(감) 401억 7,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655억 8,600만원 중 2,144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200억 3,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11억 4,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병영기본지원시설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214,418	267,073	38,687	△40,174	265,586	214,405	20,039	31,141	230,745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국방부(육군)는 여성 군인의 복무여건 보장을 위해 여성필수시설(샤워실·탈의실 등) 및 여성화장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으로 여성필수시설 158억원, 여성화장실 244억원 등 총 402억원을 편성하였음.

[2025년도 여성시설 설치사업 예산편성 현황]

구 분	물량	예산	비고
계	-	402억원	-
여성필수시설	280동분	158억원	0.56억원/1동
여성화장실	443개소분	244억원	0.55억원/1개소

자료: 국방부

○ GOP 지역은 국정과제 및 국방개혁 2.0에 따른 여군 확대 정책의 영향으로 여군 근무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5년 기준 GOP 근무 여군은 283명에 달함.

[연도별 GOP 근무 여군 현황]

(단위: 명)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원수	78	88	130	191	283

자료: 국방부

○ 그러나 2025년 기준 GOP 소초의 화장실 미설치율은 40.7%에 달하여 「국방·군사시설기준」상 독립소대급(소초) 이상 부대에 여성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여성필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49].

[2025년 GOP 여성시설 미설치 현황]

(단위: %)

전체 소초 수	화장실 미설치 개소	화장실 미설치율
275	112	40.7

자료: 국방부

○ 이처럼 GOP 지역의 여성시설 확충이 미비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육군)는 2025년 전반기 집행계획 수립 시 여성필수시설 계획 전체(214개소)의 80.8%, 여성화장실 계획 전체(362개소)의 92.5%를 GOP 외 부대에 배정하는 등 GOP 지역에 대한 여성시설 확충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임.

49) **「국방·군사시설기준」** 3편 설계지침 3-10-10
생활관 설계지침 1부 2장 건축계획(21p)
7. 여성 필수시설
가. **독립소대급(소초) 이상 부대에 설치**한다.
나. 규모와 배치 등은 사용부대의 특성을 고려한다.
다. **여성 근무 여부와 무관하며, 상시 근무자가 있을 시 계획**한다.
(이하 생략)

[2025년 전반기 여성시설 집행지시 내역]

구 분	계 (A+B)	GOP부대		GOP 외 부대	
		개소(A)	비중(%)	개소(B)	비중(%)
여성필수시설	214	41	19.2	173	80.8
여성화장실	362	27	7.5	335	92.5

자료: 국방부

○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6월 GOP지역 여성시설 확충과 관련한 인권 상황 개선을 권고[50]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육군)는 같은 해 9월 GOP 지역의 160개소(여성필수시설 114개소, 여성화장실 46개소)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계획을 재조정하였음.

그러나 사업조정이 2025년 9월에야 이루어짐에 따라 연내 준공에 필요한 절대공기가 확보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물량이 2025년 연말 기준 설계 단계에만 머무르고 착공에 이르지 못해, 2025년도 여성시설 사업의 집행률은 31.3%에 불과하였음.

[2025년도 여성시설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41,661	41,661	-	△20,352	21,308	13,042	830	7,436	28,831

자료: 국방부

50) 육군 GOP 여군 시설 개선 권고. 2025.6.9. 국가인권위원회

○ 결과적으로 국방부(육군)는 2025년 전반기 집행계획 수립 시점이 아닌, 2025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계기로 뒤늦게 계획을 변경 수립함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예산 집행률 저조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방부(육군)는 GOP 지역 여군 근무인력의 지속적 증가 추세와 「국방·군사시설 기준」상 여성시설 설치 의무를 충실히 반영하여, GOP 지역 여성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5) 일반지원시설(2533-303): 면밀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일반지원시설(2533-303)는 노후 및 부족한 행정시설, 종교시설, 전기시설 등을 개선하여 군사대비태세 완비 및 장병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임.

○ 2025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5,226억 5,400만원에 추경증액 622억 2,100만원, 전년도 이월액 728억 1,100만원에 이·전용 등(감) 504억 8,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071억 9,900만원 중 5,105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266억 5,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99억 8,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일반지원시설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522,654	584,875	72,811	△50,487	607,199	510,557	26,656	69,986	624,117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국방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반지원시설 사업에 622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해당 증액 예산에는 육군의 PCBs 함유 변압기 교체사업 및 유휴시설 철거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먼저, PCBs 함유 변압기 교체사업[51]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2025년까지 50ppm 이상의 PCBs 함유 변압기를 교체[52]하기로 하고, 2025년 제2회 추경을 통해 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2025년 육군 PCBs 함유 변압기 교체사업 예산 편성내역]

(단위 : 대, 백만원)

물량	추경 편성액	비고
1,250	6,000	세목: 공사비(420-03) 단가: 변압기 대당 480만원 (변압기 구매 215만원, 변압기 교체 265만원)

자료: 국방부

51) PCBs(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은 절연성과 내열성이 우수하여 변압기 등 전력 설비의 절연유로 사용되어 온 물질임.
다만, PCBs는 높은 잔류성과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이 확인됨에 따라, 2001년 채택되고 한국이 비준한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고 단계적 폐기가 추진되고 있음.

52) [국방부의 PCBs 농도에 따른 변압기 처리방안]

PCBs 농도	사용 가능 여부	비 고
50ppm 이상	'25년 이후 사용 금지	지정폐기물 처리
2~50ppm	폐기 연한까지	지정폐기물 처리
2ppm 미만	사용	농도분석 후 적정관리

○ 그러나 동 사업의 2025년도 집행률은 69.8%에 그쳤으며, 예산의 세부 집행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5년 육군 PCBs 함유 변압기 교체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A)	집행액 (B)	불용액	이·전용 등	이월액	집행률 (B/A)
PCBs 함유 변압기 교체사업	6,000	4,189	1,306	△505	-	69.8

자료: 국방부

○ 동 사업의 집행이 부진 주된 사유는 예산 편성단계에서의 산정 방식과 실제 집행 방식간 차이에 기인함.

당초에는 변압기를 전면 교체하는 것을 전제로 대당 480만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변압기를 교체하지 않고 절연유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PCBs 제거가 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대당 75만 6,000원의 단가로 사업을 집행하였음.

[2025년 육군 PCBs 교체사업 편성 세부내역]

(단위: 천원, 대)

구 분	단가	수량	금액
변압기 구매	2,150	1,250	2,687,500
변압기 교체	2,650	1,250	3,312,500
소 계	-	-	6,000,000

자료: 국방부

○ 이에 따라 육군은 당초 계획과 달리 변압기 구매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 60억원 중 41억 8,900만원만 집행하고, 13억 6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5억 50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전용(감)하였음.

○ 육군은 잔여 재원을 활용하여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PCBs 함유 변압기 물량까지 절연유 교체를 실시하였다는 입장이나,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 이전에 교체 방식에 따른 소요 단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다수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다음으로, 육군의 유휴시설 철거사업은 군 구조개편 및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부대해체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유휴시설을 철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는 629동을 철거하기 위한 380억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며, 추경 편성을 통해 61동을 추가로 철거하기 위한 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025년 육군 유휴시설철거사업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세목구분	요율(물량)	2025 본예산	2025 추경	합계
기본조사설계비 (420-01)	1.68%	594	-	594
실시설계비 (420-02)	0.26%	91	-	91
공사비 (420-03)	690동	35,249	4,000	39,249
감리비 (420-04)	5.68%	2,002	-	2,002

세목구분	요율(물량)	2025 본예산	2025 추경	합계
시설부대비 (420-05)	0.26%	91	-	91

자료: 국방부

○ 그러나 동 사업의 총 예산현액 427억 5,700만원 중 실제 집행액이 274억 1,700만원에 그쳐 집행률이 64.1% 수준에 머물렀고, 실제 집행액은 당초 본예산 규모인 380억 2,8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전용 등(감) 금액 67억 9,500만원이 추경 편성액 40억원을 상회하는 등 추가 재원 편성의 필요성 및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025년 육군 유휴시설철거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42,028	7,524	△6,795	42,757	27,417	64.1

자료: 국방부

○ 아래와 같은 분기별 집행내역을 보면 2025년 제2회 추경 편성 당시인 6월 기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28.2% 수준에 불과하였는바, 당시 추가 재원을 편성하여야 할 정도로 본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2025년 육군 유휴시설철거사업 분기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집행액	분기별 집행현황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42,757	27,417	3,657	8,391	3,402	11,967

자료: 국방부

○ 또한 정부는 당시 추경 편성 사유로 경기침체 대응 등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집행 실적을 고려할 때 본예산의 집행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재원을 편성함에 따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국방부(육군)는 PCBs 함유 변압기 교체사업 사례와 같이 사업 추진 방식 및 단가 산정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보다 면밀히 수행함으로써 추경예산 편성의 비효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유휴시설 철거사업의 경우에도 기존 예산의 집행 가능성과 집행 추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6) 시설정책지원(2533-320): 군 소음피해 보상사업 인건비 교부기준 조정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시설정책지원(2533-320)는 지뢰제거, 소음피해 관리 등 군 시설 관련 정책 사업에 수반되는 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 2025년도 예산액 1,836억 1,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2억 9,100만원, 이·전용 등(감) 64억 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784억 9,500만원 중 1,626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59억 9,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8억 2,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시설정책지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183,611	183,611	1,291	△6,407	178,495	162,672	5,999	9,824	185,124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국방부는 시설정책지원 사업 중 내역사업인 소음피해관리 및 지원 사업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라 함)에 따라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53].

동 사업은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7조[54]에 따른 보상금 지급예산 요구에 따라 국방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예산액을 교부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신청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방부는 군소음피해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55] 및 보상금을 교부하고 있음.

---

5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지급 결정 내용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상금 지급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보상금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에 대한 결정에 따라 보상금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부족액을 배정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연되는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한 보상금 예산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55) 인건비 단가는 공무원 1인당 5,243만원, 기간제근로자 1인당 2,850만원임.

[2025년 소음피해 관리 및 지원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소음피해 관리 및 지원	150,315	13	△2,690	147,638	136,450	4,030	7,157	162,406
- 자치단체대행사업비 (330-04)	126,988	-	△250	126,738	126,637	-	100	128,507
인건비	8,067	-	-	8,067	8,067	-	-	7,725
보상금	118,843	-	△250	118,593	118,570	-	22	120,197
결정통지수수료	78	-	-	78	-	-	78	585

자료: 국방부

○ 군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6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건비 예산교부액, 보상건수, 보상금 예산교부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5년 소음피해 예산 지방자치단체 교부액 현황]

(단위: 원, 건)

연번	지자체명	인건비 예산교부액	보상 건수	보상금 예산교부액
1	가평군	52,430,000	931	183,569,100
2	강릉시	604,150,000	42,904	10,017,951,910
3	강화군	52,430,000	314	41,756,450
4	고성군	52,430,000	4,464	167,700,140
5	고양시	52,430,000	148	25,652,180
6	광주 광산구	437,720,000	28,459	7,349,289,520
7	광주 남구	52,430,000	158	43,758,100
8	광주 북구	0	1	252,000
9	광주 서구	437,720,000	29,892	8,556,917,560
10	군산시	52,430,000	2,091	621,960,760
11	김포시	52,430,000	139	30,743,040
12	나주시	28,500,000	104	25,484,230
13	남양주시	52,430,000	195	32,835,800
14	논산시	52,430,000	179	50,964,950
15	담양군	52,430,000	455	50,856,760
16	대구 동구	1,141,080,000	95,465	25,622,953,300
17	대구 북구	185,790,000	11,587	2,611,933,080
18	문경시	52,430,000	1,046	302,364,070

연번	지자체명	인건비 예산교부액	보상 건수	보상금 예산교부액
19	보령시	52,430,000	2,791	461,499,700
20	부평구	0	19	3,970,300
21	상주시	0	1,119	248,639,750
22	서산시	133,360,000	9,964	2,449,531,050
23	서울 강남구	0	4	900,000
24	성남시	52,430,000	1,568	309,931,590
25	세종시	52,430,000	99	23,790,780
26	송파구	52,430,000	2,350	304,099,720
27	수원시	718,150,000	61,353	13,697,949,950
28	아산시	52,430,000	666	139,708,440
29	양구군	80,930,000	2,085	394,252,370
30	양양군	52,430,000	32	7,056,470
31	양주시	52,430,000	455	62,742,350
32	여주시	52,430,000	515	107,187,220
33	연천군	52,430,000	2,534	377,560,900
34	영암군	0	5	828,550
35	영천시	52,430,000	133	27,320,250
36	예천군	80,930,000	5,225	1,774,801,360
37	옥천군	28,500,000	54	7,994,950
38	옹진군	52,430,000	260	17,444,000
39	용인시	52,430,000	395	93,001,200
40	울산 울주군	28,500,000	35	6,272,090
41	울진군	0	21	2,854,410
42	원주시	380,720,000	26,418	6,021,047,200
43	음성군	0	46	7,246,830
44	이천시	52,430,000	622	124,606,210
45	인제군	52,430,000	1,234	69,342,330
46	장성군	52,430,000	466	67,205,690
47	전주시	0	10	1,564,720
48	정읍시	0	4	391,000
49	진천군	52,430,000	536	107,204,750
50	철원군	190,360,000	11,218	562,203,160
51	청주시	271,290,000	21,319	4,658,836,760
52	춘천시	52,430,000	668	162,065,050
53	충주시	214,290,000	13,662	3,506,545,530
54	태안군	52,430,000	2,118	518,654,460
55	파주시	52,430,000	405	43,476,170
56	평택시	718,150,000	56,997	12,544,958,870
57	포천시	80,930,000	5,185	1,011,548,190
58	포항시	28,500,000	4,625	1,180,630,580
59	하남시	0	9	1,944,370
60	홍천군	52,430,000	180	28,943,730
61	화성시	380,720,000	36,412	7,174,582,120
62	화천군	0	314	53,554,770
63	횡성군	271,290,000	17,257	4,467,377,140

자료: 「군소음보상법」 제23조에 따른 군소음교부금 결산보고서 내용을 재구성

○ 다만,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동 사업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군소음피해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63개 지방자치단체가 「군소음보상법」 제23조[56]에 따라 제출한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별 보상 실적에 비하여 인건비 교부 수준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등 현행 인건비 교부 방식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국방부는 최초 인력 배정 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한 지자체 소요인력 산출기준인 소음발생지역 기준주민수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인건비를 산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현행 기준은 실제 업무량과 연관된 보상 건수 및 보상금 규모 등의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임.

[지방자치단체 소음피해 보상업무 소요인력 산출기준]

지자체 소요인력 산출기준		
총 소요인력(a)	공무원(b)	기간제 근로자(a-b)
기준주민수 1천명 당 0.35명 배정	• 50명미만: 0명 • 5천명이하: 1명 • 1만명이하: 2명 • 2만명이하: 3명 • 4만명이하: 4명 • 7만명이하: 5명 • 7만명이상: 6명	나머지 배정 (최소 1명) * 전투비행장·항공기사격장은 가중치 부여 : 1.1
기준주민수×0.35/1000	-	단기계약직
단가(인당)	5,243만원	2,850만원

자료: 국방부

56) **「군소음보상법」 제23조(결산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회계연도의 보상금 등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음피해 보상업무에는 신청접수, 사실관계 확인, 민원 대응 및 이의신청 처리 등 다양한 행정절차가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현행 인건비 교부 기준이 업무량 수준에 비례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예컨대, 상주시의 경우 1,119건의 보상 건수를 대상으로 2억 4,900만원의 보상금이 교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교부되지 않은 반면, 양양군의 경우 32건의 보상 건수를 대상으로 보상금 규모가 700만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5,243만원의 인건비가 교부되었음.

[2025년 소음피해 예산 지방자치단체 교부액 현황]

(단위: 원, 건)

지자체명	인건비 예산교부액	보상 건수	보상금 예산교부액
상주시	0	1,119	248,639,750
양양군	52,430,000	32	7,056,470

자료: 국방부

○ 나아가, 동일한 금액의 인건비가 교부된 지방자치단체들 간에도 실제 보상 실적에는 현저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인건비 예산교부액이 52,430,000원으로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보상 건수는 32~4,464건, 보상금 예산교부액은 7,056,470~621,960,760원의 분포를 보이고, 인건비 예산교부액이 28,500,000원으로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도 보상 건수는 35~4,625건, 보상금 예산교부액은 6,272,090~1,180,630,580원으로 나타나는 등

동일한 인건비 교부액 하에서 지방자치단체별 보상 실적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57].

○ 보상 건수에 비해 인건비 지급액이 없거나 과소 지급된 것에 대해 국방부는 최초 교부 시 기준주민수가 매우 적어 인건비 불필요 의사를 밝힌 지방자치단체(강남구 등 8개)는 인건비를

57) **[인건비 예산교부액이 52,430,000원인 지방자치단체]** (단위: 건, 원)

연번	지자체명	보상 건수	보상금 예산교부액
1	고양시	148	25,652,180
2	양양군	32	7,056,470
3	가평군	931	183,569,100
4	강화군	314	41,756,450
5	강원 고성군	4,464	167,700,140
6	광주 남구	158	43,758,100
7	군산시	2,091	621,960,760
8	김포시	139	30,743,040
9	남양주시	195	32,835,800
10	담양군	455	50,856,760
11	문경시	1,046	302,364,070
12	보령시	2,791	461,499,700
13	성남시	1,568	309,931,590
14	세종시	99	23,790,780
15	송파구	2,350	304,099,720
16	아산시	666	139,708,440
17	양주시	455	62,742,350
18	여주시	515	107,187,220
19	연천군	2,534	377,560,900
20	영천시	133	27,320,250
21	옹진군	260	17,444,000
22	용인시	395	93,001,200
23	이천시	622	124,606,210
24	인제군	1,234	69,342,330
25	진천군	536	107,204,750
26	춘천시	668	162,065,050
27	태안군	2,118	518,654,460
28	파주시	405	43,476,170
29	홍천군	180	28,943,730
30	논산시	179	50,964,950
31	장성군	466	67,205,690

[인건비 예산교부액이 28,500,000원인 지방자치단체] (단위: 건, 원)

연번	지자체명	보상 건수	보상금 예산교부액
1	나주시	104	25,484,230
2	옥천군	54	7,994,950
3	울산 울주군	35	6,272,090
4	포항시	4,625	1,180,630,580

미교부하였고, 공무원 인건비의 연속적 전액 불용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포항시, 화천군, 상주시)의 경우, 지자체 배정 제외 요청에 따라 공무원인건비를 전액 삭감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국방부는 보상 건수가 소급 지급 등으로 인해 신청인 1인이 다수의 보상 건수로 산정될 수 있어 실제 보상인원보다 과다 계상될 수 있고, 현재 지급되는 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상 감액규정이 적용된 금액으로 보상금 교부액과 인건비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상 건수 및 보상금 교부액을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교부금 산출기준의 전적인 기준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기준주민수 기준 산정방식 역시 실제 업무량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바, 기준주민수를 기본적인 산정기준으로 유지하되 보상 건수, 민원 처리 실적 등 업무량 관련 요소를 보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통해 인건비 예산 교부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교부금 산출기준에 있어 실제 업무량에 따른 교부금 수준을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보상 건수 및 민원 처리 실적 등 업무량 관련 요소를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소음피해 보상업무 수행 여건과 인건비 교부 수준 간의 괴리를 완화하는 등 인건비 배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7) 예비군훈련시설확보(2631-302): 회계연도 중 신규사업 추진 지양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예비군훈련시설확보(2631-302)는 예비군생활관, 안보교육관, 식당 등 예비군훈련장 시설을 신축, 개·보수하는 사업임.

예비군훈련시설확보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액 738억 9,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6억 6,700만원, 이·전용 등(증) 62억 9,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68억 5,600만원 중 742억 900만원을 집행(집행률 85.4%)하고, 62억 2,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64억 2,6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5년도 예비군훈련시설 확보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비군 훈련시설 확보	73,897	6,667	6,292	86,856	74,209	6,220	6,426	47,031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국가재정법」 제45조[58]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또한 「국가재정법」 제46조[59]에서는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일정한 경우 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및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그럼에도 국방부는 2024회계연도 사업추진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 회계연도 중 전용 등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시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한 바 있음.

---

58)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59)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2024회계연도 '예산의 목적 사용 금지 위반' 관련 결산시정요구사항]

구분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유형
공무원인건비 (1103-101)	국방부는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은 신규 국외직무파견 추진으로 인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절차를 마련할 것	주의
정비장비 (2331-309)	국방부는 향후 미편성된 신규사업의 추진을 지양하고 면밀한 시장조사 등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가 적시에 획득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주의
주요기관 교육용탄약 (2339-304)	국방부는 향후 국회의 예산심의·확정 권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고, 집행방식 등에 대해 국회가 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할 것	시정
부대훈련 및 지원 (2438-301)	국방부와 육군은 기존에 편성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과다하게 확대하여 집행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조정 및 세부사업변경에 대한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향후 국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주의
인사정책지원 (2439-306)	국방부(육군)는 예산 목적 외 집행 문제를 방지하며,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발 제도를 보완할 것	시정

○ 예비군훈련시설 확보(2631-302) 사업은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예비군생활관·식당·안보교육관 등 예비군훈련장 시설을 신축·개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회계연도 중에 집행잔액 등을 활용해 신규로 추진한 사례가 총 46건에 달하고 있음.

[2025회계연도 예비군훈련시설 신규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구분	비목	집행액	세부내역	신규추진 사유
1	생활관	기본조사 설계비	24	00동원지원단 생활관 신축 선행연구용역 ('27년도 사업)	사업추진에 필요한 용역비
2	생활관	기본조사 설계비	13	00동원지원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용역('27년도 사업)	사업추진에 필요한 용역비
3	생활관	기본조사 설계비	15	00사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용역('25년도 사업)	사업추진에 필요한 용역비
4	생활관	공사비	20	00동원지원단 생활관 온수보일러 교체	온수 미공급에 따른 민원우려
5	식당	공사비	98	0군단 예비군훈련장 식당 개선	식당 협소에 따른 민원우려
6	식당	자산 취득비	23	00사단 예비군훈련장 식당 비품 구매	식당 운용간 필요한 누락된 비품 반영
7	기타 지원시설	기본조사 설계비	126	0군단 전투장구류정비실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용역	사업추진에 필요한 용역비
8	기타 지원시설	기본조사 설계비	15	0군단 동원훈련장 세탁실 설치	훈련 후 정비를 위한 세탁실 필요
9	기타 지원시설	기본조사 설계비	15	00사단 동원훈련장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용역('27년도 사업)	사업추진에 필요한 용역비
10	기타 지원시설	실시 설계비	8	00사단 전투장구류정비실 산지전용허가 도서작성 용역('22년도 사업)	건축물 등재에 필요한 용역비
11	기타 지원시설	실시 설계비	2	00사단 예비군훈련대 야외화장실 분할측량비('24년도 사업)	건축물 등재에 필요한 용역비
12	기타 지원시설	공사비	59	0군단 동원훈련장 세탁실 설치	훈련 후 정비를 위한 세탁실 필요
13	기타 지원시설	공사비	28	0군단 예비군훈련장 법사면 보강	안전위해시설 보강
14	기타 지원시설	공사비	33	00사단 예비군훈련장 가드레일 설치	안전위해시설 보강
15	기타 지원시설	공사비	8	0군단 영점사격장 보수	사격장 보수를 통한 훈련여건 보장

연번	구분	비목	집행액	세부내역	신규추진 사유
16	기타 지원시설	공사비	26	00사단 동원훈련장 피탄지 보강	사격장 보수를 통한 훈련여건 보장
17	기타 지원시설	공사비	43	00사단 예비군훈련장 피탄지 보강	사격장 보수를 통한 훈련여건 보장
18	기타 지원시설	공사비	32	00사단 예비군훈련장 피탄지 보강	사격장 보수를 통한 훈련여건 보장
19	기타 지원시설	공사비	43	00사단 예비군훈련장 피탄지 보강	사격장 보수를 통한 훈련여건 보장
20	기타 지원시설	공사비	45	00사단 예비군훈련장 피탄지 보강	사격장 보수를 통한 훈련여건 보장
21	기타 지원시설	공사비	22	0군단 예비군훈련장 이동로 개선	이동로 개선을 통한 훈련여건 보장
22	기타 지원시설	공사비	38	00사단 예비군훈련장 이동로 개선	수해복구를 통한 훈련여건 보장
23	기타 지원시설	공사비	71	00사단 예비군훈련장 배수로 보강	수해복구를 통한 훈련여건 보장
24	기타 지원시설	공사비	16	0군단 예비군훈련장 이동로, 배수로 보강	안전위해시설 보강
25	기타 지원시설	공사비	26	00사단 예비군훈련대 통신관로 개선	체계운용에 필요한 통신공사 반영
26	기타 지원시설	공사비	155	00사단 예비군훈련장 교전장비운용 기반시설 구축	교전장비운용을 통한 훈련여건 보장
27	기타 지원시설	공사비	10	00사단 예비군훈련장 교전장비운용 기반시설 구축	교전장비운용을 통한 훈련여건 보장
28	기타 지원시설	공사비	6	0군단 예비군훈련장 손세척장 개선	식사 전 손세척 여건 보장
29	기타 지원시설	자산 취득비	7	00사단 예비군훈련장 훈련통제실 비품 구매	훈련통제실 운용간 필요한 비품 반영
30	기타 지원시설	자산 취득비	42	00사단 예비군훈련장 물품보관함 구매	훈련여건 보장을 위한 물품 구매
31	기타 지원시설	자산 취득비	1	00사단 예비군훈련장 전투장구류 정비실 비품(총기보관함) 구매	총기탈취위험 해소 (거치대→보관함)
32	기타 지원시설	자산 취득비	8	00사단 예비군훈련장 전투장구류 정비실 비품(총기보관함) 구매	총기탈취위험 해소 (거치대→보관함)
33	기타 지원시설	자산 취득비	5	00사단 예비군훈련장 전투장구류 정비실 비품(총기보관함) 구매	총기탈취위험 해소 (거치대→보관함)

연번	구분	비목	집행액	세부내역	신규추진 사유
34	기타 지원시설	자산 취득비	4	00사단 예비군훈련장 전투장구류 정비실 비품(총기보관함) 구매	총기탈취위험 해소 (거치대→보관함)
35	기타 지원시설	자산 취득비	2	00사단 예비군훈련장 전투장구류 정비실 비품(총기보관함) 구매	총기탈취위험 해소 (거치대→보관함)
36	기타 지원시설	자산 취득비	4	00사단 예비군훈련장 전투장구류 정비실 비품(총기보관함) 구매	총기탈취위험 해소 (거치대→보관함)
37	기타 지원시설	자산 취득비	5	00사단 예비군훈련장 전투장구류 정비실 비품(총기보관함) 구매	총기탈취위험 해소 (거치대→보관함)
38	기타 지원시설	자산 취득비	7	00사단 예비군훈련장 전투장구류 정비실 비품(총기보관함) 구매	총기탈취위험 해소 (거치대→보관함)
39	기타 지원시설	자산 취득비	9	00사단 예비군훈련장 전투장구류 정비실 비품(총기보관함) 구매	총기탈취위험 해소 (거치대→보관함)
40	기타 지원시설	자산 취득비	7	00사단 예비군훈련장 전투장구류 정비실 비품(총기보관함) 구매	총기탈취위험 해소 (거치대→보관함)
41	기타 지원시설	자산 취득비	7	00사단 예비군훈련장 전투장구류 정비실 비품(총기보관함) 구매	총기탈취위험 해소 (거치대→보관함)
42	기타 지원시설	자산 취득비	1	0군단 예비군훈련장 전투장구류 정비실 비품(총기보관함) 구매	총기탈취위험 해소 (거치대→보관함)
43	기타 지원시설	자산 취득비	1	0군단 예비군훈련장 전투장구류 정비실 비품(총기보관함) 구매	총기탈취위험 해소 (거치대→보관함)
44	기타 지원시설	자산 취득비	17	0군단 예비군훈련장 안보교육관 노후비품 교체	안보교육관 교육 여건 보장
45	기타 지원시설	자산 취득비	11	00사단 예비군훈련장 안보교육관 노후비품 교체	안보교육관 교육 여건 보장
46	기타 지원시설	자산 취득비	5	00사단 예비군훈련장 안보교육관 노후비품 교체	안보교육관 교육 여건 보장

자료: 국방부

○ 이렇게 예비군훈련시설 확보 사업 추진 중에 예산심의시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회계연도 중에 신규로 추진한 사례는 매년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국가재정법」 제45조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맞지 않는 집행을 해오고 있음.

[2025회계연도 예비군훈련시설 신규사업 추진 현황]

구분	미편성 신규사업 건수	세부내역
2022	3	00사단 예비군훈련장 호우피해복구공사, 00사단 예비군훈련대 법사면 옹벽공사, 00사단 예비군훈련장 포장공사
2023	2	00사단 동원훈련장 식당 보수 00사단 예비군훈련장 식당 보수
2024	17	과학화 동원훈련장 시범사업 선행연구용역 00사단 동원훈련장 생활관 지붕보수 00사단 예비군훈련장 여성편의시설 설치 00사단 예비군훈련장 생활관 냉난방기 교체 00사단 동원훈련장 가압펌프 설치 00사단 동원훈련장 식당 분전반 교체 00사단 동원훈련장 식당 방수 00사단 동원훈련장 식당 보수 00사단 동원훈련장 식당 보수 00사단 안보교육관 스크린 설치 00사단 안보교육관 스크린 설치 00사단 안보교육관 CCTV 설치 00사단 안보교육관 냉난방기 교체 00사단 안보교육관 빔프로젝터 설치 00동원지원단 치장창고 저장대 설치 00사단 전투장구류 정비실 비품구매 00사단 전투장구류 정비실 비품구매
2025	46	위 표와 동일 내용

자료: 국방부

○ 예산에 미편성된 신규사업의 추진을 지양하도록 하는 내용은 「국가재정법」 외에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국방예산운용지침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규정과 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신규사업 추진이 매년 반복되고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2025년도에는 신규사업 추진 건수가 대폭 증가(46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령 및 제도 취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수 의식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국방예산운용지침>

2. 집행잔액 사용
 나. 군·기관은 집행잔액을 수시로 보고하려야 하며, 신규사업이나 목표량 추가 소요에 사용하는 사례는 지양하여야 한다.
 아. 집행잔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따라서 국방부는 예산 집행시에는 「국가재정법」 등 재정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28) 급식지원(2632-301) : 관서운영경비 지급범위 초과집행 주의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급식지원(2632-301) 사업은 부대에 2박 3일 입영하여 현역과 동일하게 훈련하는 동원훈련시와 동원훈련간 격오지 및 훈련인원이 적어 도시락 급식이 어려운 부대의 급식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급식지원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액 139억 6,000만원에 이·전용 등(증) 5,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0억 1,100만원 중 135억 5,200만원을 집행(집행률 96.7%)하고, 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4억 5,4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급식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급식지원	13,960	13,960	51	14,011	13,552	5	454	13,205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국고금관리법」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는 관서를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로서 성질상 지출관을 통하여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소액·일상 경비가 대상이 됨.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52조제1항[60]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별지 제1호에는 관서운영경비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관서운영경비 중 운영비(210)로 지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임.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예산 과목	용 도
인건비 (110)	현역병사봉급, 현역병사 특수지근무수당
운영비 (210)	**건당 500만원이하의 경비**(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제작·인쇄비용·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 복리후생비, 학교운영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는 제외
여비 (220)	전체
특수활동비 (23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수사·정보·경호활동 및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업무추진비 (24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직무수행경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60)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 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예산 과목	용 도
비 (250)	
안보비 (27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정보보안비 (28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보전금 (310)	군인사망보상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여비, 상근 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접대비, 포상금 및 상금 법령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안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민간이전(320)	구호 및 교정비
유형자산(430)	취득단가 50만원(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미만인 물품의 취득경비
	외국에 있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제세공과금·법정납부금(각종부담금, 보험료, 기여금) 및 인건비 지급시 공제되는 금액중 지출관이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직접 지출하기 곤란한 경비

○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 2025회계연도 중 급식 지원 사업으로 '25년 동원훈련(1제대) 급식비'를 집행하면서 관서운영경비의 범위인 500만원을 초과한 800여 만원을 집행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과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를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함.

일자	지급결의종류	운용부대	예산비목	지급결의명	지급액
2025-02-20	일반지급결의서	국직부대 계룡대근무지원단	210-04 (급식비)	'25년 동원훈련 (1제대) 급식비	8,095,800원

○ 급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인 지출절차를 거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지출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지출관을 통한 일반적인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악용될 경우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에 의한 방만하고 자의적인 예산지출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사용범위는 반드시 준수될 필요가 있음.

○ 특히 2024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심사시에도 관서운영경비의 지급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음에도 관서운영경비 지급범위 초과 집행이 반복되고 있어 관서운영경비 집행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및 내부통제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4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각군)는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 예규」등 재정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관서운영경비 지급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시정요구사항: 주의)

○ 국방부는 철저한 교육 및 인수인계로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등 재정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관서운영경비 지급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29) 전투장구지원(2632-302): 군수품 조달시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준수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전투장구지원(2632-302) 사업은 적정 동원훈련물자를 적기 보급하여 예비군 훈련지원 여건 보장 및 작전·임무수행을 위한 전투장구류 확보로 유사시 전투력 발휘 및 생존성 보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전투장구지원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액 78억 3,100만원에 전년도 이월 1,200만원, 이·전용 등(증) 1억 3,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9억 7,900만원 중 75억 5,700만원을 집행(집행률 94.7%)하고, 1억 6,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5,2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전투장구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투장구지원	7,831	12	136	7,979	7,557	169	252	7,617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각 군에서는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라 일부 군수품을 조달청에 위탁하고 있음.

○ 동 훈령에 따르면 군수품 종별·품류별 조달기관 분류기준에 따라 조달기관이 조달청으로 분류된 전력지원체계 품목 중 국방조달계획서상 연간 조달계획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품목 등이 조달청 위탁대상임.

제6조(위탁 대상 군수품) ① 조달청은 군수품 종별·품류별 조달기관 분류기준(별표1)에 따라 조달기관이 조달청으로 분류된 전력지원체계 품목 중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조달한다.
1. 국방조달계획서상 연간 조달계획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품목
2. 국방조달계획서상 3군 통합조달, 묶음조달이 가능한 품목의 연간 조달계획금액 합산액이 3천만원 이상인 품목
3. 국방조달계획서상 연간 조달계획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나, 조달청 또는 방위사업청 조달실적이 있는 품목
4. 국방조달계획서 협의 과정에서 국방부(각군), 방위사업청, 조달청간 합의한 품목

품 종	품 류	예산과목	조달기관			예외사항	
			방위사업청	조달청	각 군	품 목 (예산과목)	조달기관
1 종 (식량류)	**주 식**	**1231**		○		쌀 등 곡물류	농림부, 부대
	부 식	**1231**		○		육류, 소채류, 어패류 등 신선식품	부대
	후 식	**1231**		○		과일류 등	부대
	중 식	**1231**		○		빵류, 떡 등	부대
	특 수 식 량	**1231**		○			
2 종 (일반 물자류)	**피복·개인장구류**	**1241, 2632**		○		방탄물자	방위사업청
	공 병 물 자	**2332 - 301**		○		위장망 (2332-301-005)	방위사업청
	병 참 물 자	**2332 - 302**		○		낙하산	방위사업청
	통 신 물 자	**2131 2332 - 303**		○		암호장치(2131-307-006), 군규격 전지류(2332-303-001 일부)	방위사업청
	화생방 물자	2332 - 304 - 001	○			상용물자	조달청
	기타 물자류	**2332-304-002~004 2332-005**		○		항공기엔진·표면세척제(2332-304-002 중 FMS품목) 교육용 물자·장비(2431~2439)	방위사업청
						군사지도(7131-314-001)	지형정보단
3 종 (유류)~9 종 (수리부속·공구류)	**생략**						

○ 침구는 「군수품관리 훈령」에 따라 피복류로 분류되며 침구의 조달을 위해서는 가격기준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한 조달이 이루어져야 함.

「군수품관리 훈령」 별표 2

구 분	세 부 분 류	주 요 품 목
1 종 (식 량 류)	주 식	양곡류, 잡곡류
	부 식	수육류, 어패류, 소채류, 두채류, 조미류, 장류(고추장, 된장, 간장 등), 기타부식류(소맥분, 튀김가루 등), 분식류 등
	후 식	우유, 주스류, 과일, 기타 후식류
	증 식/특 식	건빵, 면류, 떡류, 생일자 증식, 기타 증식, 경축 특식 등
	특 수 식 량	전투식량, 특전식량, 구명식량 등
2 종 (일반물자류)	피복류	기본피복류, 특수피복류(방한피복, 침구, 개인장구류, 특수임무피복), 일용품 등
	병참 물자	부대비품류, 부대기재류(법무·군사경찰·인쇄·군악·군종·공보정훈·교육·체육·함정 전용품 등), 부대기구류(취사, 냉·난방 등), 부대장구류(항공/잠수장구 등), 일반물자 유지보수용 재료 및 부품류, 기타 유지물자류(로프, 포장재료, 실험기구, 물자취급기구, 산업안전용품, 기류 등) 등
	화생방 물자	탐지물자류, 개인보호물자류, 개인치료물자류, 연막류, 지역장비 독성 제거제류, 작도기재류, 구조기구류, 기타 운용물자(오염표지판 등) 등
	통신 물자	전지류(특정장비용 전용전지 제외), 야전선류, CCTV시스템 및 상용휴대용 무전기(장비제외), 기타 통신물자(전화·팩스, 라디오, 위성TV 수신기, 전산·네트워크) 등
	공병 물자	소방피복 및 장구류, 소화기 및 소화기류, 위장망(부수자재 포함) 등
	기타 물자류	군사지도(육도, 해도, 항공도), 드론(최대이륙중량 2㎏미만이고, 취득단가 300만원 미만) 등
3종~10종	생략	

○ 그런데 2025회계연도에 육군은 예비군훈련장에 사용할 침구를 구매하면서 집행금액이 4,400만원으로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라 조달청을 통한 조달을 했어야 했음에도 부대조달을 통해 구매하여 동 훈령을 위반하였음.

지출관서명	거래처	이체일자	지출결의명	사업구조	목	세목	자금이체금액
육군 지상작전사 제36보병사단	㈜그랜드침대	2025-03-28	25년 예비군훈련장 매트리스 구매	2632-302	210	03	44,000,000원

○ 동 훈령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 군수품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예산 절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 확보 등을 위해 조달청 위탁조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제도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부대조달 방식으로 집행할 경우 경쟁성 확보가 제한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동일·유사 물품에 대한 가격 비교 및 품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군수품 조달체계 전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약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국방부(육군)는 군수품 조달시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을 준수하여 조달청 조달과 부대조달을 엄격히 구분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30) 동원훈련(2632-303): 동원훈련 보상비 사업 훈련 인원 추계 정확도 제고 필요 / 공공요금및제세(210-02) 예산 편성 합리성 제고 필요 / 병력동원훈련 퇴소시 수송차량 운전자 음주여부 측정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동원훈련(2632-303) 사업은 예비군 동원훈련을 운영하고, 훈련 수행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2025년도 예산액 513억 9,600만원에 이·전용 등(감) 73억 4,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40억 4,800만원 중 425억 7,300만원을 집행(집행률 96.7%)하고, 13억 8,9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5년도 동원훈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동원훈련	51,396	-	△7,348	44,048	42,573	86	1,389	51,371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① 동원훈련 보상비 사업 훈련 인원 추계 정확도 제고 필요

○ 동원훈련 사업(2632-303)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전시 부대 증·창설 절차의 숙달, 동원 병력의 임무 수행 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예비군 동원훈련을 실시하고, 예비군 훈련보상비 지급 등 훈련을 수행한 예비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임.[61]

○ 예비군훈련은 크게 병력동원훈련과 일반훈련으로 구분되는데 병력동원훈련은 「병역법」 제50조[62]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이고, 일반훈련은 「예비군법」 제6조[63]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임.

[병력동원훈련 및 일반훈련 비교 현황]

항목	동원훈련 I gud	일반훈련	
		동미참훈련 (現 동원훈련 Ⅱ형)	지역예비군훈련 (기본훈련·작계훈련)
훈련대상	1~4년차 예비역 ('병' 기준)	1~4년차 예비역	5~6년차 예비역
훈련형태	2박 3일	· 4일 : 1~4년차 병, 미참석자 등 (동원훈련Ⅱ형)	· 기본훈련 : 8시간 · 작계훈련 : 12시간
비고	동원훈련Ⅱ형(입영) 포함	-	-

자료: 국방부

61) **「병역법」 제52조(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①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62) **「병역법」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른 비상근 예비군에 대하여는 입영부대의 장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63) **「예비군법」 제6조(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 동원훈련 사업의 내역사업인 동원훈련 보상비 사업은 병력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훈련 수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 중 328억 3,400만원 중 이·전용 등(감) 65억 6,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62억 6,600만원에서 258억 2,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8.7%(예산액 기준)이고, 4억 4,100만원을 불용함.

[2025년도 동원훈련 보상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보상비	32,834	-	△6,568	26,266	25,825	-	441	33,795

자료: 국방부

○ 당초 편성된 예산에서 이·전용 등(감)과 불용액을 제외한 예산액 기준의 집행률이 78.7%로 집행이 부진한데, 이는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연도별 동원훈련 보상비 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결산액	불용액	집행률
2025년	32,834	25,825	441	78.7
2024년	33,694	26,930	7,095	79.9
2023년	33,537	28,865	3,838	86.0

자료: 국방부

○ 동원훈련 보상비 사업의 집행부진에 대한 주요 원인은 예산안 편성 시 추계에 사용한 훈련계획 인원에 대한 예측값과 실제 훈련 참가 인원 간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 국방부는 2025회계연도 동원훈련 보상비 사업 예산안 추계 시 동원훈련 참가 인원을 40만 6,889명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훈련참가 인원은 33만 1,324명으로 나타나 75,000여 명의 차이가 나타나는 데서 집행부진이 비롯됨.

[동원훈련 보상비 사업 2025회계연도 예산안 추계내역]

<동원훈련 보상비 산출식>
- 406,889명 × 82,000원(보상비 단가) × 1회 = 328억 3,406만원

* 위 산식에 계수조정(약 0.98)하여 산출
자료: 국방부

[연도별 동원훈련 계획인원 대비 참가인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훈련계획 인원(A)	훈련참가 인원(B)	훈련참가율(B/A)	차이 (A-B)
2025년	406,889	331,324	81.4	75,565
2024년	410,908	327,643	79.7	83,265
2023년	408,984	351,563	85.7	57,421

자료: 국방부

○ 「2025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르면 동원훈련·일반훈련 인원수는 최근 훈련실적과 함께 예비군 인원 감소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19년~2022년 사이 다수의 동원소집 부대가 해체·개편되면서 부대 증·창설에 필요한 예비군 병력동원 소요가 감소한 점, 전반적인 군 병력 감소로 인한 예비군 규모 하락 추이 및 훈련 계획 인원 대비 훈련 참가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 등 예비군 훈련 계획 인원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관계로 과도하게 훈련 인원을 산출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국방부는 동원훈련 보상비 사업 예산 추계 시 최근 훈련 인원 실적 자료뿐만 아니라 군 조직 변동 사항, 병력 규모 감소 추이 등 예비군 훈련 인원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비군 훈련 계획 인원을 산정하여 예산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② 공공요금및제세(210-02) 예산 편성 합리성 제고 필요

○ 동원훈련(2632-303) 사업에 편성된 공공요금및제세(210-02) 비목은 동원훈련 Ⅰ형 실시 중 부대별 동원지정자에게 문자, 군사우편을 활용하여 지휘서신을 발송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으로, 군사우편료는 1통당 215원, 문자는 1건당 25.3원의 단가로 편성됨.

○ 2025회계연도 공공요금및제세(210-02) 비목은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편성예산의 98.3%인 2억 3,400만원을 타 사업[64]에 충당하고 원래 목적으로는 300만원을 집행하는데 불과하였음.

[연도별 공공요금및제세(210-02)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이전용 등	현액	집행액	불용액	이월액
23년	238	△116	122	109	13	-
24년	238	△189	49	48	1	-
25년	238	△234	4	3	1	-

자료: 국방부

○ 실제 현장에서는 주로 동원지정자의 휴대폰번호, E-mail 주소를 파악한 후 이를 이용하고, 전송실패자, E-mail 미보유자 및 수시 신상변동에 따른 불분명자 등에게만 군사우편을 이용한 지휘서신을 발송하고 있는 관계로 공공요금및제세(210-02) 비목의 집행이

64) 훈련 관련 시설 장비 유지비 부족소요로 예비전력운영지원(2632-305)로 약 2억원 세부사업 변경 등

부진하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됨.

○ 이는 공공요금및제세(210-02) 비목예산의 편성목적과 실제 집행 현장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보통신 환경 변화로 전자적 통지 방식이 보편화되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 방식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점은 예산의 현실 적합성이 낮다는 문제로 나타남.

○ 국방부는 실제 통지 수단별 이용 현황 및 우편 발송 대상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공공요금 및제세(210-02) 비목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③ 병력동원훈련 퇴소시 수송차량 운전자 음주여부 측정 필요

○ 병무청은 병력동원소집관리(1232-308) 사업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병력동원(전시근로) 소집 지정·관리, 병력동원소집 지정자에 대해 평시 훈련 실시, 동원절차 숙달 및 전시 임무수행 능력 배양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의 입소시 집결지에서 훈련부대까지 외부 버스를 임차하여 집단 수송을 실시하고 있고, 안전한 수송을 위해 지방병무청의 입영확인관이 음주감지기로 수송차량 운전자 전원에 대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65].

[병무청 음주감지기 사용실적]

(단위: 회)

구분	계	2025년	2024년	2023년
사용실적	7,906	2,600	2,633	2,673

자료: 병무청

○ 동원훈련소집이 종료되면 동일하게 외부 버스를 임차하여 각 군에서 입소시 집결지로 집단 수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병무청 사업이 아니고 국방부의 동원훈련(2632-303)으로 각 군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음.

65) 음주 감지자 발생 시 경찰에 음주 측정 협조

○ 그런데 입소 시에는 집단수송 과정에서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수송 안전이 일정 부분 확보되고 있는 반면, 퇴소 시 집결지까지의 집단수송에 대해서는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음주측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퇴소 시 집단수송을 담당하는 임차버스 운전자 역시 음주 상태로 운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행 관리체계는 집단수송 안전 확보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음.

○ 따라서 국방부는 음주감지기 구입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퇴소 시 집단수송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확인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병력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의 안전한 수송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31) 예비전력운영지원(2632-305):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위탁 운영비 적정 예산 편성 노력 필요 / 정책연구비 성격 일반 연구비로 편성·집행 지양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예비전력운영지원(2632-302) 사업은 예비군 관리를 위해 예비군을 대상으로 중대 운영, 교육훈련지원, 훈련장비 및 시설관리 등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예비전력운영지원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액 436억 5,4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28억 7,000만원, 이·전용 등(증) 3억 9,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69억 2,100만원 중 411억 6,900만원을 집행(집행률 87.7%)하고, 20억 4,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7억 1,1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비전력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비전력운영 지원	43,654	2,870	397	46,921	41,169	2,041	3,711	43,089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①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위탁운영비 적정 예산 편성 노력 필요

○ 국방부는 전·후반기 작계훈련을 받아야 하는 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시간·공간 제약을 해소하고 교육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원격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위탁사업 업체 현황]

구분	업체명	업체선정방식
2022	한국공교육원	조달청을 통한 디지털 카탈로그 계약
2023	-	-
2024	한국공교육원	조달청을 통한 디지털 카탈로그 계약
2025	한국공교육원	조달청을 통한 디지털 카탈로그 계약

자료: 국방부

○ 2025회계연도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위탁사업의 예결산 현황을 보면, 당초 예산안은 6,000만원이었으나, 집행금액은 편성예산액의 10배 수준인 5억 9,750만원을 집행하였음.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위탁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2025년	60,000	537,500	597,500	597,500

자료: 국방부

○ 이러한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위탁사업 예산액의 과소계상으로 발생하는 예산액과 집행액 간 상당한 규모의 괴리는 2024년도에 이어 2025년도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음.

[연도별(22-25)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위탁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본예산	집행금액
’22년	-	987,500
’23년	60,000	-
’24년	60,000	595,000
’25년	60,000	597,500

자료: 국방부

○ 예산집행 과정에서 물가상승이나 사업 내용의 일부 조정 등에 따라 집행액이 당초 계획 대비 일정 수준 증가할 가능성은 인정되나, 당초 예산규모 대비 약 10배에 이르는 대폭적인 증액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집행상 조정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한을 실질적으로 형해화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이러한 사례가 일회적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이는 예산을 의도적으로 과소계상한 후 집행 과정에서 대규모 증액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한정된 재원을 둘러싼 사업 간 우선순위가 왜곡되고 타 사업의

예산 축소 또는 집행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이는 예산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재정운용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 관행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위탁사업 추진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다한 예산 조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② 정책연구비 성격 일반연구비로 편성·집행 지양 필요

○ 국방부는 예비전력운영지원(2632-305) 사업에서 일반연구비(260-01) 비목을 편성하고 있는데, 2025회계연도에는 2억 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이월액 2,700만원을 포함한 2억 3,6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9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일반연구비(260-01)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연구비 (260-01)	209	27	-	236	194	3	39	151

자료: 국방부

○ 최근 예비전력운영지원(2632-305) 사업의 일반연구비(260-01)로 집행한 연구과제를 보면, 매년 집행하는 '동원선박 자원관리 편람 최신화' 과제를 제외하고 모두 정책연구비(260-02) 성격으로 보임.

[연도별 일반연구비(260-01) 연구주제]

(단위: 백만원)

구분	기관	연구주제명	집행예산	수행업체
2022	육군	미래 육군 예비전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 구조 발전방안 연구	19	(사)한국전략문제연구소
	육군	미래 작전환경을 고려한 동원위주부대의 장비·물자 저장시설 최적화 방안 연구	29	(사)21세기군사연구소
	해군	22년 동원선박 자원관리 편람 최신화	9.8	㈜피코
2023	국방부 자원동원과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물자동원방안 연구	26	(사) 한국국방기술학회
	국방부 예비군 훈련정책과	예비군훈련에 원격교육 적용방안 연구	41.4	(사)한국위기관리연구소
	육군	적시 전투력 창출을 위한 제도·법령 혁신방안	27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육군	적시 동원체제 구축을 위한 지역 및 지원예비군부대 발전방안 연구	25	(사)한국위기관리연구소
	육군	A.I.기반 전평시 동원체제 혁신방안 연구	38	MUTEC
2024	국방부 자원동원과	병력동원 지정 및 훈련체계 효율화 연구	59	비상대비자원연구소(MUTEC)
	육군	미래 상비병력 수준을 고려한 상비예비군제도 설계 연구	29	육군3사관학교 산학협력단
	해군	23년 동원선박 자원관리 편람 최신화(23사고이월)	25.1	비상대비자원연구소
	해군	24년 동원선박 자원관리 편람 최신화	26.0	공우이엔씨(주)
2025	국방부 자원동원과	동원 병력 수송체계 개선방안 연구	56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방부 예비전력 기획과	예비군법 개정방안 연구	30	주)입법정책연구원
	육군	매력적인 상비예비군제도 복무설계 및 시행방안	25	(사)한국위기관리연구소
	해군	25년 동원선박 자원관리 편람 최신화	26.6	㈜트루코스쉬핑

자료: 국방부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일반연구비(260-01)는 국가로부터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이고,

정책연구비(260-02)는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학술연구 포함) 관련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일반연구비(260-01) : 국가로부터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

정책연구비(260-02) :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학술연구 포함) 관련 비용(사업명 : '정책연구'로 통일)

○ 예를들어, 2025년도 총 4건의 연구과제 중 '동원 병력 수송체계 개선방안 연구', '예비군법 개정방안 연구', '매력적인 상비예비군제도 복무설계 및 시행방안' 등의 과제는 정책, 법령, 제도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각각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한 과제로 보임.

○ 정책연구비(260-02)는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라 국방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연구과제 관리 감독,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록 등 엄격하게 관리되는데 반해, 일반연구비(260-01)는 이러한 적용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과제선정, 관리 등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내용상 정책연구비(260-0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비목을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관리를

회피하고, 정책연구과제를 우회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국방부는 정책연구 성격에 대한 과제 선정 등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적정한 비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일반연구비(260-01)로 우회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임.

○ 또한 기존의 정책연구비 성격의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32) 국군수도병원 사업 및 지원비(3735-301): 국군수도병원 의무물자 수시구매 및 관서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국군수도병원 사업 및 지원비(3735-301)는 국군수도병원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장비 구매 및 비품 유지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 2025년도 예산액 410억 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0억 1,500만원, 이·전용 등(증) 2,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20억 4,900만원 중 393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6,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억 1,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국군수도병원 사업 및 지원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41,007	41,007	1,015	27	42,049	39,366	866	1,817	42,189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국군수도병원은 수술·진료 등 의료업무 수행을 위해 의무물자(특수수술재료, 장비운영소모품, 의료기재)를 계약 혹은 수시구매 방식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2024년 및 2025년도 의무물자 조달을 위한 예산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4, 2025년 의무물자 조달 예산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집행예산(합계)	계약집행	수시구매집행
특수수술재료	'24년	5,157	1,780	3,347
	'25년	4,010	1,323	2,686
장비운영소모품	'24년	5,458	3,382	1,656
	'25년	5,595	3,963	1,599
의료기재	'24년	3,040	1,323	1,667
	'25년	3,103	1,660	1,433

자료: 국방부

○ 의무물자 구매는 국군수도병원의 수술, 진료 등 의료업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이나, 그 집행 방식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국군수도병원은 의무물자 수시구매 시 관서운영경비 중 운영비(210)를 활용하면서, 동일한 날짜에 동일 품명의 물품을 2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상 건당 500만원 지급 원칙을 사실상 우회하여 집행하고 있음.

○ 「국고금관리법」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는 관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중 그 성질상 지출관을 통한 일반적인 지출절차를 거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66]를 의미하며, 주로 소액·일상적 경비가 그 대상이 됨.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67]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별지 제1호는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서운영경비 중 운영비(210)로 지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건당 500만원임.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예산 과목	용 도
인건비 (110)	현역병사봉급, 현역병사 특수지근무수당
운영비 (210)	**건당 500만원이하의 경비**(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제작・인쇄비용・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 복리후생비, 학교운영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는 제외
여비 (220)	전체
특수활동비 (23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수사・정보・경호활동 및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66) **「국고금관리법」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67)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업무추진비(24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직무수행경비(250)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안보비(27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정보보안비(28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보전금(310)	군인사망보상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여비, 상근 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접대비, 포상금 및 상금 법령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안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민간이전(320)	구호 및 교정비
유형자산(430)	취득단가 50만원(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미만인 물품의 취득경비
	외국에 있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제세공과금·법정납부금(각종부담금, 보험료, 기여금) 및 인건비 지급시 공제되는 금액중 지출관이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직접 지출하기 곤란한 경비

자료: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별지 제1호]」

○ 그런데 2025년도 국군수도병원의 의무물자 구매 집행내역을 보면, 특수수술재료 22건, 장비운영소모품 24건, 의료기재 9건 등 총 55건에서 개별 집행액은 각각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나,

동일한 날짜에 동일 품명의 물품을 2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관서운영경비 지급범위(건당 500만원)를 초과하여 집행함으로써,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관서운영경비 범위 초과집행 현황68)]

구분	500만원 초과 집행 건수 (날짜 기준)	비고
특수수술재료	22	CARTIZOL ULTRA(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 등 총 2억 200만원
장비운영소모품	24	호흡기 바이러스 PCR 진단시약 등 총 1억 7,100만원
의료기재	9	Eigen(팔 부목) 등 총 6,100만원

자료: 국방부

○ 관서운영경비는 소량·다품종 구매 또는 수시로 발생하는 지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적인 지출절차를 거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소액 경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출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5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에 활용하는 것은 법령상 계약절차를 사실상 우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임.

68) 단건 결제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동일한 날짜에 500만원보다 초과로 집행한 예시는 다음과 같음.

일자	금액	품명
2025.1.6	360,000	CARTIZOL ULTRA
2025.1.6	4,680,000	CARTIZOL ULTRA
합계	5,040,000	
2025.1.7	4,680,000	CARTIZOL ULTRA
2025.1.7	4,680,000	CARTIZOL ULTRA
2025.1.7	4,680,000	CARTIZOL ULTRA
2025.1.7	720,000	CARTIZOL ULTRA
합계	14,760,000	

이러한 방식은 지출관을 통한 일반적인 지출에 비해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하여 출납공무원에 의한 방만하고 자의적인 예산 집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관서운영경비의 정해진 사용 범위가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둘째, 중앙조달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품목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수시구매를 활용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군수도병원은 계약에 의한 의무물자 구매보다 수시구매 비중이 훨씬 높으며, 의무물자 수시구매 예산 및 건수는 다음과 같음.

[의무물자 수시구매 예산 및 건수 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분	합계		특수수술재료		장비운영소모품		의료기재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2024년	6,670	5,666	3,255	951	1,651	1,645	1,668	3,070
2025년	5,718	4,903	2,405	765	1,599	1,643	1,442	2,495

자료: 국방부

○ 수시구매 제도는 지혈제·골이식재·임플란트 등 수술 현장에서 긴급하게 확보하여야 하는 물자를 신속하게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써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덴탈 마스크, 에이프런, 락스 등의 물자는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고 병원 운영에 있어 상시적·반복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의료소모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중앙조달을 통해 공급받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품목들의 상당 부분을 수시구매로 충당하고 있음.

[2025년 국군수도병원 수시구매 내역 중 일부]

(단위: 원, 구매량, %)

구 분	25년 중앙 조달량				25년 수시 구매량				수시 구매 비율
	단위	단가	구매량	구매금액	단위	단가	구매량	구매금액	
덴탈마스크	BX (50′S)	4,902	265	1,299,030	BX (50′S)	3,404	2,600	8,848,000	90.8
에이프런	-	-	0	0	BX	22,800	13	296,400	100
락스	EA (2L)	1,650	384	633,600	EA (2L)	2,297	966	2,219,600	71.6
3-WAY 스탑콕크	BX (50′S)	8,600	160	1,376,000	BX (50′S)	9,707	700	6,795,000	81.4
붕대(흡수식, 접착형)	-	-	0	0	BX (100′S)	24,942	403	10,052,000	100
치실	-	-	0	0	EA (50m)	2,000	7	14,000	100

자료: 국방부

○ 이에 대해 국군수도병원은 중앙조달에 애로가 발생한 품목은 국군의무사령부 규정에 의해 부대조달할 수 있다는 규정[69]을

69) **「의무사 규정 400 의무물자 보급 규정」** 제3장
제10조 부대조달 의무물자 조달 절차
① 부대조달 대상품목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및 물자류로서, 중앙조달 품목을 제외한다. 다만, 중앙조달품목 가운데 중앙조달에 애로가 발생한 품목은 부대 조달할 수 있다.

근거로 수시구매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상기 품목 등은 연간 소요량이 비교적 일정하고, 병원 운영에 있어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는는 품목들인 만큼, 사전에 적정 소요량을 예측하여 중앙조달 방식으로 충당하는 것이 공정한 입찰 절차 확보 및 단가 절감 측면 등에서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군수도병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등 재정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관서운영경비 지급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연간 품목별 소요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적정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조달 가능 품목에 대해서는 수시구매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고관리 및 조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3)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5134-302): PKO 파병 세부 사업과 교차집행에 대한 주의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5134-302) 사업은 ① 해적퇴치, 우리선박의 안전항해 지원을 위해 소말리아 아덴만 지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② UAE와의 국방교류협력을 위해 파병된 아크부대에 대한 피복·물자획득, 수송비 등을 지원하고, ③ 미국 중부사령부 및 다국적군 사령부 개인파병 활동 및 해외파병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98억 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8억원과 이·전용(증) 12억 3,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2억 2,500만원 중 105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4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5,0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5년도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	9,809	180	1,235	11,225	10,575	400	250	9,535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현재 해외에 파견된 국군부대는 총 4개 부대이고, 국방부는 PKO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여부에 따라 2개의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70]

[국군의 해외파견 관련 세부사업 구분]

구분			파견목적 및 임무	파견동의안 소관	근거법령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 (5134-302)	다국적군	청해	UN안보리 결의 또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근거하여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국가 주도로 다국적군 구성하여 분쟁해결, 평화정착, 재건지원 활동 수행	국방위	헌법, 「국군의 해외파병업무훈령」
		개인파병등			
	국방교류협력	아크	특정국가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견되어 교육훈련이나 재난구호 수행		
PKO 파병 (5134-303)	UN PKO	동명	UN 요청에 따라 국군부대 및 군 요원 파견하여 평화유지활동 임무 수행	외통위	헌법,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한빛			
		개인파병등			

자료: 국방부

70)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이하 "평화유지활동"이라 한다)이란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하에 국제연합의 재정부담으로 특정 국가(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협정 이행 지원, 정전 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선거 지원, 인도적 구호, 복구·재건 및 개발 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다만,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파견부대"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두 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파견된 국군부대에 대한 피복·물자획득·수송비 등의 지원과 개인파견자에 대한 활동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PKO 여부에 따라 사업을 구분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음.

[국군의 해외파견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용	2025 예산액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	(소말리아해역 파병) 해적퇴치 및 우리선박의 안전항해 지원을 위해 '09.3월부터 소말리아 아덴만지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관련 피복·물자획득 등 지원	3,989
	(UAE 파병) '10년 UAE 요청에 따른 UAE군과의 연합훈련 등 국방교류협력을 위해 UAE 아부다비 주에 파병된 아크부대 관련 피복·물자획득·수송비 등 지원	4,845
	(개인파병 등) 미 중부사 및 다국적군 사령부 개인파병 활동 및 해외파병운영(홍보, 파병부대 정부합동성과평가단 활동 등) 지원 예산	975
PKO 파병	(레바논 파병) 레바논에서의 '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 이후 UN의 요청에 따라 파병이 시작된 레바논 동명부대의 피복·물자·수송비 등 지원	10,918
	(남수단 파병) 내전으로 폐허가 된 남수단의 재건을 위한 UN의 요청에 따라 '13년부터 남수단에 파병이 시작된 한빛부대 관련 피복·물자·수송비 등 지원	13,878
	(개인파병 등) UN PKO 개인파병자 및 UN PKO 기여공약 이행사업 예산 지원	7,923

자료: 국방부

○ 2025년의 경우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 사업에서 지원하는 아크부대 24·25진 교대 간 항공수송비 부족액 충당, 환율·현지 물가상승 등 청해부대 항무지원비 및 항공탁송료 부족액 충당을 위하여 PKO 파병 사업에서 각각 4억 6,900만원, 6억 300만원을 조정하였고,

반대로, PKO파병 사업에서 지원하는 동명부대 31·32진 교대 간 항공수송비 부족액 충당을 위하여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 사업에서 4억 8,100만원을 조정하였음.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 PKO 파병 사업간 예산 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조정 ('25.9.3.)	PKO파병 (5134-303)	210-02	469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 (5134-302)	210-01	아크부대 24·25진 교대 간 항공수송비 부족액 충당
세부사업조정 ('25.9.22.) ('25.11.21.) ('25.12.3.)	PKO파병 (5134-303)	210-02	200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 (5134-302)	210-01	환율·현지 물가상승 등 청해부대 항무지원비 및 항공탁송료 부족액 충당
		210-02	200			
		210-01	203			
세부사업조정 ('25.11.7.) ('25.11.18.)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 (5134-302)	210-02	306	PKO파병 (5134-303)	210-01	동명부대 31·32진 교대 간 항공수송비 부족액 충당
		210-01	175			

자료: 국방부

○ 한편, 2025년도 국방부의 계약현황을 보면,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 사업에서 한빛부대(PKO 파병)의 물품을 지원한 내역도 나타나고 있음.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 사업에서 한빛부대(PKO 파병 사업)의 물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계약명	세목	금액
25년 화장지 분할납품요구 3차(한빛부대)	피복비(210-03)	2,177

자료: 국방부

○ 종합해 보면, 유사한 사업이 구분 관리되면서 유사한 사업의 집행을 위한 세부사업간 예산의 조정이 있고, 사업간 교차 집행의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국방부는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 사업과 PKO파병 사업간 교차집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4) 정책기획지원(5136-302): 정책연구비 성격의 연구과제 일반 연구비로 편성·집행 지양 필요 등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정책기획지원(5136-302) 사업은 원활한 국방정책활동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귀환포로국군지원, 전작권 전환 지원, 북핵 및 WMD 대응 지원, 국방정책지원 연구 생태계 조성, 국방외교 및 국제협력, 한미동맹 유대강화 사업 등으로 구성됨.

○ 2025년도 예산액 90억 8,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억 8,400만원과 이·전용 등(감) 12억 2,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28억 5,000만원 중 195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9억 9,2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5년도 정책기획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정책기획지원	9,084	284	-	9,368	7,561	1,158	649	10,036
북핵 및 WMD 대응 지원	1,071	93	146	1,309	1,234	15	60	4,058
정책지원 연구 생태계 조성	800	259	-	1,059	510	242	66	800
한미동맹 유대강화	1,663	45	△6	1,703	1,650	-	7	1,638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① 정책연구비 성격의 연구과제 일반연구비로 편성·집행 지양 필요

○ 정책기획지원 사업의 연구용역비(260목) 집행현황을 보면, 총 23건의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중 21건은 정책연구비로 2건은 일반연구비로 집행하였음.

○ 앞서 군수정책지원 사업에서 보았듯이, 일반연구비(260-01)은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이고 각 부처의 정책개발을 위한 비용은 정책연구비(260-02)목으로 구분되고 있음.

[일반연구비와 정책연구비의 구분]

구분	일반연구비(260-01)	정책연구비(260-02)
내용	- 국가로부터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 * 단, 각 부처의 정책개발을 위한 비용은 정책연구비(260-02)목으로 별도 계상	-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비용(사업명을 '정책연구'로 통일)

자료: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정책기획지원 사업의 연구용역비(260목) 집행현황 중 일반연구비(260-01)와 정책연구비(260-02)로 구분 집행된 대표 사례를 보면 내용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한미 공동 북핵사후관리 방안 연구, 한반도 위기관리 연구,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3차)는 집행세목만 다를 뿐 국방부의 정책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일반연구비와 정책연구비의 집행현황(예시)]

(단위: 천원)

계약명	계약상대자	세목	금액
한미 공동 북핵사후관리 방안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일반연구비(260-01)	114,000
한반도 위기관리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일반연구비(260-01)	25,000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3차)	한국국방연구원	정책연구비(260-02)	67,000

자료: 국방부

○ 정책연구비(260-02)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국방부훈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비용을 일반연구비로 편성·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국방부는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성격의 사업임에도 일반연구비로 편성·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정책연구비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②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조기 집행 및 이월 방지 노력 필요

○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는 예산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수의계약을 통한 정책연구과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진하되,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말에 사업예산의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연구 용역의 신규 발주를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정책기획지원 사업에서는 총 6건의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이 중 2건이 11월에, 1건이 12월에 계약체결되었음.

또한,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3건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되었고 나머지 3건은 추정가격 2,000만원 미만의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음.

소액수의계약은 1인 견적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한 계약형태임. 즉, 사업계획만 완료되면 계약상대방의 선정부터 계약체결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계약방식임.

○ 앞서 보았듯이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는 수의계약의 최소화, 예산이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방부는 연구용역 과제의 선정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의계약 및 연말 계약을 최소화하여 이월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연도로 이월된 연구용역과제 현황]

(단위: 천원)

계약명	계약시작일	계약종료일	계약상대자	이월액	계약방법
장기군의관 인력양성모형별 편익 분석 및 군병원 발전	2025-06-05	2026-01-31	사단법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41,280	협상에의한계약(전자)
국방부 복수차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025-10-28	2026-02-28	한국국방조직학회	8,972	수의계약
군 병과학교 조직구조 개편 선행연구	2025-10-31	2026-02-28	한국국방조직학회	8,602	수의계약
정책연구 용역(미래 한반도 핵전쟁 시나리오)	2025-12-16	2026-05-29	국방대학교산학협력단	19,879	수의계약
동원훈련장 과학화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2025-11-20	2026-06-19	(사)위기관리연구소	64,827	협상에의한계약(전자)
문민기반 강화를 위한 예비역 임용제한 기준 정립 연구	2025-11-17	2026-03-16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32,000	협상에의한계약(전자)

자료: 국방부

(35) 군 배상금(7136-301): 대규모 이용액 발생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군 배상금(7136-301)은 국방부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민간 피해에 대하여 일반배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임.[71]

○ 2025년도 예산액 176억 8,900만원에 이·전용등(증) 1,718억 7,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895억 6,300만원 중 1,794억 2,600만원이 집행되어 1억 3,000만원 이월, 100억 불용되었음.

[2025년도 군 배상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군 배상금	17,689	-	171,874	189,563	179,426	130	10,007	20,012

자료: 국방부

71) '20~'22년은 소음배상금은 공군에서 별도 편성·집행하였고, 소음보상법 시행('20. 11. 27.)에 따라 남아 있는 잔여소송에 대한 편성은 '23년부터 일반배상금에 포함하여 편성하였음

(나) 검토의견

○ 일반배상금은 2021년 이·전용 규모가 10억원으로 소규모였으나, 2022년 162억 9,400만원, 2023년 606억 9,300만원, 2024년 1,180억 4,900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데 이어, 2024년에도 국방부 이·전용 사업 중 중 가장 큰 규모의 이용 증액 1,718억 7,400만원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이용의 큰 폭으로 증가는 대부분 과거사(삼청교육대, 한국전쟁 관련 사건들, 5.18민주화운동 등) 피해자에 대한 일반배상금 지급을 위한 것임.[72]

[연도별 일반배상금 편성요구 대비 예산변경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편성요구	예산 (A)	이·전용 등 (B)	현액 (C)	집행 (D)	집행률 (D/A)
'20년	164,832	100,440	6,317 (△5,100)	101,657	101,358	100.9
'21년	195,780	186,909	1,000	187,909	185,000	99.0
'22년	82,709	82,709	16,294	99,003	98,908	119.6
'23년	27,705	27,705	60,693	88,398	87,898	317.3
'24년	122,089	17,689	118,049	135,738	135,738	767.4
'25년	31,897	17,689	171,874	189,563	179,426	1014.3
'26년	70,855	20,012	-	-	-	-

자료: 국방부

72) 「국가재정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 예산의 이용이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장(분야), 관(부문), 항(프로그램)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것을 의미함.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군 배상금인 경우 같은 항 단서의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2024년도 예산총칙 제10조)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
그러나 예산의 이용은 예산심의를 통하여 국회가 결정한 거시적인 정책결정을 행정부가 임의로 수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예산상 긴급상 필요가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자체이용을 필요최소한에 그치지 않으면 「국가재정법」 제45조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할 소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일반배상금의 이용 규모가 급증한 이유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등을 계기로 삼청교육·보도연맹 등의 과거사를 중심으로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법원의 배상금 지급 선고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

[일반배상금 지급 현황]

(단위: 건, 명,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건수	인원	지급액	건수	인원	지급액	건수	인원	지급액
5.18 민주화운동	228	1,664	56,344	131	1,844	85,431	74	430	14,597
삼청교육	14	18	1,174	36	45	2,445	368	837	55,953
보도연맹/한국전쟁	22	194	5,949	48	1,205	29,135	173	2,882	61,178
녹화공작사업	0	0	0	14	96	5,963	40	186	13,060
납북어민	0	0	0	0	0	0	17	80	3,905
형무소사건	0	0	0	2	19	965	6	23	813
제주4.3사건	6	56	1,176	0	0	0	105	690	14,524
기타 과거사*	23	101	5,985	8	17	1,385	10	73	3,096
무단점유	33	41	2,691	32	53	1,726	14	30	2,156
소송비용	74	75	545	37	38	225	51	51	319
기타 손해배상*구상금	39	60	2,463	33	64	3,392	37	59	2,715
배상금 소계	**439**	**2,209**	**76,327**	**341**	**3,381**	**130,667**	**895**	**5,341**	**172,316**
(추가) 지배심·특배심	405	430	1,202	343	436	1,222	579	735	5,526

자료: 국방부

○ 한편, 5.18 사건은 ’21.5.27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22년~’24년 증가하다가 ‘25년부터 배상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위 표와 같이 삼청교육·보도연맹·제주4.3사건·녹화공작사업 등 타 과거사에 대한 배상금이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와 같이 과거사 등으로 인한 배상금 수령자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배상금 소송이 지속될 것이 거의 확실히 예견되는 상황이고, 2026년도의 경우에도 7월말 현재 이미 편성된 예산 200억 1,200만원이 모두 소진되어 다시 적지 않은 이용이 불가피한 실정임.

○ 따라서 국방부는 관련 소송 경과 및 사건별 피해자 수 추이 등을 분석하여 배상금 소요를 면밀히 추계하여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대규모의 이용 재발을 방지하기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2.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가. 세입

(1) 토지매각대(72-721): 최근 2년간 저조한 토지매각대 수납률의 제고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토지매각대(72-721)은 주한미군공여해제 반환 토지의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인식하는 항목임.

○ 2025년도 예산액은 359억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197억 4,600만원으로 동일해서 수납률은 55.0%임.

[2025년도 토지매각대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A/B)	
토지매각대	35,900	-	35,900	19,746	19,746	55.0	32,955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토지매각대는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서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자체 주세입임.

수납액은 최근 4년 중 2023년 5,783억 2,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 주한미군공여해제 반환 토지의 정화사업 추진의 지연으로 인한 매각대상 반환 토지의 감소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부지매각 관련 협의 지연 등의 원인으로 2024년 561억 1,900만원으로 대폭 감소한 후 2025년 197억 4,600만원에 그쳤음.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2022년 110.0%, 2023년 100.3%으로 양호하였으나, 2024년 36.1%, 2025년 55.0%으로 낮은 수준에 그쳐, 최근 2년간 수납률이 저조하였음.

[2025년도 토지매각대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A)						
2022	300,563	300,563	300,563	330,824	330,475	110.0	99.9	349
2023	576,434	576,434	576,434	580,406	578,322	100.3	99.6	2,084
2024	155,366	155,366	155,366	59,002	56,119	36.1	95.1	2,883
2025	35,900	35,900	35,900	19,746	19,746	55.0	100.0	-
2026	32,955	32,955	-	-	-	-	-	-

○ 2025년도 토지매각대 수납률 저조한 주요 원인은 매각계획금액이 163억원으로 가장 큰 501정보대 부지는 정부의 정부자산 매각 전면중단 지시(2025년 11월)로 인해 회계연도 내 매각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임.

한편, 캠프롱, 캠프 캐슬 등에 대한 토지매각대를 수납하였으나, 8군 종교휴양소 부지는 서울시와 협의 중으로 매각이 진행되지 못하였음.

[2025년도 토지매각대 매각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 금액	매각 금액	비 고
계	35,900	19,746	계획대비 55% 수납
8군 종교휴양소	11,600	-	서울시에 부지매수 청구(25년, 2회) 후 협의 지연
501정보대	16,300	-	정부자산 매각 전면중단 지시('25.11.)로 매각 중단 공공주택 공급 부지로 선정되어 LH에 매각 협의 중
짐볼스 훈련장	1,000	476	동두천시 계획에 따라 매각 면적 감소
캠프 마켓	6,300	6,614	인천시 도로조성사업을 위해 일부 매각
잔여지(캠프 하야리아)	700	3,293	계획 대비 실제 매각 금액 상승
캠프 레드클라우드	-	698	의정부시의 잔여부지 분납 잔금 납부
캠프 캐슬	-	2,506	사업시행자의 미납금 납부
캠프 스탠톤	-	359	'25년 파주시 요청으로 매수협의 후 매각
캠프 롱	-	5,800	원주시의 협약 정산금 납부

자료: 국방부 제출

○ 따라서 국방부는 토지매각 지연 요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나. 세출

(1) 환경조사 및 치유(4232-302):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과의 절차지연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환경조사 및 치유(4231-302)은 주한미군 반환 및 공여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문화재 조사 포함) 및 치유하는 사업임.

○ 2025년도 예산액 453억 4,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15억 2,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68억 7,600만원 중 628억 2,100만원을 집행(집행률 81.7%)하고 140억 5,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2025년도 환경조사 및 치유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률 (A/B)	
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	45,349	31,527	-	76,876	62,821	14,055	81.7	46,694

(나) 검토의견

○ 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의 추진방식을 보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위·수탁 협약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 및 한국환경관리공단(이하 “공단)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각 수탁기관이 협약대상 기지별로 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사업은 매년 예산의 대부분을 수탁기관에 정화사업비로 교부하고 있음.

[2025년도 기지별 정화사업 현황]

(단위: m^2, %, 억원)

기지명	부지면적(A)	정화면적(㎡)	정화 예산 (‘25년 배정)	총집행 (‘25년 집행)
501정보대	5,624	1,209 (21%)	160억원 (13억원)	152억원 (5억원)
종교휴양소	19,699	2,122 (11%)		
극동공병단	42,096	33,970 (75%)	302억원 (64억원)	298억원 (61억원)
캠프 킴	48,399	33,560 (69%)	289억원 (76억원)	203억원 (75억원)
캠프 마켓(B)	100,753	125,604 (58%)	95억원 (16억원)	84억원 (9억원)
캠프 마켓(D)	229,235	미 정	1,048억원 (38억원)	12억원 (1억원)
캠프 잭슨	85,369	38,537 (47%)	228억원 (41억원)	221억원 (36억원)
캠프 레드클라우드	662,941	204,131 (31%)	797억원 (45억)	58억원 (25억원)
캠프 모빌(부분)	57,060	35,320 (62%)	286억원 (95억원)	192억원 (67억원)
성남골프장	853,760	84,164 (9%)	821억원 (170억원)	241억원 (170억원)

자료: 국방부

○ 기지별 정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캠프 마켓(B, D),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모빌 등이 2025년도 정화예산 대비 집행률이 60% 이하로 집행이 부진하였음.

기지별 집행부진 사유로는 철거승인 취소소송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절차 지연·결정 번복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승인 지연 등임.

[기지별 집행부진 사유]

- (캠프 마켓B) 역사단체의 장교숙소 철거 취소 소송에 따른 사업지연(10개월)
  - 소송기간/결과 : '25.2월~'25.9월/각하(국방부 승소)
- (캠프 마켓D) 지자체(인천광역시)의 존치건축물 결정지연(10개월)
  - 지자체 요청에 따른 "국가유산청 근현대 시설물 조사"('24.12월~'25.5월/5개월)
  - 지자체 존치시설물 "시민참여위원회 심의운영"('25.5월 ~ '25.9월/5개월)
- (캠프 레드클라우드) 철거설계 계약 유찰(4회) 및 지자체 결정 번복 사유로 지연(8개월)
  - 계약 단독입찰 및 지자체 존치건축물 결정 번복('24.11월 ~ '25.6월)
- (캠프 모빌)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인허가 승인 지연(13개월)
  -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정기한을 고려 6개월을 계획하였으나, 일부 허가기관의 법정처리 기한의 초과로 13개월이 소요됨.
  - 인허가 기간 : '24.4월 ~ '25.5월

○ 따라서 국방부는 기지별 집행부진 사유를 분석하고 향후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과의 절차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강화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국방 · 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1)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준수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국방부는 2025년 말 기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43건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 전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예산액 4,000억 6,100만원 중 2,014억 1,600만원을 집행하여 50.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2025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집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건수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전체 사업 수	115	595,966	419,942	70.5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수	43	400,061	201,416	50.3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73]에 따라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거나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에 해당하여 기획예산처와 사업기간·규모·총사업비 등을 협의하여야 하는 사업을 의미함.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 역시 동 규정을 적용받으며, 2025년 및 2026년 완료 예정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각각 9건, 5건이 있음.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8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완공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총사업비 등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함.

또한, 당해연도 완공이 예정된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의 조정협의 등이 허용되지 않음.[74]

---

73) **「국가재정법」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건축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업

○ 그런데 2025년 말 기준 국방부의 총사업비 조정 요청 현황을 보면, 2025년 완료 사업 총 9건 중 8건에 대해 사업완료 당해 연도인 2025년에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2026년 완료 사업 총 5건 중 3건에 대해 법정 기한인 5월 31일을 경과한 이후에 총사업비 조정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남.

[2025~2026년 완료 예정 사업의 총사업비 조정요청 시기 위반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조정요청 시기
		당초	변경	
2025년 완료 사업	(개편4차) 7군단 12군지단 유류중대	30,111	30,655	2025.07.
	(개편4차) 강릉병원	39,165	34,220	2025.12.
	(개편5차) 53사단 126여단 예비군훈련대	54,022	47,122	2025.10.
		47,122	47,920	2025.11.
	(개편5차) 32사단 99여단 예비군훈련대	39,621	40,150	2025.06.
	(개편5차) 춘천병원	45,037	45,997	2025.01.
		45,997	46,665	2025.10.
	1군지사 이전	403,971	405,928	2025.02.
		405,928	406,087	2025.03.
		406,087	406,116	2025.05.
	101정보통신단 이전	56,392	56,003	2025.03.
		56,003	58,075	2025.04.
	(개편6차)31사단 96여단 예비군훈련대	31,612	26,943	2025.07.
		26,943	27,562	2025.11.
2026년 완료 사업	(개편6차)32사단 505여단 예비군훈련대	58,183	50,111	2025.07.
	(개편7차)25사단 CCC	25,305	25,618	2025.06.
		25,618	23,530	2025.07.

74) **「총사업비 관리지침」제28조(다음 연도 완공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에 완공예정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총사업비 등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 조정내용이 제103조에 의한 중앙관서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실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등의 조정 요구 시 향후 추가적인 총사업비의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잔여공정에 대한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포함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완공 연도에는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의 조정협의나 중앙관서 자율조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조정요청 시기
		당초	변경	
		23,530	25,375	2025.12.
	(개편7차)5사단 본부	22,552	22,579	2025.09.

주: 해당 조정요청 시기는 모든 조정요청 중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한 내역만을 정리한 것임
자료: 국방부

○ 다음 연도 완공사업의 총사업비 조정요청 기한을 5월 말까지로 한정하고, 당해연도 완공사업은 사업규모 조정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총사업비 변경 사항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그럼에도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로 집행되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총사업비 조정요청 기한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바, 총사업비 변경 사항이 예산편성 과정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여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또한 완공시기에 임박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관행이 지속될 경우 사업비 증가 또는 사업구조 변경에 대한 사전적 통제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총사업비 변경이 사후적으로 추인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중 대부분의 사업에서 총사업비 조정요청 기한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향후에는 다음연도 완공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요청 기한을 준수하고, 당해연도 완공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을 최소화함으로써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목적[75]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75) **「총사업비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군인연금기금

(1) 연금기여금(55-551): 연금기여금 수입 추계방식 개선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연금기여금(55-551)은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7.0%를 국고에 납부하는 금액임.

○ 2025년도 계획액 7,749억 4,000만원이었으나, 계획 대비 납입액 감소로 징수결정액 7,403억 7,900만원, 수납액 7,403억 2,900만원임. 미수납액 5,000만원은 휴직 중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로 복직시 개인 봉급에서 자동 공제하여 납부 예정임.

[2025년도 연금기여금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계획액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연금기여금 수입	774,940	-	774,940	740,379	740,329	50	-	785,147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연금기여금(55-551)은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7.0%를 국고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2025년 계획액은 2024년도 1월과 2월의 기여금 납입평균인원 185,409명을 기준으로 7,749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1~2월 납입평균인원이 179,728명으로 감소함에 따라[76] 수납액은 7,403억 2,900만원에 그쳐, 계획액과 수납액의 오차금액은 346억원 1,100만원이고 오차율이 4.5%로 2024년도의 오차율 4.7%에 이어 큰 폭으로 발생하였음.

[연도별 연금기여금 수입 오차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기여금 납부인원(1~2월 평균)	오차율	오차금액
	당초	수정(A)						
'22	719,369	719,369	719,369	704,530	704,250	190,827	2.1	15,119
'23	736,572	736,572	736,572	716,779	716,779	190,527	2.7	19,793
'24	760,909	760,909	760,909	724,797	724,788	185,409	4.7	36,121
'25	774,940	774,940	774,940	740,379	740,329	179,728	4.5	34,611
'26	785,147	-	-	-	-	175,797	-	-

*자료: 국방부

이와 관련하여 연례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군인연금은 기금

76) 2025년도 전체 기간의 납입평균인원은 179,865명임.

수입 및 지출항목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국가로부터 적정수준의 보전금을 지급받는 것이 기금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중요하나, 기금 자체수입의 주요 항목인 연례적인 연금기여금 수입에 대한 과다추계 오차가 발생하고 있음.

○ 연금기여금의 과다추계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연금기여금 계획안 편성 시 전년도 1~2월 연금기여금 납부인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최근에는 해당연도 1~2월 평균 연금기여금 납부인원이 하사 충원 저조로 인한 부사관의 현원이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약 2~3% 가량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77]

[최근 월별 연금기여금 납부인원]

(단위: 명)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1월	185,881	**180,226**	176,148
2월	184,929	**179,226**	175,696
3월	187,105	**181,621**	177,909
4월	186,225	**181,087**	
5월	186,049	**180,357**	
6월	185,632	**180,605**	
7월	182,634	**177,918**	
8월	182,314	**177,550**	
9월	**181,882**	177,550	
10월	**181,844**	181,996	
11월	**181,114**	180,515	
12월	180,963	179,726	

*자료: 국방부

77) 2025년 정원대비 충원율은 하사 65.4%, 부사관 83.8%임.

○ 정부가 연금기여금 수입을 연례적으로 실제 수납액보다 과다하게 추계·편성함에 따라, 군인연금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연금급여 지출과 자체수입 간 수지차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보전금도 실제 소요에 비하여 과소 편성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025년의 경우에도 연금기여금 계획액은 7,749억 4,0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7,403억 2,900만원으로 계획액보다 346억 1,100만원 부족하였음.

○ 이와 함께 최근 군 간부의 조기퇴직 등으로 퇴직급여 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하면서, 부족한 지출액을 국가보전금이 아닌 기금적립금을 재원으로 지출하고 있음.

2025년도의 경우 퇴직급여 계획액은 3조 9,088억원이었으나, 연금 지급인원이 107,777명으로 증가하면서 실제 집행액은 계획액보다 958억 7,400만원 증가한 4조 17억 1,600만원이었음.[78)]

○ 이에 따라 기금적립금은 2021년 1조 3,408억원에서 2022년 1조 2,003억원, 2023년 1조 304억원, 2024년 8,903억원, 2025년 8,47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기금적립률도 2021년 4.6개월에서 2025년 2.2개월로 하락하였음.

78) 2025년 퇴직급여 집행내역은 연금 107,777명에 3조 7,001억 1,900만원, 일시금 14,391명에 3,015억 9,700만원임.

[연도별 기금적립금과 기금 적립률]

(단위: 억원)

연도	급여지출액	국가보전금	기금적립금	기금 적립률 (기금적립금/연 급여지출액)
2021	35,327	16,012	13,408	4.6개월
2022	37,258	16,793	12,003	3.9개월
2023	40,785	18,413	10,304	3.0개월
2024	43,449	21,084	8,903	2.5개월
2025	45,511	23,497	8,474	2.2개월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 대한민국 사회보험」 자료를 재구성함

○ 국방부는 기금적립금의 적정 수준으로 연금지출액의 6개월치를 설정하고 있으나,[79] 2025년도의 기금 적립률은 2.2개월로 퇴직급여 등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 적립률 수준인 3개월에도 미달함에 따라 전반적인 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낮아지고 있음.[80]

○ 반면, 국가보전금은 2021년 1조 6,012억원에서 2022년 1조 6,793억원, 2023년 1조 8,413억원, 2024년 2조 1,084억원, 2025년 2조 3,49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81]

---

79) 국방부는 '16년도에 실시한 '군인연금기금 책임준비금의 적정규모 기준설정 연구'에서 군인연금의 경우 정부의 추가적인 적립 없이 1년치 연급지출액을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판단했으며, 기금의 상황 및 여건을 반영하여 연급지출액의 6개월치를 기금적립금의 적정 규모로 제시하였음.

80) 국방부는「군인연금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연금지출에 사용한 적립금을 차차년도 보전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81)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부거래를 제외한 군인연금기금의 재정수지가 2026년 3.9조원 적자에서 2029년 4.4조원 적자로 전망기간 동안 적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의「2026 대한민국 사회보험」)

○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연금기여금 수입 등을 포함한 수입 및 지출 항목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확성과 신뢰도가 높은 추계방식으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적정 국가보전금을 수입 계획안에 반영함으로써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5. 군인복지기금

(1) 복지시설확보(2237-642) : 그린나래호텔 리모델링사업 집행부진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기금 집행내역

○ 복지시설확보(2237-642)은 장병사기 및 복지 증진과 여가 활용을 위한 휴양, 레저, 체육, 기타 복지시설 신·증설을 추진하는 복지계정 사업임.

○ 동 사업은 2025년도 계획액(수정) 403억 6,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5억 3,800만원을 합한 계획현액 439억 500만원 중 329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74억 7,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5억 1,800만원을 불용함.

[2025년도 복지시설확보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복지시설 확보	40,366	40,367	3,538	43,905	32,914	7,473	3,518	48,025
휴양시설	15,392	15,746	182	15,928	10,040	5,433	454	10,849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휴양시설 내역사업은 장병사기 및 복지 증진과 여가 활용을 위한 호텔 등을 건립·보수하고, 콘도 회원권 등을 매입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액(수정) 157억 4,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8,200만원을 합한 계획현액 159억 2,800만원 중 100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54억 3,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5,400만원을 불용함.

휴양시설 내역사업의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63.0%로 부진하였는데, 이는 주로 공군 그린나래호텔 리모델링 사업의 착공 지연에 따른 대규모 이월에 기인함.

○ 공군 그린나래호텔 리모델링 사업은 부산 해운대 소재 그린나래호텔의 노후화된 로비, 소방·배관·전기시설 등을 교체하고, 객실 신축 및 기존 객실 보수를 통해 장병 복지수혜 확대와 운영수익 개선을 도모하려는 사업임.

○ 동 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169억 1,000만원 규모로 추진하면서 기존 객실 73실을 86실로 확대하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사용허가시설로 운영하는 계획이었음.

이후 정부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공군중앙복지운영위원회 심의(2024. 10.) 등을 거쳐 기존 사용허가

시설 및 연회장 공간을 호텔형 객실로 전환하여 객실을 30실 추가 조성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고, 총사업비는 197억 3,000만원,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로 조정되었음.

[그린나래호텔 리모델링 사업계획 변경 전후 비교]

구분	사업계획 변경 전	사업계획 변경 후
사업기간	2024. 7.~2026. 11.	2024. 8.~2027. 6.
총사업비	169.1억원	197.3억원
주요 사업내용	노후시설 교체, 객실 신축 13실, 기존 객실 73실 보수	로비·소방·배관·전기시설 교체, 객실 신축 30실, 기존 객실 73실 보수
객실 수	73실 → 86실	73실 → 103실
신축 객실	13실 추가	30실 추가
사용허가시설	2~5층 사용허가시설 유지·개선	일부 사용허가시설 및 연회장 공간을 객실로 전환
추진목적	노후시설 개선 및 객실 일부 확대	노후시설 개선과 객실 100실 이상 확보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재구성

○ 동 사업의 추진경과를 보면, 2024년 9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2024년 10월 객실 30실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설계변경이 결정되었으며, 2025년 8월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음.

이후 2025년 10월 본공사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은 2025년 12월, 해체감리용역 계약은 2026년 1월에 체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공사 착공은 2026년 1월로 지연되었음.

이에 따라 2025년도 계획현액 63억 3,100만원 중 실시설계비 1억 5,880만원과 관급자재비 6억 500만원을 포함한 7억 6,400만원만

집행되었고, 54억 2,2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부진이 발생하였음.

[2025년도 그린나래호텔 리모델링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그린나래호텔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420-02)	45	114	-	159	159	-	-	-
공사비 (420-03)	5,585	-	-	5,585	605	4,850	129	7,789.9
감리비 (420-04)	572	-	-	572	-	572	-	410.8
시설부대비 (420-05)	15	-	-	15	-	-	15	20.3
합 계	6,217	114	-	6,331	764	5,422	144	8,221.0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 시설공사 사업은 설계, 공사, 감리, 해체감리, 폐기물처리, 관급자재 구매 등 선후행 절차가 상호 연계되어 있어 어느 하나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음.

특히 동 사업과 같이 총사업비, 사업기간, 객실 수, 공간구성 및 연도별 사업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 변경(2024. 10.)이 설계계약(2024. 7.) 후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범위에 맞추어 설계완료 시점, 공사계약 시점, 감리계약 시점 및 실제 착공 가능시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방부는 각 군의 복지시설 사업이 향후 총사업비 변경 및 연도별 사업비 조정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군인복지기금운용지침」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2240-640): 주거지원 실적 제고를 위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기금 집행내역

○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2240-640)은 군 관사 부족으로 입주 대기 중인 군 간부에게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또는 월차임을 지원하는 주거지원계정 사업임.

○ 동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액은 670억 5,500만원, 수정계획액은 670억 5,500만원으로 이 중 474억 6,000만원 집행하고 195억 9,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도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군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67,055	67,055	-	67,055	47,460	-	19,595	52,956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군간부전세자금 이자지원사업은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들이 국방부와 해당 군 부대에서 추천받은 군 간부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고 이에 대한 이자는 국방부가 해당 협약 은행에게 정산하는 구조임.

○ 국방부는 일반회계 전입금(91-911) 670억 5,500만원을 재원으로 2025년도 군간부전세자금 이자지원의 계획액을 6,293세대와 세대당 평균 전세대출자금 2억 1,100만원 및 평균 금리 5.05%을 적용하여 670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2025년도 편성 근거 및 집행내역 현황]

구분	편성 근거 및 집행내역
계획액 편성근거	ㅇ 이차보전금 67,055백만원 - 지원세대 6,293세대 × 2.11백만원 × 5.05%
집행실적	ㅇ 이차보전금 47,460백만원 - 지원세대(평균) 4,731세대 × 2.19백만원 × 4.58%

자료: 국방부 제출

○ 2025년도 집행실적은 지원세대 4,731대, 평균 전세대출자금 2억 1,900만원 및 평균 금리 4.58%여서 집행액은 474억 6,000만원으로, 집행률은 70.8%로 저조하였고, 불용액은 195억 9,500만원으로 대규모로 발생하였음.

특히, 지원세대 계획은 6,293세대였으나, 지원세대는 4,731세대에 불과하여 계획 대비 지원세대가 1,562세대가 적어 군 간부들의 주거안정 도모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기준으로 성과가 미흡하였음.

○ 국방부는 2023년 금리(6월 평균 대출금리 5.14%)가 급등하여 2023년 6월 예산집행률이 75%에 달하여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상의 기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재원부족으로 연내 모두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이에 국방부는 30년 이상 노후 공관사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에 대하여 2023년 7월 국방부 지침 하달 및 동 훈령 개정(2024년 6월)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2023년 6월부터 동 사업의 지원 기준을 강화하였음.

이로 인해 동 사업에 대한 지원 인원은 2023년 7,899명, 2024년 5,916명, 2025년 4,098명으로 감소하여 2025년 집행부진의 주원인이 되었음.

○ 다만,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에 편성된 동 사업은 금리와 지원인원 수 추이 및 주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훈령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일정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집행

과정에서 지원세대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집행관리가 가능한 사업임.

2025년 9월과 12월, 국방부는 두 차례에 걸쳐 전세이자 지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했으나, 시점상 2025년 지원세대 실적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국방부는 주기적으로 금리와 지원인원 수 추이 및 주거여건 등을 고려한 집행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업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병무청 소관 (전문위원 문성환)

1. 결산 총괄

○ 병무청은 일반회계 예산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가. 세입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액 2억 5,600만원보다 6억 6,200만원이 증가한 9억 1,8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이 중 7억 1,200만원이 수납되고 2억 6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미수납액 2억 600만원은 납기 미도래 관유물대여료 9,800만원,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체납 과태료 4,800만원, 퇴직수당 환수 기타경상이전수입 4,000만원, 징계부가금 2,100만원임.

[2025년도 세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5년	256	918	712	-	206
2024년	336	551	444	-	107

나. 세출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현액은 4,731억 9,600만원으로, 이 중 4,610억 3,800만원(97.4%)을 집행하고 121억 5,800만원(2.6%)은 불용처리 하였음.

[2025년도 세출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등	전용액 등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473,196	473,196	-	±2,676	473,196 (100%)	461,038 (97.4%)	-	12,158 (2.6%)

○ 세출예산현액 4,731억 9,600만원은 당초 예산과 같으며,

전용액은 인건비 25억원, 보수 집행 증가로 인한 고용부담금 6,600만원 및 건강보험부담금 5,900만원, 예산성과금 6백만원 등 26억 3,100만원이고, 사회복무연수센터 공공요금 4,500만원은 내역 변경임.

불용액은 인건비 7억 2,500만원, 기본경비 4억 900만원, 사업비 110억 2,400만원 등 총 121억 5,800만원임.

1. 세입

가.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 (C/B)	불납결손액 (D)	% (D/B)	미수납액 (E=B-C-D)	% (E/B)
합 계	256	918	712	77.5	-	-	206	22.5
○ 토지대여료 (511)	2	2	2	100.0	-	-	-	-
○ 건물대여료 (512)	108	161	63	39.2	-	-	98	60.8
○ 기타관유물 대여료 (513)	29	25	25	100.0	-	-	-	-
○ 과태료 (563)	5	51	3	6.6	-	-	48	93.4
○ 징계부가금 (564)	-	23	2	10.1	-	-	21	89.9
○ 변상금 (571)	-	456	456	100.0	-	-	-	-
○ 위약금 (572)	2	0.01	0.01	100.0	-	-	-	-
○ 기타경상 이전수입 (596)	91	174	134	77.2	-	-	40	22.8
○ 기타잡수입 (691)	3	4	4	100.0	-	-	-	-
○ 기타고정 자산매각대 (713)	16	22	22	100.0	-	-	-	-

* 자료 : 병무청

나. 집행내역

(1) 수납액 내역

(단위: 백만원)

목 별	수납액	수납액내역
계	712	
○ 토지대여료	2	○ 청사부지 일부 임대 수입
○ 건물대여료	63	○ 병역판정검사장 나라사랑카드발급소 임대 등
○ 기타관유물 대여료	25	○ 주거용 임차숙소 사용료 등
○ 과태료	3	○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 징계부가금	2	○ 징계부가금
○ 변상금	456	○ 공공분야 전용회선 구축사업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금액
○ 위약금	0.01	○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 기타경상이전 수입	134	○ 정부구매카드 등 카드 적립금 등 ○ 과오납 환수, 명예퇴직수당 환수 등
○ 기타잡수입	4	○ 폐기문서 및 고철 등 매각대금
○ 기타고정자산 매각대	22	○ 노후 공용차량 등 불용물품 매각대금

* 자료 : 병무청

(2) 미수납액 내역

(단위: 백만원)

목 별	미수납액	미수납액내역
계	206	
○ 건물대여료	98	○ 납기미도래(11건)
○ 과 태 료	48	○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체납 과태료(2건)
○ 징계부가금	21	○ 징계부가금(2건)
○ 기타경상 이전수입	40	○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체납(1건)

* 자료 : 병무청

다. 집행실적 분석

○ 병무청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입예산액은 2억 5,600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9억 1,800만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77.5%인 7억 1,200만원임.

○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많은 주요 원인은 변상금 4억 5,600만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발생 1억 2,100만원 등이 추가 징수 결정된 것에 기인함.

○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22.5%로 나타나고 있는바, 미수납액은 관유물대여료 납기미도래(11건) 9,800만원, 국외여행 미귀국자 보증인 체납 과태료(2건) 4,800만원, 징계부가금(2건) 2,100만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체납 4,000만원임. 이 중 납기미도래는 '26년 1월 전액 수납 완료되었음.

2. 세출

가.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본예산	예산변동		예산현액	집행액	%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이월	전용등					
합 계	473,196	-	2,676 -2,676	473,196	461,038	97.4	-	12,158
<병무행정(044)>	473,196	-	2,676 -2,676	473,196	461,038	97.4	-	12,158
□병역자원선발(1100)	22,519	-	±6	22,519	21,408	95.1	-	1,111
병역판정검사(1131-301)	22,519		±6	22,519	21,408	95.1	-	1,111
□병역자원충원(1200)	3,874	-	-	3,874	3,829	98.8	-	45
현역병모집(1232-303)	2,818			2,818	2,803	99.5	-	15
현역병입영(1232-305)	378			378	372	98.3	-	6
병력동원소집관리(1232-308)	678			678	655	96.5	-	23
□보충역복무지원(1400)	6,653	-	±45	6,653	6,565	98.7	-	88
산업지원인력(1434-309)	344			344	340	98.9	-	4
사회복무요원 교육(1434-319)	4,174		+45	4,219	4,215	99.9	-	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1434-320)	1,201			1,201	1,158	96.4	-	43
대체역 편입 및 소집(1434-323)	934		-45	889	851	95.8	-	38

(단위 : 백만원)

구 분	본예산	예산변동		예산현액	집행액	%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이월	전용등					
□병무행정지원(7100)	440,150	-	±2,625	440,150	429,236	97.5	-	10,914
인건비(7111-100)	142,121	-	+2,500 -125	144,496	143,771	99.5		725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7111-200)	3,594		+66	3,660	3,488	95.3		171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7111-250)	7,291			7,291	7,053	96.7		238
병무행정안내(7134-310)	2,906			2,906	2,875	98.9		31
병무청 건강보험부담금(7134-313)	5,384		+59	5,443	5,402	99.2		41
병무행정운영(7134-317)	8,440			8,440	7,418	87.9		1,022
병무행정지원 인력운영(7134-324)	4,762			4,762	4,644	97.5		118
병역의무자지원(7135-314)	28,818			28,818	27,335	94.9		1,483
사회복무요원운용(7135-315)	7,416			7,416	6,704	90.4		712
사회복무이행지원(7135-326)	212,733		-2,500	210,233	204,211	97.1		6,022
시설관리(7136-441)	3,452			3,452	3,236	93.8		216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7137-325)	315			315	300	95.1		15
병무행정정보화(정보화)(7137-501)	12,918			12,918	12,799	99.1		119

* 자료 : 병무청

나. 집행내역

(1) 전용액 등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별	전용액 등	전 용 사 유
계	2,676	
○ 인건비	2,500	○ 인건비 부족
○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	66	○ 보수 집행 증가로 인한 고용부담금 부족
○ 병무청 건강보험금	59	○ 보수 집행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부담금 부족
○ 병역판정검사	6	○ 예산성과금
○ 사회복무요원 교육	45	○ 사회복무연수센터 공공요금 부족 (내역변경)

* 자료 : 병무청

(2) 불용액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별	예산현액	불용액	%	불용액 내역
계	473,196	12,158	2.6	집행잔액 12,158백만원
○ 병역판정검사	22,519	1,111	4.9	집행잔액 1,111백만원
○ 현역병모집	2,818	15	0.5	집행잔액 15백만원
○ 현역병입영	378	6	1.7	집행잔액 5백만원
○ 병력동원소집관리	678	23	3.5	집행잔액 23백만원
○ 산업지원인력	344	4	1.1	집행잔액 4백만원
○ 사회복무요원 교육	4,219	4	0.1	집행잔액 4백만원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1,201	43	3.6	집행잔액 43백만원
○ 대체역 편입 및 소집	889	38	4.2	집행잔액 38백만원
○ 인건비	144,496	725	0.5	집행잔액 725백만원
○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3,660	171	4.7	집행잔액 171백만원
○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7,291	238	3.3	집행잔액 238백만원
○ 병무행정안내	2,906	31	1.1	집행잔액 31백만원
○ 병무청 건강보험부담금	5,443	41	0.8	집행잔액 41백만원
○ 병무행정운영	8,440	1,022	12.1	집행잔액 1,022백만원
○ 병무행정지원 인력운영	4,762	118	2.5	집행잔액 118백만원
○ 병역의무자지원	28,818	1,483	5.1	집행잔액 1,483백만원
○ 사회복무요원운용	7,416	712	9.6	집행잔액 712백만원
○ 사회복무이행지원	210,233	6,022	2.9	집행잔액 6,022백만원
○ 시설관리	3,452	216	6.2	집행잔액 216백만원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315	15	4.9	집행잔액 15백만원
○ 병무행정정보화	12,918	119	0.9	집행잔액 119백만원

* 자료 : 병무청

다. 집행실적 분석

○ 2025년도 병무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4,731억 9,600만원으로, 이 중 4,610억 3,800만원(97.4%)을 집행하였음. 예산집행 과정에서 전용액 등은 26억 7,600만원, 불용액은 121억 5,800만원(2.6%)이 발생하였음.

○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용액 등 26억 7,600만원의 내역은

- 인건비 25억원
- 보수 집행 증가로 인한 고용부담금 부족 6,600만원
- 보수 집행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부담금 부족 5,900만원
- 예산성과금 600만원
- 사회복무연수센터 공공요금 내역변경 4,500만원임.

○ 불용액 121억 5,800만원의 내역은

- 병역자원 선발 11억 1,100만원
- 병역자원 충원 4,500만원
- 보충역 복무지원 8,800만원
- 병무행정지원 109억 1,400만원임.

3. 재무제표 분석

○ 병무청의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중앙관서 전반의 자산·부채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가. 총 괄

(단위: 백만원)

구분	구 분	2025년 (A)	2024년 (B)	증감(A-B)	
				금액	비율
재 정 상태표	자 산	386,625	380,298	6,327	1.7 %
	부 채	233,090	176,323	56,767	32.2 %
	순 자 산	153,535	203,975	△50,440	△24.7 %
재 정 운영표 (프로그램별)	프로그램순원가	30,719	29,658	1,061	3.6 %
	관리운영비	505,332	503,721	1,611	0.3 %
	비배분비용	36	-	36	-
	비배분수익	374	451	△77	△17.1 %
	재정운영순원가	535,713	532,929	2,784	0.5 %
	비교환수익 등	-	-	-	-
	재정운영결과	535,713	532,929	2,784	0.5 %
재 정 운영표 (성질별)	수익합계	374	451	△77	△17.1 %
	비용합계	536,087	533,379	2,708	0.5 %
	재정운영결과	535,713	532,929	2,784	0.5 %
순자산 변동표	기초순자산	203,975	323,520	△119,545	△37.0 %
	재정운영결과	535,713	532,929	2,784	0.5 %
	재원의조달및이전	485,259	413,540	71,719	17.3 %
	조정항목	13	△157	170	108.3 %
	기말순자산	153,535	203,975	△50,440	△24.7 %

구분	구 분	2025년 (A)	2024년 (B)	증감(A-B)	
				금액	비율
현금 흐름표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230	-	15,230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359	-	△10,359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871	-	△4,871	-
	현금의증감	-	-	-	-
	기초의현금	-	-	-	-
	기말의현금	-	-	-	-

* 자료 : 병무청

나. 재무제표 분석

○ 2025년 병무청 자산은 3,866억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3억 2,700만원(1.7%)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2,330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7억 6,700만원(32.2%)이 증가하였음.

자산의 증가는 유·무형자산이 6억 4,000만원 감소한 반면, 금융자산 10억 1,100만원, 기타자산 59억 5,500만원이 증가함에 기인함.

부채의 증가는 차입부채가 41억 3,300만원 감소한 반면, 충당부채 608억 6,200만원, 기타부채 3,900만원이 증가함에 기인함.

○ 2025년 재정운영결과는 5,357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8,400만원(0.5%) 증가하였음. 이는 프로그램순원가(307억 1,900만원)에서 관리운영비(5,053억 3,200만원)와 비배분비용(3,600만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3억 7,400만원)과 비교환수익등(0원)을 차감한 값임.

병무청의 수익합계는 3억 7,400만원이고, 비용합계는 5,360억 8,700만원임.

○ 2025년 기말순자산은 1,535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4억 4,000만원(24.7%) 감소하였음. 이는 기초순자산(2,039억 7,500만원)에서 당기 재정운영결과(5,357억 1,300만원)를 차감하고, 당기 재

원의 조달 및 이전(4,852억 5,900만원)과 당기 조정항목(1,300만원)을 가산한 금액임.

○ 2025년 현금흐름은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흐름 152억 3,000만원이 유입되었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3억 5,900만원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8억 7,100만원이 유출되었다.

가. 병역판정검사(1131-301) : 잠복결핵검사 낙찰단가를 고려한 단가 편성 필요

(1) 사업 개요

○ 병역판정검사 사업(1131-301)은 공정하고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로 군에서 필요하는 우수자원을 선발하고, 최신 의료장비를 적기에 구입 등 필요경비 지원으로 원활한 병역판정검사를 수행하는 한편, 병역면탈예방·단속 및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사이버 병역면탈 조장 행위 차단, 확인신체검사 등 사전 병역면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 수사 활동을 통해 병역면탈 기도 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225억 1,9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95.1%인 214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4.9%인 11억 1,100만원을 불용하였음.

[병역판정검사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o 병역판정검사	22,519	22,519	-	±681	22,519	21,408 (95.1%)	1,111 (4.9%)
- 병역판정검사	21,812	21,812	-	±687	21,812	20,707 (94.9%)	1,105 (5.1%)
- 병역면탈예방 및 특별사법경찰	707	707	-	±14	707	701 (99.2%)	6 (0.8%)

* 자료: 병무청

(2) 검토의견

○ 병역판정검사 내역사업 중 잠복결핵검사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여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 잠복결핵검사는 병역판정검사 시 채혈 후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외부 검사기관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음.

○ 2025회계연도 잠복결핵검사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액 35억 6,000만원 중 25억원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 6,8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잠복결핵검사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o 잠복결핵검사	3,560	3,560	-	-	3,560	2,592 (72.8%)	968 (27.2%)

* 자료: 병무청

○ 잠복결핵검사의 불용률이 27.2%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잠복결핵 위탁검사 건당 편성단가와 실제 계약단가 간의 차이에서 비롯됨.

[2025회계연도 잠복결핵검사 편성·집행 단가 현황]

편성단가	집행단가	차액
16,000원	11,358원	4,642원

* 자료: 병무청

○ 잠복결핵검사의 연도별 편성 및 계약 단가를 보면 2022년도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16,000원의 편성단가는 변동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반면, 계약단가는 매년 낮아져 2025년도에는 편성단가(16,000원)의 약 30% 수준의 차액(4,642원)이 발생하였음.

[2025회계연도 잠복결핵검사 결산현황]

(단위: 원)

구분	입찰 참가업체	계약업체	편성단가	계약단가	단가 차
2022	-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16,000	15,570	430
2023	- 대한결핵협회 -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16,000	14,500	1,500
2024	-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 사단법인 대한결핵협회 - 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 -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 의료법인 케이씨엘의료재단	-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16,000	12,400	3,600
2025	-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 사단법인 대한결핵협회 -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16,000	11,358	4,642

* 자료: 병무청

○ 편성 및 집행 단가 간 유사한 수준이었던 2022년 이후 입찰 참가업체 수 증가 등 경쟁 여건 변화로 실제 집행단가는 매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예산안 편성 시 보다 현실적인 단가를 산정하였다면, 불용 규모를 보다 효과적으로 축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병무청은 외부 위탁검사 관련 예산 편성 시 최근의 실제 집행단가 추이를 면밀히 반영하여 단가를 산정함으로써, 예산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나. 현역병모집(1232-303):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별 구비장비 편차 해소 필요

(1) 사업 개요

○ 현역병모집 사업(1232-303)은 징집으로 획득하기 어려운 각 군의 주요 군사특기를 개인의 자격·전공·면허 등 적성과 연계하여 선발하고, 군 복무가 개인의 취업·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입영 전, 복무 중, 전역 후를 아우르는 병역진로설계를 추진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28억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99.5%인 28억 300만원을 집행하여 0.5%인 1,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현역병모집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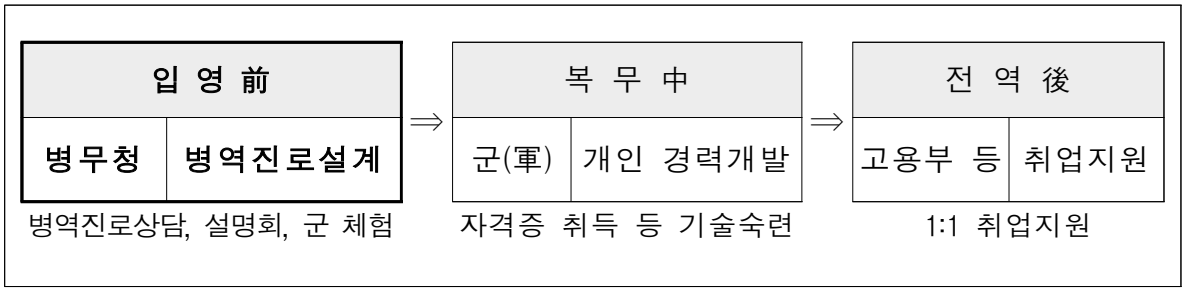
구 분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o 현역병모집	2,818	2,818	-	±58	2,818	2,803 (99.5%)	15 (0.5%)
- 현역병모집	544	544	-	+15 -100	459	452 (98.5%)	7 (1.5%)
- 병역진로설계	2,274	2,274	-	+129 -44	2,359	2,351 (99.7%)	8 (0.3%)

* 자료: 병무청

(2)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병역진로설계 사업'은 군 복무가 개인의 취업·진로와 연계되어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기 위하여 입영 전 직업선호도 검사[82]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상담관이 병역진로 상담을 진행하여 개인의 전공·경력에 맞는 군 특기를 추천하고, 군 복무시 추천받은 군 특기 분야에서 개인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역 후에는 군 경력을 바탕으로 복학·취업 등 사회 진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병역진로설계 사업 추진 체계도]



* 자료: 병무청

○ 동 사업은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83] 설치·운영과, 각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관할 내에 있는 대학교, 중·고등학교 등에 방문하여 병역진로상담 등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도 수혜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로 구성됨.

82) 한국고용정보원이 개발한 직업선호도 검사 프로그램으로 개인이 좋아하는 활동, 관심 있는 직업 및 학문분야 등을 측정하여 흥미유형 6가지(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에 적합한 직업정보를 제공함. 병무청은 2019년도 정책연구용역('진로·적성-군 특기 연결방안 등')을 실시하여, 직업선호도 검사 결과와 자격 등을 고려한 군 특기 연계 방안을 도출해 이를 병역진로설계 상담 시 활용하고 있음.

83) <참고자료1>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인력 및 시설 현황

○ 2020년 서울지방병무청 내에 수도권 관할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총 11개소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운영 중임.

○ 각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병역진로 상담뿐만 아니라 센터 방문시 다양한 장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자의 병역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음.

[병역진로설계센터별 체험형 장비 구비 현황]

(단위: 대)

구 분		총계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춘천	수원	인천	울산	창원	의정부
총 계		122	10	11	12	11	12	17	9	11	10	9	10
전차시뮬레이터		6	1	1	1	1	1	1					
사격체험		12	1	1	1	1	1	1		2	1	2	1
이동형 사격장비		19		1	2	1	3	3	1	1	3	2	2
VR 장비	블랙이글	2	1								1		
	드론조정	7	1	1	1	1		1	1		1		
	전술사격	1							1				
	차륜형자주곡사포	6	1	1	1	1	1	1					
	항공정비(공군)	1							1				
	입체작전(해군)	9		1	1	1	1		1	1	1	1	1
	상륙	3					1		1	1			

장갑차 (해병)												
팝드론	8	1	1		1	1	1		1		1	1
군복체험 AR	1						1					
체력 측정기	15	1		1	1		5		3		1	3
군용침대, 관물대	10	1	1	1	1	1	1	1	1	1		1
군번줄 각인기	11	1	1	2	1	1	1	1		1	1	1
BMI 측정기	11	1	2	1	1	1	1	1	1	1	1	

* 자료: 병무청

○ 그런데 각 센터별 체험형 장비의 구비현황을 보면, 센터별로 장비의 종류 및 장비수에서 편차가 나타나고 있어 병역의무자가 병역진로 선택시 다양한 군 복무 및 군 장비 체험의 기회를 갖는데 한계가 나타남.

○ 예를 들어 전차시뮬레이터는 수원센터 등 5개의 센터에서는 구비가 되어 있지 않고, 블랙이글 VR장비는 서울, 울산센터에 항공정비 VR 장비는 수원센터에만 구비되어 있으며, 상륙장갑차도 부산센터 등 3개의 센터에만 구비되어 병역의무자의 사전 체험기회에 제한이 발생함.

○ 센터별로 징집·모집, 육군·해군·해병대·공군 등 어느 하나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전 부대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각 센터에서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진로 선택시 좀 더 다양하고 충분한 군 복무 및 군 장비 체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지원 센터의 체험형 구비장비가 균형 있게 배치되어 병역의무자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현역병입영(1232-305) : 국외병역자원 적극적 관리를 위해 병무관 파견 추진 필요

(1) 사업 개요

○ 현역병입영 사업(1232-305)은 군에서 필요한 현역병 소요를 적정 충원하여 군의 안정적 병력운영 지원 및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고(현역병입영), 국외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자발적 병역이행 분위기를 확산(국외자원관리)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3억 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 중 98.3%인 3억 7,200만원을 집행하여 1.7%인 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현역병입영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 현역병입영 사업	378	378	-	±10	378	372 (98.3%)	6 (1.7%)
- 현역병입영	242	242	-	-	242	236 (97.5%)	6 (2.5%)
- 국외자원관리	136	136	-	±10	136	136 (100.0%)	- (0.0%)

* 자료: 병무청

(2) 검토의견

○ 국방개혁 2.0이 목표로 하는 상비 병력 50만명 규모[84]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0만명 가량의 신규 병력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추산[85]됨.

그러나, 국내 병역 자원은 감소 추세에 있고 이는 추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외 병역 자원의 관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음.

[20세 병역자원 규모 변동 예상 추이]

(단위: 만명)



* 자료: 병무청(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 2025년 기준 현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병역 자원은 약 11만명 가량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그 중 약 3만명은 학업 수행, 단기 해외여행 등을 사유로 하는 국외 일시체류자이고, 약 8만명은 영주

8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①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

85) 국방중기계획(2023년~2027년)에 따라 현역병은 상비병력 50만명의 60%(30만명) 수준이고, 현역병이 1.5년(18개월) 복무하므로 이를 감안 시 연간 약 20만명 충원 필요(병무청 설명)

권자, 복수 국적자 등으로 해외 거주 목적 국외 이주자임.

- 2025년 말 기준 국외 병역 자원 규모는 국내 총 병역 의무 미이행자(입영·소집 대상자) 규모 약 65만 7,000명의 약 16.0% 수준으로 상당규모의 병역자원이 국외에 체류·거주하고 있음.

[연도별 국외 체류·거주 병역자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국외일시체류자			국외이주자				
		소계	24세 이하	25세 이상	소계	24세 이하*	25세 이상		
							영주권 등	부모 동거	복수 국적
'25년	105,150	28,724	24,968	3,756	76,426	14,477	39,135	11,573	11,241
'24년	109,324	29,218	25,370	3,848	80,106	15,372	42,903	11,382	10,449
'23년	114,294	30,519	26,549	3,970	83,775	17,001	45,964	11,238	9,572
'22년	114,924	27,116	22,730	4,386	87,808	18,816	49,268	11,016	8,708

* 자료: 병무청

○ 병무청은 2025회계연도에 국외 병역 자원 관리를 위하여 현역병입영 세부사업(1232-305) 내에 국외자원관리 내역사업을 두고 예산 1억 3,6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재외공관에 배포하는 병역 이행 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 책자 발간, 출국 시 병역의무자에게 배부하는 안내문 제작 및 SNS 광고를 위한 일반수용비(1억 1,900만원)가 대부분(전체 예산액의 87%)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유사한 사업 내역 및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국외자원관리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금액	114	107	116	112	136	136	136	136
예산 내역	<2022년~2025년 주요 예산 편성 비목 내역> -국외병역자원관리 및 병역이행 정보제공 등 수용비 -국외이주자 중 국내 장기 체류 실태조사 등 국내여비							

* 자료: 병무청

○ 병무청은 국외병역자원 관리를 위해 법무부, 재외동포청 및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재외국민 병역설명회, 재외공관 위임사무 실태조사 등 국외출장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무부처가 아닌 점과 일시적인 출장이라는 점에서 국외 병역자원 충원 규모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임.

○ 실제로 국외 체류 병역 자원의 병역 의무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국외 체류·거주 병역 자원 병역 의무 이행 현황]

(2025.12.31. 기준, 단위: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영주권자 등 자진입영자	684	690	600	418	431	467

* 자료: 병무청

○ 또한 국가별 국외병역자원 분포 현황을 보면 미국과 일본에 병역자

원의 상당 부분(64.3%)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두 국가의 병역자원에 대해서는 병무청이 직접 지속적으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할 것임.

○ 이를 위해서 병무청은 병무관을 별도로 신설하여 파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병무관은 정보접근이 어려운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제도를 적기에 안내하고 허가기간 내 귀국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국외병역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현지 한인학생회, 각종 청년단체 및 한인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 병역의무자에 대한 적극적·체계적 관리를 가능토록 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교민 사회 내 병역이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자발적인 병역이행에 기여할 수 있음.

○ 따라서 병무청은 내실있는 국외자원 관리사업의 수행을 위해 미국 및 일본에 대해서 병무관을 신설하여 파견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국가별 국외병역자원 분포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브라질	기타
'22년	114,924	47,738	29,263	8,230	3,420	2,895	1,736	1,613	20,029
'23년	114,294	45,021	30,087	7,562	3,466	2,840	1,725	1,541	22,052
'24년	109,324	42,158	28,613	7,190	3,304	2,653	1,674	1,500	22,232
'25년	105,150	39,154	28,431	7,159	3,266	2,563	1,726	1,444	2,1407

* 자료: 병무청

라. 사회복무요원 교육(1434-319): 사회복무요원 교육 과정(새롬과정) 효과성 제고 필요

(1) 사업 개요

○ 사회복무요원 교육(1434-319) 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복무기본교육과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를 유도하고, 사회복무연수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유류비, 여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42억 1,900만원의 예산현액 중 99.9%인 42억 1,500만원을 집행하여 0.1%인 400만원이 불용되었음.

[사회복무요원 교육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o 사회복무요원 교육	4,174	4,174	-	+82 -37	4,219	4,215 (99.9%)	4 (0.1%)

* 자료: 병무청

(2) 검토의견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함양 및 기본 소양 교육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7년 5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가 「병역법」 제33조의2[86]에 마련됨.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통일적·지속적인 교육 여건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2016년 충청북도 보은군에 사회복무요원 통합 교육기관인 '사회복무연수센터'를 설치하여 전체 사회복무요원 기본교육 및 각종 복무지도교육[87]을 실시하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신자세 확립, 책임의식·사명감 고취를 목적으로하는 복무기본교육(기본과정, 디딤과정)과 복무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진 복무지도교육(나래과정, 새롬과정, 이음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27,546명의 교육이수 실적을 나타냄.

---

86) **「병역법」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복무기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87) **「병역법」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2.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연도별 사회복무요원 교육 이수실적]

(단위: 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29,861	30,733	28,773	27,546
복무기본교육	28,919	29,775	27,738	25,982
복무지도교육	942	958	1,035	1,564

* 자료: 병무청

○ 이 중 새롬과정은 반복 복무규정 위반자, 벌금이상의 형 선고자 등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4박 5일간 32.5시간 동안 다양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과정임.

[사회복무요원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

구 분	과정명	기 간	교 육 대 상
복무 기본 교육	기본	4박5일	모든 사회복무요원
	디딤	2박3일	사회복무요원 대표, 10개월 이상 성실복무자, 미래설계·진로탐색 교육 희망자
복무 지도 교육	나래	2박3일	복무규정 위반자, 벌금이상의 형 선고자
	새롬	4박5일	반복 복무규정 위반자, 벌금이상의 형 선고자, 복무지도교육 대상자 중 필요한 자
	이음	2박3일	현역복무부적합자 중 군 복무 적응 곤란자 중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 자료: 병무청

○ 새롬과정의 교육목표는 반복적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있거나 정신적·심리적 문제로 복무분야에 부적응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본적인 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유형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실복무를 유도하는 것이나, 교육 수료 후에도 복무규정위반 또는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사회복무요원의 비율이 매년 40% 전후로 유지되고 있음.

[새롬교육 수료 후 복무규정위반 인원 등 현황]

(단위: 명)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새롬교육 수료인원		378	425	399	362
수료 후	복무규정위반 인원	115	130	118	114
	벌금이상 형 선고	30	45	68	12
계		145	175	186	126
비율(%)		38.3	41.1	46.6	34.8

* 자료: 병무청

○ 교육 대상자 개개인의 특성상 단기간의 교육을 통한 개입만으로 근본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나, 교육 수료 후에도 매년 40% 수준으로 복무규정위반 등의 인원이 나오는 것은 교육의 효과가 높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동 사업을 통한 사회복무연수센터 운영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교육결과에 대한 분석·평가의 내실화, 행동변화 교육에 특화된 외부 전문기관의 선정, 교육 내용 및 운영 방식의 개선, 사후관리 체계의 강화 등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병무청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무요원 새롬과정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마. 대체역 편입 및 소집(1434-323) : 대체복무요원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사업 실시 필요

(1) 사업 개요

○ 대체역 편입 및 소집(1434-323) 사업은 병역의무자 중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대체역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9억 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95.7%인 8억 5,100만원을 집행하여 4.3%인 3,800만원을 불용하였음.

[대체역 편입 및 소집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o 대체역 편입 및 소집	934	934	-	-45	889	851 (95.7%)	38 (4.3%)

* 자료: 병무청

(2) 검토의견

○ 대체역 편입 및 소집 사업(1434-323)은 병역의무자 중 현역, 보충역,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대체역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사업임.

○ 헌법재판소가 (舊)「병역법」제5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88] (2018. 6. 28.)을 함에 따라 대체복무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2020년 1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 1. 1. 시행)됨.

○ 대체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체역 편입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2020.6.30.)한 이후로 2025년 12월말 기준으로 1,040명이 대체역으로 복무를 완료하였고 1,640명이 소집되어 복무 중임.[89]

[법무부 교정시설 별 대체역 복무 인원 현황]

('25. 12. 31. 기준, 단위: 명)

계	서울	인천	서울남부구	화성직훈	의정부	여주	서울남부교	춘천	원주	영월	경북제1	부산	포항	진주	대구	안동
1,640	95	60	78	70	42	73	66	39	48	46	36	42	44	47	42	48

88)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만을 규정한「병역법」제5조제1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판시함.(2011헌바379, 2018.6.28.)

89) <대체역 소집해제자(복무만료) 현황>

('25. 12. 31. 기준, 단위: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인 원(명)	-	1	2	105	531	401	1,040

	경북 제2	김천 소년	울산	통영	대전	청주	천안	공주	충주	광주	전주	순천	목포	군산	제주	교육 센터
	36	40	35	31	91	48	81	45	40	72	39	64	53	57	32	0

* 자료: 병무청

○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소집 후 법무부 소속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배치되어 합숙근무 형태로 교정시설 관리, 교정·교화 업무 보조 등을 수행하며 복무기간은 36개월임.

○ 병역의 종류는 「병역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으로 구분되고, 이 중 보충역은 대표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휴학 중인 대학생은 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지게 됨.

○ 그런데 현재 대학을 휴학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원격강좌 수강 시 학점 취득에 필요한 수강료·수수료를 지원하여 학업 공백 최소화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동 지원사업이 실시되지 않고 있음.

[원격강좌 수강료 등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원격강좌 지원	2025년도 집행액
현역	수수료(2017년~현재), 수강료(2019년~현재)	4,452
사회복무요원	수수료(2020년~현재), 수강료(2021년~현재)	515
대체복무요원	미지원	-

* 자료: 병무청

○ 대체복무요원 역시 「병역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계발 기회 지원에 있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병무청은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사업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90]과 적극 협의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90) 원격강좌 수강 시스템 운영: 국방부, 예산 편성·집행: 법무부

바. 병무행정안내(7134-310): 병역이야기 공모전 포상금 법령근거 마련 필요

(1) 사업 개요

○ 병무행정안내(7134-310) 사업은 전반적인 병무행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병무행정안내 사업, 병무행정 홍보 사업, 병역 자긍심 고취 사업, 국민참여 현장소통 사업 및 병무행정 주요정책 홍보 사업으로 구성됨.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29억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98.9%인 28억 7,500만원을 집행하여 1.1%인 3,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병무행정안내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o 병무행정안내	2,906	2,906	-	-	2,906	2,875 (98.9%)	31 (1.1%)

* 자료: 병무청

(2)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병역 자긍심 고취 사업’은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했거나 이행 중인 사람,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병역법」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91]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동 사업으로 포상금(310-03)을 지급하고 있음.

[2025회계연도 병역명문가 포상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o 병역명문가 포상	54	54

* 자료: 병무청

○ 한편, 다른 내역사업인 ‘국민참여 현장소통’ 사업에서도 병역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 후 공모전 수상작 35편에 대해서 1,900만원을 포상금(310-03)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음.

---

91) **「병역법」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가문에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하며, 이미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이야기 공모전 포상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o 병역이야기 공모전 포상	19	19

* 자료: 병무청

<병역이야기 세부집행 내역>

❍ 2025년 병역이야기 공모전 수상 현황(총 35편, 상금 19백만원)

- 내역: 대상 2편(각 300만원, 국방부장관상), 최우수 4편(각 120만원, 병무청장상), 우수상 8편(각 50만원, 병무청장상), 장려상 21편(각 20만원, 병무청장상)

❍ 공모전 경과: ('19년) 공정병역 UCC 공모전→('21년) 공정병역 콘텐츠 공모전→('22년~) 병역이야기 공모전<영상·웹툰>

○ 병역명문가 및 병역이야기 공모전 포상은 모두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공감대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병역법」에 근거를 둔 병역명문가 포상과 달리 병역이야기 공모전 포상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위반되는 집행임.

○ 매년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기획예산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배포하여 각 부처에서 예산집행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집행지침에서는 포상금의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금액 등은 하위 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통지침>
보상금 및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금액 등은 하위 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 포상금은 현금성 경비로서 사업홍보, 참여율 제고 등의 사업효과가 상당함에도 예산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 집행지침에서 법령에 지급 근거 및 한도를 명확하게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법령 근거 없이 포상금을 집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

○ 또한 유사 사업인 병역명문가 포상 사업에 따른 포상금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집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에 따른 다른 기준(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보여짐.

○ 따라서 병무청은 병역이야기 공모전 사업으로 지급하려는 포상금의 법령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 병역의무자지원(7135-314) : 의무자 여비대상자 인원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1) 사업 개요

○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7135-314)은 병역의무자가 징·소집 등 병역의무 이행 시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및 보상·치료비를 지급하고, 사회복무요원 수송차량 임차료 및 사회복무교육생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288억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94.1%인 273억 3,500만원을 집행하여 5.9%인 14억 8,300만원을 불용하였음.

[병역의무자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아 전용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o 병역의무자지원	28,818	28,818	-	-	28,818	27,335 (94.1%)	1,483 (5.9%)
- 병역의무자지원	25,403	25,403	-	-	25,403	24,154 (95.1%)	1,483 (5.8%)
- 사회복무요원지원	3,415	3,415	-	-	3,415	3,181 (93.1%)	234 (6.9%)

* 자료: 병무청

(2)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 중 병역의무자 여비 지원 사업은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입영·소집 등을 위해 이동 시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병역법」 제79조[92]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법정 의무지출임.

○ 2025회계연도 병역의무자 여비에 대한 예산은 238억 1,600만원을 편성하여 226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억 4,700만원을 불용하여 불용규모가 적지 않은데, 10억원 이상의 불용규모는 매년 발생하고 있음.

[연도별(2023～2025) 예결산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예산편성		예산집행		불용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
2025년	1,059,688	23,816	946,331	22,669	1,147	4.8
2024년	989,092	23,045	921,775	21,955	1,090	4.7
2023년	1,058,206	24,280	997,341	23,269	1,011	4.2

* 자료: 병무청

92) **「병역법」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재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
2. 제11조제4항 후단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위탁검사에 필요한 비용
3.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력검사·면접·필기·실기 등의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여비
4. 징집·소집에 의하여 또는 현역병을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사람의 여비

○ 주요 불용 발생원인은 의무자 대상의 편성인원과 실제 집행인원 간의 차이에 발생하고 있는데, 2023~2024년도에는 그 차이가 6만명대 수준이었다가 2025년도에는 11만명이 넘는 차이가 발생했던 것에 기인함.

[연도별(2023~2025년) 예결산 현황]

(단위: 명, %)

구분	예산편성	예산집행	차이	차이발생인원 비율
	인원	인원		
2025년	1,059,688	946,331	113,357	10.7
2024년	989,092	921,775	67,317	6.8
2023년	1,058,206	997,341	60,865	5.8

* 자료: 병무청

○ 병역의무자 여비는 「병역법」에 따른 법정 의무지출로서 미지급 또는 지연시 병역의무자의 권익 침해 또는 병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점과 예산편성과 군 소요 확정 및 집행 시점 간의 차이로 정확한 소요를 사전에 추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여유 편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다만, 편성인원과 집행인원 간의 차이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5년도에는 이전보다 2배 가량 늘어 악화되고 있는 점과 매년 10억원을 상회하는 불용규모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추계의 정확성을 개선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 여비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아. 병무행정운영(7134-317) : 병역기피 명단공개자에 대한 삭제사유 발생시 적시 삭제 조치 필요

(1) 사업 개요

○ 병무행정운영 사업(7134-317)은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송달 등과 같은 병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84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87.9%인 74억 1,800만원을 집행하여 12.1%인 10억 2,200만원을 불용하였음.

[병무행정운영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o 병무행정운영	8,440	-	±8	8,440	7,418 (87.9%)	1,022 (12.1%)

* 자료: 병무청

(2) 검토의견

○ 「병역법」 제81조의2제1항[93]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병무청은 매년 12월 중순 경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있음.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현황]

('26. 1. 31.현재, 단위: 명)

공개일	최초 공개자						공개삭제 (의무이행 등)	현재 공개 중
	계	현역 입영	사회 복무	대체 복무	판정 검사	국외 체류		
'25.12.18.	343	111	31	4	10	187	10	333
'24.12.19.	422	147	41	1	31	202	124	298
'23.12.14.	355	109	46	2	23	175	155	200
'22.12.15.	281	80	29		32	140	142	139
'21.12.16.	342	92	30		30	190	176	166
'20.12.17.	256	118	26		25	87	184	72

* 자료: 병무청

93) **「병역법」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수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 한편, 「병역법 시행령」 제160조제5항[94]에서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병역의무 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적사항 등을 삭제하는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음.

○ 동 규정의 공개자에 대한 삭제 절차를 보면 삭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병무청장 및 공개업무 주관과장에게 병역의무 기피 공개 삭제대상자 명단을 보고(통보)하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보고받은 병역의무 기피 공개 삭제대상자 명단을 보고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삭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어 삭제 사유 발생한 날부터 최대 8일 이내에 명단에서 삭제하여야 함.

○ 2025년도에는 삭제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총 250건의 명단 삭제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 삭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 보고 규정을 위반한 건수가 총 113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8일을 초과하여 삭제된 건수가 59건에 달하고 있음.

○ 더욱이 삭제 사유발생일로부터 한달을 초과하여 실제 명단 삭제가 이루어진 경우도 25건에 달하고, 3개월을 초과한 건수도 7건에 달하

94) **「병역법 시행령」제160조** ⑤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병역의무 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등을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는 등 명단 삭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음.

[2025년도 병역의무 기피 공개자 명단 삭제 현황]

(단위: 건)

명단 삭제 건수	삭제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초과 보고	삭제사유 발생일로부터 8일 초과 삭제	삭제사유발생 일부터 한달 초과 삭제	삭제사유발생 일부터 3개월 초과 삭제
250	113	59	25	7

* 자료: 병무청

○ 병역 기피자 명단 공개는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나, 명단 삭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 이상 공개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명단 삭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병무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

○ 따라서 병무청은 병역기피 명단공개자에 대한 삭제사유 발생시 삭제처리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자. 사회복무이행지원(7135-326): 사회복귀준비금 월 지원단가 추계 개선을 통한 불용 최소화 필요

(1) 사업 개요

○ 사회복무이행지원(7135-326) 사업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후 만기해지한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적금 입금액의 연도별 매칭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사회복무요원 사회복귀준비금)하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원격강좌 수강료 및 사회복무요원 국외영주권자 항공료를 지원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2025년도 예산액 2,127억 3,300만원 중 25억원을 전용한 예산현액 2,102억 3,300만원에서 97.1%인 2,042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60억 2,200만원을 불용하였음.

[사회복무이행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o 사회복무이행지원	212,733	212,733	-	-2,500	210,233	204,211 (97.1%)	6,022 (2.9%)

* 자료: 병무청

(2) 검토의견

○ 「병역법」 제79조의2[95]에 따라 국가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해 장병내일준비적금[96]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병무청은 사회복무이행지원(7135-326)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중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자 납입 원리금에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하는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2022년 1월 적금 입금액부터 사회복귀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2년도는 원리금의 33%, 2023년도는 원리금의 71%로 지원하다가 2024년도부터 원금의 100%를 지원해 오고 있음.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 비율]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보수(월액, 병장 기준)	67만원	100만원	125만원	150만원
적금 납입한도액	40만원	40만원	40만원	55만원
매칭비율	(원리금의) 33%	(원리금의) 71%	(원금의) 100%	(원금의) 100%
월 최대 지원금액	14.1만원	30만원	40만원	55만원

* 자료: 병무청

95) **「병역법」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 병역의무 이행자가 병역의무 이행기간(복무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전역(소집해제)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 등 여러 복무기관이 마련한 대표 정책 금융상품

○ 2025회계연도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의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 2,064억 6,500만원 중 1,969억 6,300만원을 집행하여 95.4%의 집행률을 나타내어 이전보다는 집행률 측면에서 개선이 되었음.

[연도별(2022～2025)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30,301	86,557	159,740	206,465
집행액	11,673	66,161	142,248	196,963
집행률	38.5	76.4	89.1	95.4

* 자료: 병무청

○ 그러나 여전히 당초 예산액 대비 95억 가량의 불용액[97]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병무청 세출예산의 총 불용액인 121억원의 78.5%를 차지하는 규모로서 예산편성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할 것임.

○ 2025회계연도의 주요 불용 발생원인은 당초 예산편성시 사회복무요원의 월 납입금액을 409,654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시의 월 지원단가는 377,088원으로 월 납입금액의 추정치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에 기인함.

97) 불용액 95억원은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의 편성액과 집행액의 차이에서 나온 수치로, 이 중 25억원의 전용 및 타 내역사업(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등) 충당금액 약 10억원을 빼면 실제 사회복무요원이행지원(7135-326) 사업의 불용액은 60억 2,200만원임.

[2025년도 사회복귀준비금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개월)

구 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금액	206,465	196,963	9,502 * 집행률: 95.4%
소집해제 (예상)인원	27,317	27,317	
가입률 (지원인원)	90% (24,585)	98.1% (26,786)	
가입기간	20.5	19.5	
월 지원단가	409,654원	377,088원	

* 자료: 병무청

○ 사회복무요원의 개인별 특성상 사회복귀준비금 가입여부, 가입금액 및 가입기간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의 한계는 분명 있어 보이나, 상당한 규모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따라서 병무청은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의 과다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월 지원단가 등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해 납입금액 증가시키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차. 시설관리(7136-441) :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사업 추진업체 다양화 필요

(1) 사업 개요

○ 시설관리 사업(7136-441)은 비연고지 근무자의 숙소 임차료 및 인천국제공항 병무민원센터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고,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평가하며, 소속기관의 노후시설 보수·유지관리로 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하려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34억 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93.8%인 32억 3,600만원을 집행하여 6.2%인 2억 1,600만원을 불용하였음.

[시설관리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아전용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o 시설관리	3,452	3,452		±20	3,452	3,236 (93.8%)	216 (6.2%)

* 자료: 병무청

(2)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은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평가하여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일반용역비(210-14)로 집행하고 있음.

○ 2025회계연도에는 11개청을 대상으로 하여 예산액 1억 5,200만원 중 1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00만원은 불용하였음.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항 목	예산액	지출액	비고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152	141	11개청×12.8

* 자료: 병무청

○ 동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98]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99]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업무시설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병무청은 현재 서울청 등 11개 청에 대해 본관동, 병무연수원, 검사동 등 28개동에 대해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음.

9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9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종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안전점검 시설물 현황]

연번	시설명		2022년 (23개동)	2023년 (24개동)	2024년 (26개동)	2025년 (28개동)
1	서울청	본관동	○	○	○	○
2		병무회관	○	○	○	○
3		군지원센터	○	○	○	○
4		병무연수원	○	○	○	○
5	부산울산청	본관동	○	○	○	○
6		검사동	○	○	○	○
7		현역입영센터	-	-	추가	○
8	경인청	본관동	○	○	○	○
9		검사동	○	○	○	○
10		군지원센터	○	○	○	○
11	광주전남청	본관동	○	○	○	○
12		검사동	○	○	○	○
13		민원동	○	○	○	○
14	대전충남청	본관동	○	○	○	○
15		검사동	○	○	○	○
16		직원숙소	○	○	○	○
17	강원청	본관동	○	○	○	○
18		검사동	○	○	○	○
19	충북청	검사동	○	○	○	○
20		본관동	-	-	-	추가
21	전북청	본관동	○	○	○	○
22		검사동	-	추가	○	○
23	경남청	본관동	○	○	○	○
24		별관동	-	-	추가	○
25	경기북부청	본관동	○	○	○	○
26		검사동	○	○	○	○
27	강원영동청	본관동	○	○	○	○
28		모병동	-	-	-	추가

* 자료: 병무청

○ 병무청은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매년 안전점검 용역업체를 통해 위탁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별 집행금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100]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런데 각 지방청에서 위탁한 연도별 용역업체 현황을 보면 경인청, 광주전남청, 강원영동청, 대전충남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청은 모두 매년 동일한 안전점검 용역업체를 통해 안전점검을 수행했던 것을 볼 수 있음.

[안전점검 시설물 현황]

연번	소속기관	용역업체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	서울청	한국안전기술정보	한국안전기술정보	한국안전기술정보	한국안전기술정보
2	부산울산청	㈜디에스구조엔지니어링	㈜디에스구조엔지니어링	㈜디에스구조엔지니어링	㈜디에스구조엔지니어링
3	경인청	㈜이원구조엔지니어링	㈜남북안전진단	㈜이원구조엔지니어링	㈜이원구조엔지니어링
4	광주전남청	㈜케이제이구조기술사사무소	지오구조안전진단㈜	지오구조안전진단㈜	㈜무진구조안전
5	대전충남청	㈜케이에스건설	㈜데미샘	㈜데미샘	㈜데미샘
6	강원청	㈜나라구조	㈜나라구조	㈜나라구조	㈜나라구조
7	충북청	㈜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1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8	전북청	(유)금강종합 건설	(유)금강종합 건설	(유)금강종합 건설	(유)금강종합 건설
9	경남청	㈜성신구조 ENG	㈜성신구조 ENG	㈜성신구조 ENG	㈜성신구조 ENG
10	경기 북부청	㈜이든구조 기술사사무소	㈜이든구조 기술사사무소	㈜이든구조 기술사사무소	㈜이든구조 기술사사무소
11	강원 영동청	토담하이텍	유원구조진단 건축사사무소	건흥 엔지니어링㈜	삼일안전 기술원(주)

* 자료: 병무청

○ 동일 업체와의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은 외부에서 볼 때, 특혜 제공이나 유착 의혹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경쟁 절차 부재로 인해 가격의 적정성 검증이 어려워지고 서비스 품질 개선 유인도 약화될 수 있음.

○ 따라서 병무청은 향후 안전점검 용역업체 선정시 용역업체를 추가로 발굴하여 가격경쟁력, 안전점검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용역업체가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방위사업청 소관 (수석전문위원 공춘택)

(생 략)

Ⅴ. 대체토론 요지

【국방부 소관】

○ 없 음

【병무청 소관】

○ 없 음

【방위사업청 소관】

○ 없 음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소위원장　김병주)

□ 국방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시정 14건, 주의 23건, 제도개선 22건 등 총 5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 병무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시정 1건, 주의 2건, 제도개선 6건 등 총 9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 방위사업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시정 7건, 주의 17건, 제도개선 11건 등 총 3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Ⅷ. 심사결과

1. 국방부 소관

○ 일반회계 세입세출 : 원안의결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세입세출 : 원안의결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세출 : 원안의결

○ 군인연금기금 수입지출 : 원안의결

○ 군인복지기금 수입지출 : 원안의결

2. 병무청 소관

○ 일반회계 세입세출 : 원안의결

3. 방위사업청 소관

○ 일반회계 세입세출 : 원안의결

Ⅷ. 부대의견

1. 국방부 소관

○ 국방부는 GDP 대비 3.5%의 국방비 확대 방침과 관련하여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규모 확대에 그치지 않도록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전략적 재원배분 방안을 강구한다.

○ 국방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연말 국고자금 소요 집중에 따른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금배정·지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미지급으로 인한 거래상대방 피해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국회에 보고한다.

○ 국방부는 다음연도 완공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요청 기한을 준수하고, 당해연도 완공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을 최소화하여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한다.

○ 육군은 동원참모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원/예비군 분야 감사를 육군 감찰실에 별도 조직을 편성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국방부는 국방부 직속 부대 등에서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 국방부(육군)는 육군 장병 등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2. 병무청 소관

○ 없 음

3. 방위사업청 소관

○ 없 음

Ⅸ.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Ⅹ. 시정요구사항

1. 2025회계연도 국방위원회 결산 예비심사 결과 : 총 103건

(단위: 건)

부 처 명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 복)	합 계
국방부	-	-	14	23	22	-	59
병무청	-	-	1	2	6	-	9
방위사업청	-	-	7	17	11	-	35
합계	-	-	22	42	39	-	103

2. 시정요구사항(결산)

가. 국방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사이버전문사관 제도 활용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교인건비(1101-151)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국방부는 사이버 분야에 특화된 사이버전문사관 양성을 위하여 군-대학 간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당한 재정과 양성기간(4년간 1인당 약 4,000만원의 등록금 전액 지원)이 투입됨에도 최근 계약학과 졸업생의 임관 및 복무 실적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임관자 대비 장기복무율도 각각 **11%**(3명), **0%**(0명), **19%**(5명)에 불과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사이버전문사관의 임관 및 장기복무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임관하지 않은 졸업생에 대한 장학금 환수 제재 외에 보상체계 개선, 경력관리 지원 등 실효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국방부 직할부대장 군별 균형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교인건비(1101-151)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을 해군과 공군은 같은 수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 비율로 하여 순환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육군:해군:공군 = 3:1:1) ○ 그러나 2025년 말 기준, 국방부 직할부대장 보직은 군무원을 제외하면 **모두 육군 소속**인 것으로 나타남(육군: 14, 군무원: 11, 공석: 3) *당시 공석인 국방부조사본부·국방대학교·국방시설본부의 직전 지휘관도 모두 육군 출신임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별 균형편성 및 순환보직 원칙이 실질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국방부 직할부대장 인사운영 방침을 개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td><td rowspan="3">부사관 기본급
과다 편성 관행
시정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부사관인건비(1101-15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부사관인건비 중 기본급의 이·전용 등 감액 규모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감액 규모: ('23) 908억원→('24) 2,195억원→('25) 2,750억원
○ 이는 예산편성 시 산정한 예상 인력운영 수준과 실제 운영실적 간 격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기본급 예산이 실제 소요를 초과하여 편성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부사관 예산편성 대비 실제 운영률 현황]
<table>
<tr><th>구분</th><th>'23</th><th>'24</th><th>'25</th></tr>
<tr><td>예상운영률(A)(%)</td><td>94.3</td><td>92.7</td><td>90.4</td></tr>
<tr><td>실제운영률(B)(%)</td><td>91.8</td><td>87.7</td><td>83.8</td></tr>
<tr><td>격차(A-B)(%p)</td><td>2.5</td><td>5.0</td><td>6.6</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국방부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부사관인건비 기본급의 최근 집행 추이 및 부사관의 실제 인력운영률을 면밀히 반영하고, 인건비가 타 사업의 재원으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관행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군급식 민간위탁사업 입찰 관련 세부기준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본급식(1231-301)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국방부는 ‘20년 이후 군급식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부대가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하더라도 구성비율이 낮고, 평가결과의 공개 여부나 공개 수준도 달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은 제안서 평가 시 기술능력평가 70, 입찰가격 평가 30을 원칙적인 평가기준으로 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일정 범위에서 달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각군의 평가 방식은 국방부장관의 세부기준 없이 기술강조형(기술평가:가격평가=90:10) 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군급식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여부 및 범위, 평가항목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군급식 민간위탁사업의 합리적인 조달방안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본급식(1231-301)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실제 군급식 민간위탁사업의 계약규모를 보면 5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처럼 각 부대 수준에서 조달하는 경우 입찰 과정에서의 분쟁 가능성, 대형계약 체결에 따른 각 부대의 행정적 부담 등이 수반될 것으로 보임 ○ 가령, 「국군재정관리단 계약 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면 국군재정관리단 주관하에 중앙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현재 부대조달로 추진되고 있는 군급식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조달전문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수요 부대의 조달 필요성과 계약체결의 행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달방안을 검토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td><td rowspan="3">직영급식
품질개선
지속추진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기본급식(1231-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현재 군급식은 민간위탁급식과 직영급식으로 시행 중이고 위탁 비율은 각군마다 상이함(공군: 63.2%, 해군: 34.3%, 해병대 11.6%, 육군 6.5%)
○ 최근 3년간 “군 급식 및 피복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직영급식의 만족도가 향상되고는 있으나 민간위탁 급식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군급식 만족도 조사결과]
<table>
<tr><th>구분</th><th>2023</th><th>2024</th><th>2025</th></tr>
<tr><td>직영급식</td><td>3.34</td><td>3.53</td><td>3.81</td></tr>
<tr><td>위탁급식</td><td>3.95</td><td>4.22</td><td>3.97</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국방부는 ‘군 급식혁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직영급식의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군별·지역별 급식여건 격차를 해소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군급식 식재료 경쟁입찰 비율 상향조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본급식(1231-301)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군급식 식재료 경쟁입찰 비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상향 요구하였는데 국방부는 아직까지 경쟁입찰 비율을 30% 유지 중임 ※ 참고자료 - **(수의계약 단계적 축소 결정)** 정부는 **2021. 10. 14.** 국무총리 주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농·축·수협을 통한 식자재 수의계약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의결하였음(군급식 개선 종합대책) ※ 농·축·수협 수의계약 비중: '22년 70% → '23년 50% → '24년 30% → '25년부터 100% 경쟁 조달 - **(수의계약 70% 유예 결정)** 단계적 축소 결정 이후, **2022. 12. 19.** 국무조정실 주관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농·축·수협 수의계약 비중을 70%로 유예하기로 하였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군급식 식재료의 경쟁입찰 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8</td><td rowspan="3">기본급식비와
연계검토를 통한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증/특식(1231-30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증/특식(1231-302) 사업의 예산액은 2022년 1,576억 2,700만원에서 2025년 1,164억 4,6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한 반면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90% 내외인데, 이는 매년 10% 내외의 비율로 예산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증/특식 사업 최근 4년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연도</th><th>예산액
(A)</th><th>전년도
이월액</th><th>이·전용
등</th><th>예산현액
(B)</th><th>집행액
(C)</th><th>집행률
(C/A)</th><th>집행률
(C/B)</th></tr>
<tr><td>2022</td><td>157,627</td><td>-</td><td>△15,785</td><td>141,842</td><td>139,914</td><td>88.8</td><td>98.6</td></tr>
<tr><td>2023</td><td>151,797</td><td>704</td><td>△16,479</td><td>136,023</td><td>135,241</td><td>89.1</td><td>99.4</td></tr>
<tr><td>2024</td><td>128,497</td><td>27</td><td>△10,730</td><td>117,794</td><td>117,380</td><td>91.3</td><td>99.6</td></tr>
<tr><td>2025</td><td>116,446</td><td>-</td><td>△10,155</td><td>106,291</td><td>104,178</td><td>89.5</td><td>98.0</td></tr>
</table>
○ 한편, 2025년에 증/특식 사업 조정(감)액 대부분이 기본급식비 사업으로 조정된 사정에 비춰보면 기본급식비 사업의 예산규모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국방부는 증/특식 사업의 예산을 적정규모로 감액함과 더불어 적정 규모의 기본급식비 예산 확보에도 힘을 기울일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9</td><td rowspan="3">특수식량 비축 목표 조정 등 관리 철저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특수식량(1231-303)</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특수식량 사업은 전시 또는 유사시 대비 비상 급식품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특수식량 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100%에 가까운데도 특수식량의 비축률은 81.7%에 머물고 있어 비축 목표(인가량)와 보유량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특수식량 관리 현황]
(단위: 만 대, %)
<table>
<tr><th>구분</th><th>인가량(A)</th><th>보유량(B)</th><th>비축률(B/A)</th></tr>
<tr><td>2022년</td><td>803</td><td>704</td><td>87.7</td></tr>
<tr><td>2023년</td><td>771</td><td>742</td><td>96.2</td></tr>
<tr><td>2024년</td><td>836</td><td>748</td><td>89.4</td></tr>
<tr><td>2025년</td><td>834</td><td>681</td><td>81.7</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국방부는 현 수준의 비축목표(인가량)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적정목표 설정 및 예산 확보를 통하여 특수식량 비축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전투식량 유형 중 복원형의 비축 비율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특수식량(1231-303)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전투식량 22형은 중량 및 부피 감소를 통한 전투하중 경감, 식단 다양화에 따른 기호도·연식성 보장, 사계절 온식 취식이 가능한 급식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됨 ○ 이 중 복원-22형은 발열-22형 대비 중량(52%↓) 및 부피(44%↓)가 대폭 감소하여 기동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단가(30%↓) 측면에서도 동일 예산 대비 약 43%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예산 효율성이 뛰어남 ○ 그러나 2025년 12월 기준 비축 목표 달성률은 발열형이 100%인 반면 복원형은 44%에 불과하여 그동안 군의 비축 조달이 중량형(발열형)에만 과도하게 편중되어 왔음이 확인됨 -2025년 조달목표: 발열형(139만여대), 복원형(38만여대)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기동성과 예산 효율성이 우수한 복원-22형 전투식량 비축이 발열형에 비해 심각하게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비축 인가 기준 재검토 결과를 반영한 조달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금년도부터 예산 집행과 조달계획 조정을 통해 복원형 구매 물량을 조기에 확대 집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기본피복사업의 연례적 이·전용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본피복(1241-301)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장병의 전투복, 전투화 등을 보급하는 기본피복 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2022~2024년에는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85.9~93.4%로 매년 129억~357억원을 감액 조정하다가, 2025년에는 이례적으로 132억원을 증액 조정하여 집행률이 102.7%에 이르는 등 편성과 집행의 괴리가 반복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기능성방한복(상의) 조달단가 상승(12만 2,000원→24만원), 조달물량 각각 변경(10만 5,500개→14만 9,000개), 기능성전투우의의 조달물량(7만 4,600개→9,984개) 변경됨 ○ 결과적으로, 당초의 조달단가 예측이 크게 빗나감에 따라 기능성방한복 상하의 수량의 불균형이 초래되었고 기능성전투우의의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피복류 조달단가의 예측 정밀도를 높이고 세사업별 소요를 면밀히 산정하여 연례적인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력지원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특수피복사업의 면밀한 시행계획 수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특수피복(1241-302)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방한피복류, 방탄복, 특수임무 피복 등을 지원하는 특수피복 사업의 최근 4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조정(감)하였고 특히, 2025년에는 예산액의 약 14%에 해당하는 269억원을 조정(감)하였음 ○ 주요품목별 집행현황을 보면, 방한피복류 중 매복깔개 및 무릎덮개는 전액 미집행하였고 방한화, 방한장갑, 방한용 스패츠는 축소 집행하였음 ○ 사업계획의 미흡한 수립으로 인한 방한피복류의 미집행 및 축소집행, 예산의 조정에 있어 사업 관리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특수피복 품목별 노후교체 소요와 조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례적인 예산 감액 조정과 품목별 미집행의 재발을 방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군 지휘통신장비 도입 시 보안성 검토체계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2131-301)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육군은 2025년 노후 화상회의 장비 교체를 위해 86개 부대에 각각 11개 품목을 도입하였으나, 이 중 코덱 등 2개 품목은 보안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된 외국 제조사 제품으로 확인됨 - 과거 육군 해·강안 경계시스템에 납품된 외산 CCTV에서 악성코드 유포 가능 서버 IP, 영상정보 저장 경로 임의 변경 등 다수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어 해당 장비가 철거된 사례('24)가 있음 ○ 현행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평가항목에는 보안 위해 가능성이 있는 외산 지휘통신장비 도입을 조달 단계에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군 지휘통신장비 도입 단계에서 보안 취약성이 우려되는 제품을 검토·제한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 평가기준 및 내부 조달지침을 개정 후 결과를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정보화사업 계약 시 과업범위 명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보체계개발유지(2131-302)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각 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물자·탄약·장비정비 체계 등을 통합하는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은 당초 **48,531FP**(Function Point, 기능점수*) 규모에서 계약 이후 국방부 요구에 따라 **117,565.8FP**로 2배 이상으로 확대되어 과업범위 및 납품기한 등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었음 *결과물의 세부 기능을 정량화한 수치에 단가를 곱하는 용역대금 산정 방식 ○ 그 결과, 국방부는 추가 과업에 대한 용역대금 및 미지급금(456억 3,500만원)과 계약단계에서 과업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였다면 발생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축소할 수 있었던 **지연손해금(126억 9,400만원)**을 지급하여 불필요한 재정지출이 발생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정보화사업 계약 시 기능점수(FP) 및 과업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계약 체결 이후 과도한 과업 추가로 인한 분쟁 및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방지하고 집행 절차가 준수되도록 시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정보통신운영지원 사업 시 적정 비목으로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보통신운영지원(2131-303)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물가정보관리체계'는 물가정보, 공사비 및 관리비 등을 조회·공유하여 계약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방망 내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업임 ○ 물가정보관리체계 시스템 운영을 위한 물가책자·가격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매** 및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총액 7,800만원)은 전산 관리 용역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관 업무의 위탁·대행에 소요되는 **관리 용역비**(210-15)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최근 3년간 관련 예산을 모두 **일반수용비**(210-01)로 편성·집행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차년도부터 물가정보관리체계 DB 구매 및 유지보수 사업 시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적정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주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6</td><td rowspan="3">행사예산의
세부사업
혼용집행 및
과도한 이·전용
지양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 colspan="2">일반회계 - 정보통신운영지원(2131-303)</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colspan="2">○ 국방부는 2025년 우주안보, 사이버워킹그룹과 인공지능 발전 컨퍼런스 행사를 진행하면서 당초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별도의 이·전용 절차 없이 다른 세부사업의 예산을 혼용하거나, 당초 예산을 크게 초과하여 이·전용한 후 다른 세부사업의 재원까지 추가로 집행하였음

[2025년 부적절한 행사예산 집행 내용]
<table>
<tr><th>행사명</th><th>주요 집행 내용</th><th>문제점</th></tr>
<tr><td>우주안보,
사이버
워킹그룹</td><td>‘우주안보워킹그룹’ 행사는 정책기획지원(5136-302)사업에, ‘사이버워킹그룹’ 행사는 정보통신운영지원(2131-303)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두 행사를 통합 추진하면서 용역비 부족분 1,927만 6,600만원을 별도의 이·전용 절차없이 지출결의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주요기관 기본경비(7111-254)에서 분할 집행</td><td>동일 행사 계약에 여러 세부사업의 재원을 혼용</td></tr>
<tr><td>인공지능
발전
컨퍼런스</td><td>당초 전력발전지원(7131-314)사업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약 4,200만원을 이·전용하고, 정보통신운영지원(2131-303)사업에서 1,900만원을 추가 집행하여 총 6,600만원 집행</td><td>당초 예산의 약 8.4배를 이·전용을 통해 증액하고 타 세부사업 재원을 추가로 활용</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colspan="2">○ 국방부는 개최되는 행사에 필요한 예산소요를 면밀히 산정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서로 다른 세부사업의 재원을 임의로 혼용하거나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응급 진료업무보조비의 집행실적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진료지원(2231-301)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2025년 신규 사업인 응급 진료업무보조비는 예산 6억 4,800만원 중 3억 1,300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48.3%로 부진하였음 ○ 응급 진료업무보조비는 응급 진료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 기반 제도로 설계되었으나, 훈령 마련(2025년 9월)이 지연되어 2025년 8월까지 집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응급진료 실적 촉진이라는 사업성과가 저조하였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응급 진료업무보조비의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집행관리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의무장비획득 사업의 낙찰차액 축소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무장비획득(2231-302)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의무장비획득사업의 낙찰차액은 2024년 27억 1,600만원에서 2025년 38억 2,5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낙찰차액율은 2024년 8.6%에서 2025년 9.8%로 1.2%p 증가하였음 ○ 낙찰차액율이 증가한 원인은 각 군 및 의무사령부가 장비별 조달 예정단가를 최신 조달실적단가 추이보다 높게 책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낙찰차액율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임 ○ 국방부는 2025년도 낙찰차액 38억 2,500만원과 조달취소 장비 예산 29억 3,800만원을 합한 집행잔액 67억 6,300만원 중 49.2%인 33억 2,800만원을 집행하여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의무장비 71대를 도입하였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낙찰차액율 감소를 위해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의무장비 획득 도입단가에 기술진보와 경쟁도 등에 따른 조달실적 단가변동 추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낙찰차액 확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표준차량 보유율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동장비(2331-301)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전투지원차량인 표준차량은 정수 19,277대에 보유 13,894대로서 보유율 72.1%이고, 이중 수명초과 노후차량은 1,558대로서 11.2%의 노후율을 보이고 있음 - 국방부는 표준차량의 보유율이 72.1%로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에 대해, 2015년 신형 중형표준차량(2½톤과 5톤) 개발 결정 후 신형 중형표준차량 도입 전까지 구형 표준차량 획득 물량의 축소 및 중단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구형 1¼톤 표준차량은 상용트럭으로 대체되어 더 이상 획득 소요가 없음) ○ 구형 표준차량은 1970년대 도입된 기계식 차량으로 안전 및 편의 장치가 부재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고 작전 효율성도 낮은 차량임 ○ 장병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 군 작전능력 발휘를 위해서는 구형 표준차량의 교체 기간을 단축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와 각군은 표준차량의 적정 정수 책정과 전력화 일정 등 표준차량 개선 로드랩을 수립하고 구형 표준차량 조기 교체 등을 통해 장병안전 및 전투지원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군수품 중 일반제품 구매 시 적격심사 기준 정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일반장비(2331-306)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각 부대의 공병 및 병참 장비를 확보하는 일반장비 사업의 2025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총 482건의 구매계약이 이루어졌고 이 중 80%에 해당하는 385건이 고시금액(2.3억원) 미만의 계약임 - 재경부 고시금액(2.3억원): 일반제품 계약금액이 2.3억원 미만인 경우, 정부는 중소기업과 우선조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군수품 중 일반제품 구매 시, 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적격심사 기준과 조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준이 달리 운용되고 있음 - 국방부는 구매금액 10억원 이상과 미만의 2단계로 구분 심사 - 조달청에서는 5억원 이상과 미만 및 고시금액 미만의 3단계로 심사 ○ 군수품인 일반제품에 대한 국방부와 조달청의 각각 다른 적격심사 기준 적용은 입찰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고 동일한 제품에 대해 입찰 주체에 따라 다른 낙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부대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입찰로 군수품을 구매할 시 적용할 기준에 대한 혼선이 초래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군수품 중 일반제품의 조달과 관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적격심사 기준을 정비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자산취득에 소요되는 조달수수료 등의 적정 편성 및 지출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물자유지(2332-305)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는 자산취득비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있음 ○ 물자유지 사업의 집행현황을 보면, 병참물자 세부사업에서 취득한 자산취득에 소요되는 조달수수료 등을 업무대행수수료라는 대표계정 과목명으로 물자유지 세부사업의 일반수용비로 집행하고 있음 ○ 이는 사업별로 예산을 운용하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을 규정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작성지침에도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와 각군은 자산취득에 소요되는 조달수수료 등을 해당 사업의 자산취득비로 적정하게 편성·지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타 세부사업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관행을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 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일반장비유지(2333-310)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국방부와 각군은 외주정비용역인 경우 시설장비유지비로, 수리부속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재료비로 집행하는 원칙 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집행과정에서 준수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음 ○ 타이어 구매의 경우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 집행이 혼재하고, 외주정비용역을 재료비로 집행한 사례도 있음 ○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와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 모두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에 계상하여야 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와 각군은 외주정비 및 수리부속 구매 예산을 집행지침이 규정한 비목에 정확히 계상하여 집행하고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 편성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예산집행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관리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간부양성교육(2431-302)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국방부는 해군 임관식에 필요한 영상장비(전광판)을 설치·운용하기 위해 4,136만원의 영상장비 임차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 ○ 해당 임차료는 당초 해상방위 기본경비(7111-252) 사업에 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임차료 부족분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계약대금 부족분을 다른 프로그램에 속한 간부양성교육(2431-302) 사업의 임차료에서 추가로 집행함 ○ 하나의 계약을 임의로 분리하여 이를 서로 다른 두 사업을 통해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상 이·전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임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예산집행 관련 규정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예산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이월한 집행잔액을 활용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의 재발 방지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군사대학교육(2432-301)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국방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M-MOOC 사업의 스튜디오 임차료 부족분 3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말 다른 세부사업의 집행 잔액 등을 예산변경 후 이월하여 2026년도에 스튜디오 방송장비 설치리스료 2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음 ○ 국방부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잔액을 예산변경과 이월하여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위반한 예산집행임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국방부 직속 부대에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첨단과학훈련장비의 집행지연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과학화훈련(2434-301)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첨단과학훈련장비의 집행률은 75.5%로 저조하였고, 주요 내역사업인 실기동모의교전장비의 집행률이 59.4%로 가장 낮았고, 가상모의 훈련체계 구축의 집행률도 74.3%로 저조하였음 ○ 실기동 모의교전장비의 집행률이 가장 낮은 이유는 육군의 화생방 마일즈 장비 관련 사업추진 일시중단(4개월)과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목록화 작업(2개월)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어 예산액 26억 7,0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되기 때문임 ○ 가상모의 훈련체계 구축의 집행부진 이유는 합성훈련환경(STE) 플랫폼 구축이 2025년 9월 입찰공고 의뢰 후 산출내역서 및 원가 검증에 2개월 가량 소요되는 등 사업추진 지연이 발생하여 연도내 계약 미체결로 예산액 18억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기 때문임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와 육군은 첨단과학화훈련장비의 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공고 및 원가검증 소요 기간 등의 집행 지연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집행점검을 실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사업추진절차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2436-302)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훈련장 시설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2022년 85.9%, 2023년 80.3%, 2024년 77.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25년도 2024년과 유사한 수준인 78.4%로 저조하였음. ○ 특히, 육군 개금 예비군훈련장 영내 실내사격장(집행률 8.8%), 육군 17사단 합성훈련 환경 플랫폼 훈련장 개수(집행률 0.4%) 및 육군 15사단 소부대 과학화(VR) 훈련장 개수(집행률 5.0%)는 집행률이 10% 이하로 저조하였음. ○ 집행부진 사유는 공사비가 편성되었으나 종합심사낙찰체로 인한 지연과 설계지연·변경, 오염토양 식별 등으로 본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임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설계변경·오염 토양 식별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규모·공사예산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및 추진절차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7	**과학화훈련체계 도입 일정을 고려한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2436-302)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육군 소부대 VR 과학화훈련장 개수 사업(4개소)은 부대별 기존 건물을 개수하여 과학화훈련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이나, 예산 59억 6,100만원 중 10억 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16.9%으로 저조함 ○ 국방부는 과학화훈련시설 내부에 설치될 과학화훈련체계 도입사업이 2026년부터 개시됨에도 시설공사를 선계획하여, 내부 시설·설비 제원 미확정으로 사업예산을 대부분 이월하여 재정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과학화훈련체계 도입 일정을 고려하여 과학화훈련시설 개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실효성 있는 간부확보 성과제고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간부확보장려사업(2439-301)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간부확보장려사업은 대학·전문대 재학생 중 지원자에게 가산복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산복무지원금과 학사 및 학군사관 후보생, 단기복무부사관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단기복무장려금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은 2025년도 예산액 31억 1,600만원 대비 19억 5,1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이 62.6%로 저조하였고,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은 계획인원 4,066명 대비 2,467명에 대하여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60.7%로 저조하였음 ○ 이러한 사업 집행실적 부진은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병과 초급간부 간 상대적 보상격차 축소, 복무기간 차이, 근무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임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중·단기 간부에 대한 보수·수당의 합리적인 인상방안 마련, 자산형성 지원 및 주거 개선 등을 통해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포함한 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9	법정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사정책지원(2439-306)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군무원과 공무직의 법정 장애인 고용의무(정원의 3.8%)를 준수하지 못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규모가 2024년 116억 700만원에서 2025년 146억 3,100만원으로 급증함 ○ 2024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필요”(주의)가 채택되었고, 국방부는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장애인고용 미달인원에 대한 신규 채용 직위를 발굴하도록 각 군 등에 하달 등을 이유로 “조치완료” 보고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고용의무 이행이 개선되지 않았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장애인 채용실적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채용관리를 강화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0</td><td rowspan="3">해병대
병영생활관 사업
집행관리 강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병영생활관(2531-3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해병대 병영생활관 사업은 장병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적기에 추진될 필요가 있으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음 ('23: 49.1%→ '24: 74.7%→ '25: 32.3%)
[최근 3년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table>
<tr><th>연도</th><th>예산액</th><th>예산현액
(A)</th><th>집행액(B)</th><th>다음연도
이월액</th><th>불용액</th><th>집행률
(B/A)</th></tr>
<tr><td>2023</td><td>31,823</td><td>37,055</td><td>18,197</td><td>10,480</td><td>23,446</td><td>49.1</td></tr>
<tr><td>2024</td><td>40,047</td><td>46,756</td><td>34,946</td><td>25,115</td><td>60,817</td><td>74.7</td></tr>
<tr><td>2025</td><td>51,280</td><td>45,926</td><td>14,822</td><td>16,687</td><td>35,212</td><td>32.3</td></tr>
</table>
- 2025년의 경우 ① 공원점용 및 산지전용 허가 등 대관협의 진행, ② 경계작전 효율성 검토 등 행정절차 추가 진행, ③ 연약지반 보강공사 등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공사 지연 등이 주요 집행부진 사유로 나타남</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국방부(해병대)는 해병대 병영생활관 사업의 대관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추가 진행 등 사업지연 요인을 면밀히 관리하여 반복적인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1</td><td rowspan="3">병영기본지원시설
사업 집행관리
강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병영기본지원시설(2531-304)</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2025년도 예산현액 2,655억 8,600만원 중 2,144억 5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다소 부진함(집행률: 80.7%)

[2025년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table>
<tr><th colspan="2">예산액</th><th rowspan="2">전년도
이월액</th><th rowspan="2">이전용
등</th><th rowspan="2">예산현액
(A)</th><th rowspan="2">집행액
(B)</th><th rowspan="2">다음연도
이월액</th><th rowspan="2">불용액</th><th rowspan="2">집행률
(B/A)</th></tr>
<tr><th>본예산</th><th>추경</th></tr>
<tr><td>214,418</td><td>267,073</td><td>38,687</td><td>△40,174</td><td>265,586</td><td>214,405</td><td>20,039</td><td>31,141</td><td>80.7</td></tr>
</table>
- 2025년의 경우 병영식당* 및 급수시설** 등 주요 시설에서 상당한 규모의 이월·불용이 발생하였고, 인허가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이 주요 집행부진 사유로 나타남

*병영식당 공사비) 이월: 104억 400만원, 불용: 124억 6,100만원
**급수시설 공사비) 이월: 47억 3,100만원, 불용: 20억 2,700만원</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국방부는 병영기본지원시설이 장병의 생활여건과 직접 관련된 사업임을 고려하여 이월·불용 등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등 사업추진 절차와 공사일정을 면밀히 관리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GOP 지역 여성시설 확충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영기본지원시설(2531-304)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GOP 지역 근무 여군은 지속적으로 증가('21: 78명→'25: 283명)하고 있으나, 2025년 기준 GOP 소초의 여성화장실 미설치율이 **40.7%**에 이르는 등 여성시설 확충이 미흡한 상황임 ○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GOP 지역 여성시설 확충 관련 개선 권고('25.6) 이후에서야 개선계획 수립 및 집행계획 재조정을 실시하였으나, 연내 공사기간 확보가 어려워 2025년도 여성시설 사업 집행률이 **31.3%**에 그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GOP 지역 근무 여군의 증가 추세 및 여성시설 설치 소요를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여성시설 확충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일반지원시설 사업의 면밀한 추경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일반지원시설(2533-303)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국방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동 사업에 622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추경에 포함된 일부 사업에서 사업추진 방식 및 기존 예산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였음 - 육군 PCBs(폴리염화비페닐) 함유 변압기 교체사업에 6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변압기 전체 교체를 전제로 **대당 480만원**의 단가를 적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절연유(油) 교체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 **대당 75만 6,000원**의 단가로 사업을 추진하여 집행률이 **69.8%**에 그쳤음 - 육군 유휴시설철거 사업은 본예산에 380억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추경으로 40억원을 증액하였으나, 최종 집행률이 **64.1%**에 그쳐 **실제 집행액이 당초 본예산 규모에도 미치지 못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육군)는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 방식과 소요단가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면밀히 수행하고, 기존 예산의 집행실적 및 향후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군 소음피해 보상사업 인건비 교부기준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시설정책지원(2533-320)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군 소음피해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63개 지방자치단체에 인건비를 교부하고 있으며, 현행 인건비 교부액은 **소음발생지역 기준주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보상건수·민원처리 등 실제 업무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수 - 예컨대, 상주시는 보상건수가 **1,119건**임에도 **인건비가 교부되지 않은** 반면, 양양군은 보상건수가 **32건**임에도 **5,243만원**의 인건비가 교부되는 등 실제 업무량 수준에 비례하는 인건비 교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기준주민수를 기본적인 인건비 산정기준으로 유지하되, 보상건수 및 민원처리 실적 등 실제 업무량 관련 요소를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소음피해 보상사업 인건비 교부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회계연도 중 신규사업 추진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예비군훈련시설확보 (2631-302)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예비군훈련시설 확보 사업은 예비군생활관·안보교육관 등 예비군 훈련장 시설을 신축·개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회계연도 중에 집행잔액 등을 활용해 신규로 추진한 사례가 총 46건 발생함 ○ 예산에 미편성된 신규사업의 추진을 지양하도록 하는 내용은 「국가재정법」 외에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국방예산 운용지침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규정과 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신규사업 추진이 매년 반복되고 시정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국가재정법」 등 재정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6</td><td rowspan="3">관서운영경비
지급범위
초과집행 주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급식지원(2632-301)</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서운영경비 중 운영비(210)로 지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임
○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 2025회계연도 중 급식지원 사업으로 ‘25년 동원훈련(1제대) 급식비’를 집행하면서 관서운영경비의 범위인 500만원을 초과한 800여 만원을 집행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과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를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함
<table>
<tr><th>일자</th><th>지급결의종류</th><th>운용부대</th><th>예산비목</th><th>지급결의명</th><th>지급액</th></tr>
<tr><td>2025-02-20</td><td>일반지급
결의서</td><td>국직부대
계룡대근무
지원단</td><td>210-04
(급식비)</td><td>’25년
동원훈련
(1제대)
급식비</td><td>8,095,800원</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국방부는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을 이행하지 않고 관서운영경비의 집행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7</td><td rowspan="3">군수품 조달시
관련 훈령 준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전투장구지원(2632-302)</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각 군에서는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라 일부 군수품을 조달청에 위탁하고 있는데, 조달청으로 분류된 전력지원체계 품목 중 국방조달계획서상 연간 조달계획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품목 등이 조달청 위탁대상임
○ 2025회계연도에 육군은 예비군훈련장에 사용할 침구를 구매하면서 집행금액이 4,400만원으로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라 조달청을 통한 조달을 했어야 했음에도 부대조달을 통해 구매하여 동 훈령을 위반하였음
<table>
<tr><th>지출관서명</th><th>거래처</th><th>이체
일자</th><th>지출결의명</th><th>사업
구조</th><th>목</th><th>세목</th><th>자금이체
금액</th></tr>
<tr><td>육군 지상
작전사
제36보병사단</td><td>OOOO</td><td>2025.
03.28.</td><td>25년
예비군훈련장
매트리스 구매</td><td>2632-
302</td><td>210</td><td>03</td><td>4,400만원</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국방부(육군)는 군수품 조달시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을 준수하여 조달청 조달과 부대조달을 엄격히 구분하여 집행하고,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8	**동원훈련 보상비 인원 추계 정확도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동원훈련(2632-303)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동원훈련 사업의 내역사업인 동원훈련 보상비 사업은 병력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훈련 수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262억 6,600만원에서 258억 2,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8.7%(예산액 기준)이고, 4억 4,100만원을 불용함 ○ 국방부는 2025회계연도 동원훈련 보상비 사업 예산안 추계 시 동원훈련 참가 인원을 40만 6,889명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훈련참가인원은 33만 1,324명으로 나타나 75,000여 명의 차이가 나타나는 데서 집행부진이 비롯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동원훈련 보상비 사업 예산 추계 시 적정 규모의 예비군 훈련 계획 인원을 산정하여 예산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9	**공공요금및제세 예산편성 합리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동원훈련(2632-303)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2025회계연도 공공요금및제세(210-02) 비목은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편성예산의 98.3%인 2억 3,400만원을 타 사업에 충당하고 원래 목적으로는 300만원을 집행하는데 불과하였음 ○ 실제 현장에서는 주로 동원지정자의 휴대폰번호, E-mail 주소를 파악한 후 이를 이용하고, 전송실패자, E-mail 미보유자 및 수시 신상변동에 따른 불분명자 등에게만 군사우편을 이용한 지휘서신을 발송하고 있는 관계로 공공요금및제세(210-02) 비목의 집행이 부진하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실제 통지 수단별 이용 현황 및 우편 발송 대상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공공요금및제세(210-02) 비목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합리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0	**병력동원훈련 퇴소시 수송차량 운전자 음주여부 측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동원훈련(2632-303)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병무청은 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의 입소시 집결지에서 훈련부대까지 외부 버스를 임차하여 집단 수송을 실시하고 있고, 안전한 수송을 위해 지방병무청의 입영확인관이 음주감지기로 수송차량 운전자 전원에 대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동원훈련소집이 종료되면 동일하게 외부 버스를 임차하여 각 군에서 입소시 집결지로 집단 수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병무청 사업이 아니고 국방부의 동원훈련(2632-303)으로 각 군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음 ○ 그런데 입소 시에는 집단수송 과정에서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수송 안전이 일정 부분 확보되고 있는 반면, 퇴소 시 집결지까지의 집단수송에 대해서는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음주측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음주감지기 구입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퇴소 시 집단수송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확인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1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위탁운영비 적정 예산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예비전력운영지원(2632-305)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국방부는 전·후반기 작계훈련을 받아야 하는 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시간·공간 제약을 해소하고 교육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원격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25회계연도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위탁사업의 예결산 현황을 보면, 당초 예산안은 6,000만원이었으나, 집행금액은 편성예산액의 10배 수준인 5억 9,750만원을 집행하였음 ○ 이러한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위탁사업 예산액의 과소계상으로 발생하는 예산액과 집행액 간 상당한 규모의 괴리는 2024년도에 이어 2025년도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위탁사업 추진 시 실소요에 부합하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다한 예산 조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2	**정책연구비 성격 일반연구비로 편성·집행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예비전력운영지원(2632-305)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최근 예비전력운영지원(2632-305) 사업의 일반연구비(260-01)로 집행한 연구과제를 보면, 매년 집행하는 ‘동원선박 자원관리 편람 최신화’ 과제를 제외하고 모두 정책연구비(260-02) 성격으로 보임 - 예를 들어, 2025년도 총 4건의 연구과제 중 ‘동원 병력 수송체계 개선방안 연구’, ‘예비군법 개정방안 연구’, ‘매력적인 상비예비군제도 복무설계 및 시행방안’ 등의 과제는 정책, 법령, 제도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각각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한 과제로 보임 ○ 내용상 정책연구비(260-0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비목을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관리를 회피하고, 정책연구 과제를 우회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정책연구 성격의 과제는 정책연구비로 적정 편성·집행하고 정책연구비 성격의 과제에 대해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등록하여 관리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3</td><td rowspan="3">PC 리스
계약기간을
미고려한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 부적정</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예비전력운영지원(2632-305)</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방부는 예비군부대 PC 및 모니터 리스계약이 2025년 2분기(20.8.~25.8.)에 마감될 상황임에도 2025년도 예산을 4개 분기(12개월) 기준으로 편성하여 2억 5,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table>
<tr><th>구분</th><th>편성</th><th>집행</th><th>잔액</th></tr>
<tr><td>예비군부대 PC 및 모니터 계약
(25년 2분기 계약종료)</td><td>5억 2,400만원
(25년 4분기
예산편성)</td><td>2억 6,700만원</td><td>2억 5,700만원</td></tr>
</table>
○ 2026년도 예산편성도 계약 기간이 빨라도 2026년 8월(26.8.~31.8.)부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5년 계약금액의 20%, 즉 12개월분 예산을 모두 편성해 올해도 예산 불용이 예상됨</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국방부는 예비군부대 PC리스 계약사업 추진시 실제 사용기간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4	**관서운영경비 집행기준 준수 및 의무물자 수시구매 의존도 축소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군수도병원 사업 및 지원비(3735-301)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는 관서운영경비 중 운영비를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2025년 국군수도병원 의무물자 구매 과정에서 개별 지급액은 500만원 이하로 하면서 **동일한 날짜에 동일 품목을 2회 이상 분할 지급**하여 사실상 건당 500만원의 지급범위를 초과한 사례가 총 **55건** 발생함 *특수수술재료 22건, 장비운영소모품 24건, 의료기재 9건 ○ 덴탈마스크 등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고 연간 소요량을 비교적 예측할 수 있는 **일반 의료소모품**은 사전에 적정 소요량을 산정하여 **중앙조달** 방식으로 공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군수도병원은 일반 의료소모품의 **85.3%를 수시구매로 충당**하고 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국군수도병원이 의무물자 구매 시 관서운영경비 지급범위를 초과하여 분할 집행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일반 의료소모품의 수시구매 의존도를 축소하는 등 조달체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5	해군2수리창 외주정비 계약 시 철저한 사업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군2수리창 사업 및 지원비(3742-301)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해군2수리창 사업 및 지원비 사업은 정비지원을 위한 사업 지원과 내부 작업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2025년도 예산현액 35억 4,300만원 중 16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17억 6,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1,6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이월예산은 플로팅 도크 임차예산으로서 함정 수리를 위한 상가대 외주정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업체의 능력 부족으로 계약 해지 후 다른 제작사와 재계약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음 ○ 아울러 플로팅 도크 임차 계약 체결 후 선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보증보험사의 업체 보증 한도 제한으로 잔금이 이월되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정확한 사업계획 및 집행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6	PKO 파병 세부사업과 교차집행에 대한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5134-302)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5134-302) 사업과 PKO 파병(5134-303) 사업은 PKO 여부에 따라 사업을 구분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음 ○ 유사한 사업이 구분 관리되면서 유사한 사업의 집행을 위한 세부사업간 예산의 조정이 있고, 사업간 교차 집행의 문제점이 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 사업과 PKO파병 사업간 교차집행에 주의를 기울일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7</td><td rowspan="3">정책연구비 성격의 연구과제 일반연구비로 편성·집행 지양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정책기획지원(5136-302)</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일반연구비(260-01)은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정책연구비(260-02)는 각 부처의 정책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구분되고 있음
○ 정책기획지원 사업의 연구용역비(260목) 집행현황 중 정책연구비로 볼 수 있음에도 일반연구비(260-01)로 진행된 사례가 있음
[일반연구비와 정책연구비의 집행현황]
(단위: 천원)
<table>
<tr><th>계약명</th><th>세목</th><th>금액</th></tr>
<tr><td>한미 공동 북핵사후관리 방안 연구</td><td>일반연구비(260-01)</td><td>114,000</td></tr>
<tr><td>한반도 위기관리 연구</td><td>일반연구비(260-01)</td><td>25,000</td></tr>
<tr><td>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3차)</td><td>정책연구비(260-02)</td><td>67,000</td></tr>
</table>
○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비용을 일반연구비로 편성·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국방부는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성격의 사업임에도 일반연구비로 편성·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정책연구비로 편성·집행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8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조기 집행 및 이월 방지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책기획지원(5136-302)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는 예산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도록 규정함 ○ 또한, 수의계약을 통한 정책연구과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진하되,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말에 사업예산의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연구 용역의 신규 발주를 지양하도록 규정함 ○ 동 사업에서는 총 6건의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 이 중 2건이 11월에, 1건이 12월에 계약체결되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연구용역 과제의 선정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의계약 및 연말 계약을 최소화하여 이월을 방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9	**대규모 이용액 발생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군 배상금(7136-301)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군 배상금은 2025년 예산액 176억 8,9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이용 증액 1,718억 7,4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895억 6,300만원이며, 이 중 1,794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일반배상금의 이용 규모가 전년 대비 538억원 급증한 이유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등을 계기로 삼청교육·한국전쟁 관련 등의 과거사를 중심으로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법원의 배상금 지급 선고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관련 소송 경과 및 사건별 피해자 수 추이 등을 분석하여 배상금 소요를 면밀히 추계하여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대규모의 이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0</td><td rowspan="3">국방예산 확대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계획 수립 및 전략적 재원배분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총괄</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최근 5년간 국방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52조 8,401억원에서 2025년 61조 2,469억원으로 확대되었으나, 같은 기간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38%에서 2.30%로 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 국내총생산 및 국방예산 현황]
(단위: 억원, %)
<table>
<tr><th>구분</th><th>'21</th><th>'22</th><th>'23</th><th>'24</th><th>'25</th></tr>
<tr><td>국내총생산(GDP)(A)</td><td>22,219,129</td><td>23,237,815</td><td>24,086,874</td><td>25,568,574</td><td>26,633,426</td></tr>
<tr><td>국방예산(B)</td><td>528,401</td><td>546,112</td><td>570,143</td><td>594,244</td><td>612,469</td></tr>
<tr><td>GDP 대비
국방예산(B/A)</td><td>2.38</td><td>2.35</td><td>2.37</td><td>2.32</td><td>2.30</td></tr>
</table>
○ 정부는 국방비를 GDP 대비 3.5%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바, 현 수준 대비 상당한 재정소요가 예상되므로 향후 국방예산 확대 과정에서 주요분야에 대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요구됨</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국방부는 GDP 대비 3.5% 국방예산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재정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자주국방 역량 강화·첨단전력 투자·장병 처우개선 등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국방예산의 전략적 재원배분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1	**국방비 미지급 재발 방지를 위한 자금운용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2025회계연도 말 국방예산에서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미지급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5,002억원**으로, 해당 금액은 회계연도 종료 이후인 2026년 2월에야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음 - 이는 **연말 국고 자금소요 집중**에 따른 일시적인 국고계좌 잔액 부족으로 자금 지출이 제한된 데 따른 것으로, 회계연도 종료 시점까지 정상적인 자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계약업체의 자금운용 부담, 지연손해금 발생 및 장병 처우·군 운영 안정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연말 국고자금 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월별 자금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말 자금집행 집중으로 인한 미지급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2</td><td rowspan="3">적정 예산편성을
통한 이·전용
최소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총괄</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방부는 2025회계연도 총 6,838억 6,500만원을 이·전용하였으며, 4,529억 4,200만원 규모의 내역변경 및 2,269억 1,600만원 규모의 세목조정을 실시하였음
[2025회계연도 국방부 이용·전용·내역변경·세목조정 내역]
(단위: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예산액</th><th>이용</th><th>전용</th><th>내역변경</th><th>세목조정</th></tr>
<tr><td>금액</td><td>43,540,241</td><td>314,674</td><td>369,191</td><td>452,942</td><td>226,916</td></tr>
</table>
○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전용액은 증가하는 추세임
*이·전용 규모: ('23) 3,036억원→('24) 5,222억원→('25) 6,839억원</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국방부는 적정 예산소요에 대한 면밀한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 목적의 범위 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요건을 준수하여 예산의 이·전용을 최소화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3	**용역계약에 부합하는 비목으로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국방부는 정훈문화활동 사업에서 해군 창설 80주년 호국음악회 평택공연 당시, 공연 대행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용역대금을 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등의 비목으로 나누어 2,000만원을 지급함 ○ 국방부는 해상방위경비 사업에서 특정 고속관광협동조합과 국내 시찰에 대한 포괄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업체에 일반용역비가 아닌 일반수용비, 임차료, 국내여비 등의 비목으로 나누어 900만원을 지급함 ○ 국방부는 단기국내외 시찰 사업에서 공군 우수근무자 격려행사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반용역비가 아닌 일반수용비, 임차료, 국내여비, 관서업무추진비 등의 비목으로 나누어 1억 3,400만원을 지급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용역계약 대금 집행시 이를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는 등 그 비목을 정확히 하여 재정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4	**토지매각을 위한 적극적 협의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 토지매각대(72-721)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토지매각대는 주한미군공여해제 반환 토지의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인식하는 항목으로, 2025년도 예산액은 359억이나 수납액이 197억 4,600만원에 그쳐 수납률이 55.0%으로 저조하였고, 2024년 수납액 561억 1,900만원 대비 대폭 감소함 ○ 2025년도 토지매각대 수납률 저조한 주요 원인은 매각계획금액이 163억원으로 가장 큰 501정보대 부지는 정부의 정부자산 매각 전면중단 지시(2025년 11월)로 인해 회계연도 내 매각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임 ○ 8군 종교휴양소 부지는 서울시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해 매각이 진행되지 못하였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토지매각 지연 요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5	**반환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정화사업 지연대책 필요**	관련사업명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 환경조사 및 치유(4332-302)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환경조사 및 치유사업은 주한미군 반환 및 공여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하는 사업임 ○ 기지별 정화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캠프 마켓(B, D),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모빌 등이 2025년도 정화예산 대비 집행률이 60% 이하로 집행이 부진하였음 ○ 기지별 집행부진 사유로는 철거승인 취소소송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절차 지연·결정 번복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승인 지연 등임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기지별 집행부진 사유를 분석하고 향후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과의 절차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강화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6	**총사업비 조정 요청시기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 총괄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당해연도 완공예정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조정을 허용하지 않고, 다음 연도 완공예정 사업의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국방부는 **2025년 완료 사업 9개 중 8개**에 대해 당해연도에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하였고, **2026년 완료 사업 5개 중 3개**는 2025년 5월 31일 이후에 조정을 요청하는 등 총사업비 조정 요청 시기를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고 있음 ○ 이와 같이 완공시기에 임박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경우 변경사항이 예산편성 과정에 적기에 반영되지 못하여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존재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대하여 다음 연도 완공사업의 총사업비 조정요청 기한을 준수하고, 당해연도 완공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을 최소화함으로써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7	**연금기여금 수입 추계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군인연금기금 - 연금기여금(55-551)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2025년 연금기여금 계획액은 2024년도 1월과 2월의 기여금 납입평균인원 185,409명을 기준으로 7,74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25년 납입평균인원은 179,865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수납액은 계획액 대비 346억원 적은 7,403억원에 그쳐 오차율이 4.5%에 달함 ○ 정부가 연금기여금 수입을 연례적으로 실제 수납액보다 과다하게 추계·편성함에 따라, 부족한 수입을 기금적립금에서 충당하여 지출함에 따라 기금적립률이 2022년 3.9개월에서 2025년에는 최소 기준 3개월에도 미달한 2.2개월로 하락하여 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낮아지고 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향후 연금기여금 수입 등을 포함한 수입 및 지출 항목들에 대하여 정확성과 신뢰도가 높은 추계방식으로 개선하여 오차율이 확대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8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군인복지기금 - 복지시설확보(2237-642)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그린나래호텔 리모델링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액은 62억 1,700만원 중 7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54억 2,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등 집행이 부진하였음 ○ 동 사업은 2024년 10월 객실 30실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설계변경이 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늦은 2025년 8월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2025년 10월 본공사 계약이 완료되었음 ○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은 2025년 12월, 해체감리용역 계약은 2026년 1월에야 체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공사 착공은 2026년 1월로 지연되어 집행부진이 발생하였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각 군의 복지시설 사업이 향후 총사업비 변경 및 연도별 사업비 조정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군인복지기금운용지침」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9	**주거지원 실적 제고를 위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군인복지기금 -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2240-640)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군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군 간부에게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또는 월차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액 671억원 중 475억원을 집행하고, 196억원을 불용하였음 ○ 기금의 지원세대 계획은 6,293세대이나 실제 지원세대는 4,731세대에 불과하여 계획 대비 1,562세대가 미달하여 군 간부들의 주거 안정 도모 측면에서 성과가 저조하였음 ○ 이러한 집행실적 부진은 국방부가 금리 인상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2023년 지원 기준을 강화하여 지원 인원이 지속 감소하였고 이후 지원 기준을 조정하였으나 지원 인원 및 금리 변동 등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임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주기적으로 금리와 지원인원 수 추이 및 주거여건 등을 고려한 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사업실적을 제고할 것		

나. 병무청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안)</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td><td rowspan="3">잠복결핵
낙찰단가를
고려한 단가
편성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병역판정검사(1131-3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병무청</td></tr>
<tr><td>지적사항</td><td>○ 내역사업 중 잠복결핵검사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여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 잠복결핵검사의 불용률이 27.2%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잠복결핵 위탁검사 건당 편성단가와 실제 계약단가 간의 차이에서 발생
<table>
<tr><th>편성단가</th><th>집행단가</th><th>차액</th></tr>
<tr><td>16,000원</td><td>11,358원</td><td>4,642원</td></tr>
</table>
○ 편성 및 집행 단가 간 유사한 수준이었던 2022년 이후 입찰 참가업체 수 증가 등 경쟁 여건 변화로 실제 집행단가는 매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예산안 편성 시 보다 현실적인 단가를 산정하였다면, 불용 규모를 보다 효과적으로 축소할 수 있었음.</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병무청은 외부 위탁검사 관련 예산 편성 시 최근의 실제 집행단가 추이를 면밀히 반영하여 단가를 산정함으로써, 예산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	**병역진로설계지원 센터별 구비장비 편차 해소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현역병모집(1232-303)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으로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총 11개소 설치·운영 중 ○ 각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병역진로 상담뿐만 아니라 센터 방문시 다양한 장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자의 병역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으나, 각 센터별 체험형 장비의 구비현황을 보면, 센터별로 장비의 종류 및 장비수에서 편차가 나타나고 있어 병역의무자가 병역진로 선택시 다양한 군 복무 및 군 장비 체험의 기회를 갖는데 한계 ○ 센터별로 징집·모집, 육군·해군·해병대·공군 등 어느 하나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전 부대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각 센터에서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진로 선택시 좀 더 다양하고 충분한 군 복무 및 군 장비 체험 기회 제공 필요		
		시정요구 사항	○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지원 센터의 체험형 구비장비가 균형있게 배치되어 병역의무자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장비 확충·재배치 방안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안)</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td><td rowspan="3">국외체제
병역자원관리
강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산업지원인력(1434-309)</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병무청</td></tr>
<tr><td>지적사항</td><td>○ 병무청은 협업체계 구축, 국외출장 등을 통해 국외병역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주무부처가 아닌 점과 일시적인 출장이라는 점에서 국외 병역자원 충원 규모를 확대하는데 한계
[국외 체류 병역 자원의 병역 의무 이행 실적]
<table><tr><th>구 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r><tr><td>영주권자 등
자진입영자</td><td>684</td><td>690</td><td>600</td><td>418</td><td>431</td><td>467</td></tr></table>○ 또한 국가별 국외병역자원 분포 현황을 보면 미국과 일본에 병역자원의 상당 부분(64.3%)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두 국가의 병역자원에 대해서는 병무청이 직접 지속적으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됨.</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병무청은 미국 및 일본 등 해외에 체재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 등 국외체재 병역자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4	**사회복무요원 교육과정 (새롬과정) 효과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복무요원 교육(1434-319)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신자세 확립, 책임의식·사명감 고취를 목적으로하는 복무기본교육(기본과정, 디딤과정)과 복무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진 복무지도교육(나래과정, 새롬과정, 이음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 이 중 새롬과정의 교육목표는 반복적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있거나 정신적·심리적 문제로 복무분야에 부적응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본적인 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유형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실복무를 유도하는 것이나, 교육 수료 후에도 복무규정위반 또는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사회복무요원의 비율이 매년 40% 전후로 유지 ○ 교육 수료 후에도 매년 40% 수준으로 복무규정위반 등의 인원이 나오는 것은 교육의 효과가 높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동 사업을 통한 사회복무연수센터 운영의 신뢰성 저하 요인임.		
		시정요구 사항	○ 병무청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무요원 새롬과정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5	**병역의무자 여비대상자 인원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역의무자지원(7135-314)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 중 병역의무자 여비 지원 사업은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입영·소집 등을 위해 이동 시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 ○ 2025회계연도 병역의무자 여비에 대한 예산은 238억 1,600만원을 편성하여 226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억 4,700만원을 불용하여 불용규모가 적지 않은데, 10억원 이상의 불용규모는 매년 발생 ○ 주요 불용 발생원인은 의무자 대상의 편성인원과 실제 집행인원 간의 차이에 발생하고 있는데, 2023~2024년도에는 그 차이가 6만명대 수준이었다가 2025년도에는 11만명이 넘는 차이가 발생했던 것에 기인		
		시정요구 사항	○ 병무청은 병역의무자 여비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제 집행인원 추이를 면밀히 반영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안)</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6</td><td rowspan="3">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예산 불용 최소화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병무행정운영(7134-317)</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병무청</td></tr>
<tr><td>지적사항</td><td>○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최초 소집시부터 전자적 통지서 송달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어 동의자에 대한 전자송달 실시
○ 최근 통지서 전달 방식 중 전자우편, 앱 전달 비중이 증가하고, 전자송달 미동의 또는 미열람으로 등기우편 송달 건수가 점차 감소 중으로 2025년도 결산 결과 20% 수준의 불용액 발생
<table>
<tr><th>구분</th><th>2023</th><th>2024</th><th>2025</th></tr>
<tr><td>집행률(%)</td><td>86.6</td><td>96.9</td><td>80.6</td></tr>
</table>
○ 2026년도 예산은 2025년도 대비 22.6%가 증가한 25억 8,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이메일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송달 증가율을 고려하지 못해 7억 7,100만원 불용 예상</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병무청은 병역의무부과통지시 통지시 송달 및 열람의 대상자가 모바일 활용에 익숙한 청년인 점을 고려해 각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7	**사회복귀준비금 월 지원단가 추계 개선을 통한 불용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복무이행지원(7135-326)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중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자 납입 원리금에 정부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하는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사업 시행 ○ 당초 예산액 대비 95억 가량의 불용액(불용 60.2억, 전용 25억, 타 내역사업 충당 10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병무청 세출예산의 총 불용액인 121억원의 78.5%를 차지하는 규모로서 예산편성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 - 2025회계연도의 주요 불용 발생원인은 당초 예산편성시 사회복무요원의 월 납입금액을 409,654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시의 월 지원단가는 377,088원으로 월 납입금액의 추정치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 기인함.		
		시정요구 사항	○ 병무청은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의 과다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월 지원단가 등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해 납입금액 증가시키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안)</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8</td><td rowspan="3">사회복무요원운용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한 예산편성의 정확도 제고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사회복무요원운용(7135-315)</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병무청</td></tr>
<tr><td>지적사항</td><td>○ 병무청 및 각 지방병무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으로 2025년도에 74억 1,6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 중 9.6%에 달하는 7억 1,200만원 불용 처리
○ 동 사업은 매년 불용액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2025년에는 지난 2022년보다 불용액이 5.4배 가량 증가한 수준임.
<table>
<tr><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r>
<tr><td>1억 3,200만원</td><td>1억 5,800만원</td><td>2억 2,300만원</td><td>7억 1,200만원</td></tr>
</table>
○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충원 부족 및 연·병가 사용 등으로 회계연도 내 복무일수 감소임.</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운용 사업의 예산편성 정확도를 제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9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사업 추진업체 다양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시설관리(7136-441)	시정	병무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은 시설물의 위험요인 등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평가하여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일반용역비(210-14)로 집행 ○ 각 지방청에서 위탁한 연도별 용역업체 현황을 보면 경인청, 광주전남청, 강원영동청, 대전충남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청은 모두 매년 동일한 안전점검 용역업체를 통해 안전점검 수행 ○ 동일 업체와의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은 외부에서 볼 때, 특혜 제공이나 유착 의혹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경쟁 절차 부재로 인해 가격의 적정성 검증이 어려워지고 서비스 품질 개선 유인도 약화 가능		
		시정요구 사항	○ 병무청은 향후 안전점검 용역업체 선정시 가격경쟁력, 안전점검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용역업체가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다. 방위사업청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	**사업 시설여건, 연동체계 변경 등의 장애요소 사전 검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성능개량(R&D)(2131-349)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당초 사업계획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25년 1분기에 사업공고, 3분기에 체계개발 계약을 위하여 일반연구비 101억 4,700만원 등이 편성됨. ○ 그러나 실제 사업추진에서는 2025년 7월에서야 사업공고를 하고, 12월말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당초 계획보다 5개월 가량 지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연말 국고당국의 사정으로 관련 예산의 대부분(101억원)이 불용되었음.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향후 유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초기단계부터 시설여건, 연동체계 변경 등 사업 장애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의 불용·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일정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	**체계개발 간 양산사업의 시설사업 예산심의 절차 준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무인수색차량(R&D)(2131-356)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방위사업청은 당초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양산사업의 패키지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일반연구비에서 자체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협상 대상업체의 신원조사 지연으로 해당 연구용역비를 2026년도로 다시 이월하였음. ○ 패키지시설사업은 향후 별도의 양산사업에 필요한 시설 건설을 위한 것으로, 체계개발 단계에서 그 필요성과 규모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산사업 추진을 전제로 연구용역부터 별도로 추진한 것은 사업추진 절차 및 예산편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향후 양산사업에 패키지시설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기본전략 또는 사업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시설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 규모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안에 적정하게 반영함으로써 신규 사업을 전용을 통해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	**소요군과의 대상 차량 협의 등 강화를 통한 사업관리 철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 Ⅰ-②(2132-300-012)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20～'27, 총사업비: 1조 2,005억원)은 2025년도에 차량형 무전기 설치 지연 등으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이월·불용(1,201억원)되고, 대상 차종 변경 등으로 양산계약 기간도 연장('25→'26)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음. ○ 향후에도 소요군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설치 대상 차종 및 전력화 일정이 적기에 확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사업 지연과 예산 집행 부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또한,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물량·단가 등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양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하였음.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소요군과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설치 대상 차종 및 전력화 일정을 확정하고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4	사업추진 일정과 예산의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군위성통신체계-II(2132-305)	시정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의 패키지시설사업은 다대역 및 차량용 위성단말 전력화를 고려하여 차량호 및 차양대를 신축하는 것임. ○ 당초에는 2023년 5월~2024년 2월 설계를 진행하고 2024년 3월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시설사업비 증액이 예상되어 총사업비 분석·연구를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설계일정이 2024년 8월~2025년 8월로 지연됨. 그로 인하여 공사착공이 2025년 8월로 순연됨에 따라 패키지시설사업 예산 163억원 중 공사비 등 113억원(72.5%)가 이월되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실제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패키지시설사업의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 일정과 예산의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안에 반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5	**병력감소 대응 및 경계효율성 제고 취지에 맞게 사업지연 방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2132-364)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총사업비 4,854억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경계시스템을 육군 및 해병대에 전력화하는 사업으로, 2025년 구매시험평가 과정에서 3개 제안업체 모두 대상장비에서 결함이 확인되어 해당 구매시험평가는 중단되었으며, 이후 재입찰공고 및 제안서평가를 거쳐 2026년 6월부터 2개 업체에 대하여 재구매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기존 제안업체가 결함 항목 등을 개선하여 재입찰에 참여함. ○ 이에 따라 당초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던 전력화가 2028년으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음.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재구매시험평가 및 후속 계약절차를 철저히 관리하여 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을 방지하고, 관련 예산의 이월·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구매시험평가 과정에서 실전성 결여와 보안인증 누락 등 방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구매평가에서 경보 분류 및 불필요한 경보의 평가 제외, 강풍 등 악(惡)기상 조건의 평가 배제, 월북 보조도구를 활용한 침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평가기준의 적정성 등의 우려가 있음.	주의	방위사업청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의 구매시험평가 과정에서 실전성 결여(불필요한 경보개념 도입, 악기상 제외, 월책 보조도구 미적용, 부적절한 평가장소 등)와 보안인증 누락 등 입찰·시험평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6	**낙찰차액의 총사업비 및 예산안에 적기 반영**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중요지역대드론통합체계(2132-368-016)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23~'25, 총사업비: 292.2억원)은 2023년 12월 주장비 계약체결 과정에서 195억 2,100만원의 대규모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총사업비(최초: 487.7억원)와 연도별 계약금액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였음. ○ 특히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낙찰차액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지 않아, 2024년도 낙찰차액 잔액 97억 5,600만원과 2025년도에 편성된 자산취득비 1억 3,500만원이 각각 불용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었음.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계약 과정에서 대규모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총사업비와 연도별 계약금액 및 예산안에 적기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예산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7	**사업준비단계에서 참여업체의 사업능력 등 충분한 사전 검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소총사격무인항공기(2132-377)	시정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소총사격무인항공기의 구매를 위한 최초 공고 시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였으나, 그 중 1개 업체가 제안서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유찰됨. ○ 2025년 8월에 재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입찰에 참여한 복수업체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준이 충족되었고 2026년 5월말 현재 구매시험 평가를 진행 중임. ○ 유찰 발생에 따른 입찰 재추진에 따라 주장비 계약이 순연되어 당초 사업 종료 기한인 2027년까지 납품 및 전력화 완료가 어렵게 되어 사업기간이 2028년으로 연장되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향후 드론 등 유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업체의 사업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 일정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8	**성능확인 관련 절차 개선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다목적무인차량(2132-386)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다목적무인차량 기종결정 및 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성능확인 절차(2025년 10월) 중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안서 제출 당시 최대 성능을 검증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음. ○ 또한 방위사업청은 2025년 10월 성능 확인 절차 착수 시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가 성능 확인을 위한 선결 조건에 해당하는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두 업체가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을 때까지 사업 추진이 추가 지연되었음. *2026년 7월에 동 사업의 구매 계약체결이 완료되더라도 전력화는 2028년(당초 2027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기종결정 시 성능확인 평가 방식이나 선결 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의 성능확인 관련 절차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전력화 지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9	**소요군 및 참여 예상 업체와의 충분한 협의 등 사전준비 철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중거리자폭드론(2132-392)	시정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23.8: 긴급소요결정, '24.7: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은 당초 2025년 사업을 착수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전력화를 완료할 계획이었음. ○ 2025년 5월 최초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당시 단수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여 유찰되었고, 7월에 2차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참가업체(A·B업체)에 대한 제안서평가 결과 요구조건 미충족으로 적격업체가 없었음. ○ 동 사업은 긴급소요로 결정되어 신속한 전력화가 요구되는 사업임에도, 제안요청서 작성 과정에서 소요군과의 협의가 장기화되어 최초 입찰공고('25.5)가 당초 계획보다 약 4개월 지연되었고, 이후에도 제안업체가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찰 및 재공고가 반복됨에 따라 대상장비 선정이 당초 계획보다 약 9개월 지연되었음.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사업 착수 전 소요군 및 참여 예상 업체와의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 반복적인 유찰과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0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탐색개발 계약 및 후속절차 신속 추진**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155mm정밀유도포탄(R&D)(2231-345)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적의 도발원점을 타격하는 동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23.11)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육군 주관의 '적정 항재밍 수준 연구용역'이 추가로 실시('25.4~11)되면서 항재밍 요구성능 구체화가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당초 2025년 7월 예정이었던 탐색개발 계약도 체결되지 못하였음. ○ 향후 요구성능 구체화로 인해 작전운용성능 수정 및 비용분석 등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으로, 탐색개발 계약시기('25.12→'27.12)와 완료시기('27.12→'30.4)가 대폭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의 장기 지연이 우려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사업타당성조사 및 후속 연구용역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작전운용성능을 조속히 확정하고, 합참·소요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탐색개발 계약 및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 지연과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1	**해병대 운용 K-2전차 적시 전력화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K-2전차(2232-302)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해병대 노후 K1A2전차를 K2전차로 대체하기 위해 2026년도 국회 심사 단계에서 사업착수를 위한 10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음. 그러나 4,000억원 이상의 증액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26년도 정부 예산안 3,539억원(기존 4차양산 중도금)에 당시 해병대 운용 K2전차 양산 소요가 반영되지 않아, 총사업비 비용분석을 추가로 실시함에 따라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당초 2026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던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수정협의가 지연(11월 예상)되고 있으며, 총사업비 협의 및 분석 결과에 따라 양산계획 수정,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도 순차적으로 지연될 우려가 있음. *해병대 운용 K2전차의 전력화 시기: 2029~2030년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국회의 예산 증액 취지와 해병대의 전력화 시기를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 분석·수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양산계획 수정 및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가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2	**자주박격포의 전력화를 위한 탄약 양산 사업관리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120mm자주박격포(2232-341)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기계화부대 자체 화력을 보강하기 위해 120㎜자주박격포와 탄약을 패키지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양산하는 사업임. ○ 계획대로 2025년도에 박격포의 납품은 완료되었으나, 탄약은 업체의 생산 및 수락시험 지연, 탄약 규격 현안 등으로 2027년까지 납품이 완료되는 것으로 순연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자주박격포의 실질적인 전력화를 위하여 탄약 양산 및 납품이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3	장비 간 체계통합 및 획득순서 등을 사업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특수작전용기관단총(2232-366)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5년도에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관단총과 조준경에 대한 입찰공고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예산안(1.2억원)을 편성함. ○ 그러나 2025년 3월 구매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분리발주를 하되, 기관단총 기종 결정 이후 조준경을 순차적으로 획득하는 방식(순차발주)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조준경 입찰공고에 필요한 예산이 불용·조정됨. ○ 2023년 사업분석과 2024년 사업타당성 재검증 단계에서 모두 분리발주의 타당성이 확인된 바 있으므로, 방위사업청은 순차발주의 필요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일정과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음.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기관단총 및 조준경의 후속 구매절차와 전력화 일정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복수 장비를 연계하여 획득하는 사업은 사업추진기본전략 단계에서 분리·통합발주 및 동시·순차발주 여부와 획득순서를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분석·사업타당성조사 결과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4	**적시 전력화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단안형야간투시경 경미한 성능개량(2232-389)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현재 운용 중인 단안형야간투시경은 2006년부터 도입되어 초도 도입 물량의 사용 기간이 20년에 달하여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이처럼 노후화된 장비를 성능개량하는 동 사업은 2025년도에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대금 등으로 64억 4,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영상증폭관 신뢰도시험에서 대상업체의 성능 미충족으로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음. ○ 2023년부터 계속하여 입찰공고의 순연과 대상 업체의 기준 미충족 등으로 2026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개량된 야간투시경이 추가 지연 없이 전력화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장병들의 야간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후속 야간투시경 도입 사업도 신속히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5	**주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패키지시설사업의 적기 완료**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소형무장헬기(2432-314)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육군의 노후 공격헬기(500MD 등)를 대체하는 소형무장헬기사업은 현재 2차 양산까지 착수('23.12)하였으나, 이와 연동된 패키지 시설사업은 2022년부터 집행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관협의 및 부지매입, 패키지시설 설계 적정성 검토 등의 소요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하였음. - 그 결과, 패키지시설사업의 2025년도 예산 550.4억원 중 223.1억원만 집행하여 사업관리 및 예산집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한편, 현재 소형무장헬기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재검증'이 진행('25.11～'26.7) 되었는데 재검증 결과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패키지 시설사업의 설계적정성 검토 일정도 순연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2차 양산기간('23～'28) 중 소형무장헬기 배치 시까지 패키지시설이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사업타당성조사 재검증 및 시설설계 적정성 검토 등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주장비 배치 이전에 패키지 시설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일정 및 예산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6	**최초양산 및 후속양산 총사업비 관리 노력 필요,** **후속사업에 필요한 시설 설계 등 선행행위 추진 기준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라매(R&D)(2431-302)	주의,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KF-21 최초양산(40대) 총사업비는 당초 7조 9,281억원에서 8조 8,065억원으로 8,784억원 증가하였으며, 후속양산(80대) 비용도 2024년 추산 14조 2,440억원에서 2026년 KIDA 실증검토 결과 18조 4,422억원으로 4조 1,982억원(29.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KF-21 양산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방위사업청은 공대지 무장 개발을 위한 추가 예산 소요와 물가·환율 상승, 공급망 불안정 등을 주요 증가요인으로 설명함. ○ 또한 최초양산 이후 후속양산을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지만, 후속양산에 필요한 패키지시설의 설계 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KF-21 최초양산 및 후속양산 사업의 비용 증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총사업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적정한 재정투입을 통해 각 군의 균형된 전력 획득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주의) ○ 방위사업청은 연구개발·최초양산·후속양산이 연속되는 대형 무기체계에 대해 후속단계 착수에 필요한 시설설계·부지확보 등 최소한의 선행행위를 앞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7	**특수항공작전 능력 적시 보강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2432-330)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24～'33, 총사업비: 3조 4천억원)은 주장비 국외 구매를 위한 공모가 1개사 단독입찰에 따라 두 차례 유찰(2025년 6월, 2025년 10월)되었으며, 사업 일정 순연에 따라 2025년도 중 구매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장비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1억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음. *2026년 2월 보잉(CH-47F/ER) 기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2026년 7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짐.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육군 특전사의 특수항공작전 능력과 공군의 탐색구조 작전 능력 보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8	사업 준비단계부터 발생한 사업 지연 원인분석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휘헬기-II(2432-386)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5년 7~10월 입찰공고 결과 경쟁이 예상되었던 4개 기종 중 1개 업체만 참여하여 유찰되었고, 10~11월 재공고를 거쳐 현재 협상·구매시험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어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방위사업청은 단일업체 참여에 따른 유찰 및 재공고를 주요 지연 사유로 설명하고 있으나, 2024년 11월 수립 예정이었던 구매계획이 2025년 4월에 수립되고 2025년 2월 예정이었던 입찰공고도 같은 해 7월에 실시되는 등 입찰 이전의 사업 준비단계부터 일정이 상당 기간 지연되었으므로, 전체적인 사업 지연 원인을 입찰 유찰에만 두기는 어려움. ○ 특히 신규 지휘헬기 전력화 시점에는 현용 VH-92 지휘헬기의 기령이 23년에 이르는 등 노후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적시 적력화가 요구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현재 진행 중인 구매시험평가·협상, 기종결정 및 계약 체결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업 준비단계부터 발생한 일정 지연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용 지휘헬기의 노후화를 고려하여 신규 지휘헬기의 전력화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9	**적기 전력화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방위력개선사업 간 이·전용에 대한 통제기준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형구축함(KDDX)(2332-303)	주의,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상세설계 단계에서 경쟁업체의 고발 등으로 사업추진방안 결정이 지연되어, 순차적으로 선도함 인도 일정 역시 당초 2029년에서 2032년으로 늦어질 것으로 보임. 2025년 예산액 497억 3,500만원 중 0.9%인 4억 6,100만원만 집행함. - 더욱이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예산액 498억 400만원 중 99.1%인 493억 5,100만원이 타 함정사업으로 전용되어 지적된 바 있음.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 관련 사전준비를 면밀히 하고, 추가적인 사업 지연 및 대규모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주의) ○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간 이·전용에 대해 사업별 자금관리 원칙과 일정 규모 이상의 이·전용에 대한 별도 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전용으로 사업별 연차 투자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국방중기계획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무적으로 환류하도록 제도화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0	특수전 지원함과 이와 연계된 특수침투정의 적기 전력화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특수전 지원함 Batch-I(2332-314)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특수전 지원함 사업은 2011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할 때 2021년 전력화 예정이었으나, 2022년 속력기준 및 탑재능력 등 군의 작전운용성능이 구체화되어 소요수정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업타당성을 재검증하게 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특수전 지원함의 자선(子船)으로, 연계가 필요한 특수침투정 사업 역시 2023년 이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2025년 12월 사업추진방법이 국내연구개발에서 국외구매로 변경되는 등 사업이 장기화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특수전 지원함 전력화가 2031년 이후로 예상되어, 현재 운용 중인 해상침투 지원함정의 도태(2029년) 이후 2년 이상 전력 공백이 우려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특수전 지원함 사업의 지연 이력과 전력화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현재 운용 중인 해상침투 지원함정이 도태되기 전에 특수전 지원함과 이와 연계된 특수침투정 모두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1	**향후 유사 사업 시 사업종료 연도 내 정산·지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 관리**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잠수함구조함-II(2332-316)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사업기간(2015~2025년)의 종료연도인 2025년에 예산현액 890억 3,700만원 중 98.9%인 880억 2,600만원을 사업종료 연도를 초과하여 사고이월하였음. *연말 국고금 일시부족으로 연도 내 미집행됨. ○ 2024년 11월 함정 인도 이후 원가정산 완료('25.11.10.)까지 약 12개월, 정산 완료 후 지출결의('25.12.30.)까지 다시 약 2개월이 소요되는 등 정산·지출에 이르는 후속 집행절차가 전반적으로 지연되었기 때문임. *동 사업의 계약특수조건 상 원가정산은 최종 납품 후 6개월 이내 완료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약 12개월이 소요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향후 유사 사업 시 함정 인도 이후 원가정산 및 지출 등 후속 절차의 지연으로 사업종료 연도 내에 집행이 완결되지 못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2	패키지시설과 주장비 전력화 시기 일치를 위한 시설공사 관리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체계(2332-328)	시정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해안양륙용 함정 및 지원장비로 구성된 동 사업의 주장비는 '25.12월 1차 인도되었으나, 주장비를 정비·보관하기 위한 패키지시설 완공이 당초 '24.12월에서 '27.3월로 지연되어 주장비 전력화 시기와 연계되지 못하게 됨. *사업타당성 재검증과 설계 적정성검토, 연약지반 보강공사 등으로 인해 패키지 시설공사가 지연됨. ○ 또한, 2025년도 예산현액 530억 7,200만원 중 약 212억원을 이월하였는데, 이중 대부분의 금액은 연말 지출결의 후 국고당국 사정으로 지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음. ○ 총사업비 역시 최초 확정된 1,198억원에서 약 2,248억원으로 증가하고, 사업기간도 3년('24년→'27년) 연장되는 등 초기 사업계획 수립이 면밀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시험평가 방안 구체화에 따른 시험평가비 증가, 시설 준공 지연에 따른 체계 보관료 추가 소요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패키지시설공사가 재차 지연되지 않도록 시설공사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약·납품 일정의 연간 분산으로 납품대금의 연도 말 집중을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총사업비 증액 및 사업기간 반복 연장의 원인을 분석하여 잔여기간 중 총사업비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3	**주장비 전력화 시기와 연계한 패키지시설사업 관리 및 소요 비목의 예산편성 반영**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항기뢰(2532-321)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자항기뢰 주장비 개발·양산사업과 패키지시설(정비시설·저장시설)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장비와 정비시설은 적기('23.12, '22.10)에 양산 및 준공되었으나, 저장시설은 천장균열 발생('24.3) 등으로 준공시점이 지연('24.6→'25.12)되어 주장비와 패키지시설 간 전력화 시기가 불일치하게 되었음. - 저장시설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상당기간 지연됨에 따라 2025회계연도에 별도의 예산은 편성되지 아니하여 전년도 사고이월액(31.7억원)만으로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준공대금 등의 지급결의를 연도 말에 집중시키고 연말 국고당국 사정으로 해당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여 불용되었음. ○ 또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감리비 1억 500만원을 전용·조정 등을 통해 집행하려 하였으나, 사업지연 및 국고당국 사정으로 5,300만원이 다시 이월되었음.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향후 유사사업에서 주장비 전력화 시기와 연계하여 패키지 시설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하며, 감리비 등 소요가 확인된 비목은 전용·조정이 아닌 예산편성 단계에서 반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4	유도탄저장고 공사 지연 방지를 위한 총사업비 조정 및 예산편성 절차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철매-II 성능개량 2차(2532-355)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의 패키지시설공사는 유도탄 저장고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설계단계에서 예상 공사비가 당초 공사비를 초과함에 따라 2개소에 대한 재설계가 완료('25.8)되었으나, 이 중 1개소에서 다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어 현재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를 조정 중에 있음. - 이에 따라 2025년도 시설공사비 예산현액 33.3억원 중 7.5억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7.9억원)되거나 불용(17.9억원) 처리되었음. ○ 한편,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시설공사의 입찰이나 계약이 불가함에도 해당연도의 공사비를 편성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 절차로 보이지 않음.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총사업비 조정 완료 후 다음 연도 예산을 요구하도록 예산편성 절차를 강화하고, 유도탄저장고 공사가 추가 지연 없이 완료되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5	FMS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집행부진 개선 및 예산 편성 현실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거리함대공유도탄(2533-312)	시정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미국이 개발·운용 중인 장거리함대공유도탄을 FMS 방식으로 도입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5억 1,600만원 중 3.1%인 1,600만원만 집행함. *FMS(대외군사판매): 미국 정부가 무기수출통제법 등에 따라 우방국·동맹국 등에 정부 간 계약으로 군사물자를 유상 판매하는 제도 ○ 방위사업청은 당초 계획대로 FMS 방식으로 구매하는 경우 전력화 지연을 우려하여 2025년 국내개발을 검토하였으나, 국내개발 불가로 다시 FMS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획득방식 재검토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중기신규 소요결정('21.7) 시에는 유도탄 인도 시기가 2024년으로 예상되었으나, FMS 방식으로 도입할 경우 인도 시기가 10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2024년 도입→2034년 도입).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FMS 방식의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추진 저해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계약 일정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6	**전문계약직 처우수준, 예산편성 기준의 재검토 개선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방위력개선사업 15개 세부사업 중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사업 등 10개 세부사업의 실집행률이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방위사업청은 연구원 채용지연 등 부족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전문계약직의 채용조건(보수, 근무환경, 인력부족)에 대한 연구원의 불만족, 과제 종료 임박에 따른 이직 등으로 분석하고 있음. ○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연구개발 과제별 정원, 전문계약직 처우수준, 관련 예산의 편성기준 등을 재검토하여 전문계약직 부족 및 예산의 불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 요구한 바 있음.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전문계약직 미충원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 및 과제 수행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제별 정원, 전문계약직 처우수준 등을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7	**방위력개선비 미지급 재발방지를 위한 기획예산처와 협의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방위력개선비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2025년 12월 말 한국은행 국고계좌의 잔액 부족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약 8,036억원의 지출 필요 자금이 회계연도 내 지급되지 못하는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였음. ○ 또한, 2025회계연도에 지출결의하였으나 불용처리한 사업의 이월 충당을 위해 2026년 1월부터 전용 및 내역변경 등을 실시하고 있어, 2026년도 예산이 연초부터 국회가 확정한 당초 편성 내용과 다르게 집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자금운용 및 다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2025회계연도 방위력개선비 미지급 사태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미지급액 충당을 위한 2026년도 예산의 전용·내역변경 등이 당초 계획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예산 및 자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8	K-방산수출펀드 적기 운용을 위한 면밀한 사업관리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방산수출 투자지원(2637-311)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시 정부의 출자규모 및 펀드 조성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전제로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음에도, 방위사업청은 사업 집행 과정에서 2026년 이후 정부 출자규모 확대 방안 등을 협의하면서 펀드 운용사 모집공고가 2025년 8월로 늦어지는 등 사업 일정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었음. *동 사업은 2025~2027년 정부재정 800억원 출자와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총 1,860억원 이상의 자펀드(3개)를 조성할 계획이며, 1차연도 자펀드는 2026년 6월 660억원 규모로 결성되어 투자가 개시되었음.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성장세 지속 및 방산생태계 저변 확대라는 펀드 조성 취지를 고려하여 후속 자펀드 결성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조성된 자금이 적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9</td><td rowspan="3">소송 패소에 따른
국고 손실 감소
대책 강구</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기타행정지원(7036-304)</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방위사업청</td></tr>
<tr><td>지적사항</td><td>○ 방위사업청은 최근 5년(2021~2026.7.) 동안 총 305건의 소송을 진행하였음. 연도별 소송제기 건수는 2025년에 소폭 감소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임.

<table>
<tr><th>구분</th><th>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h>2025년</th><th>2026년</th></tr>
<tr><td>청 제소</td><td>105</td><td>15</td><td>19</td><td>17</td><td>22</td><td>24</td><td>8</td></tr>
<tr><td>청 피소</td><td>200</td><td>42</td><td>31</td><td>38</td><td>46</td><td>21</td><td>22</td></tr>
<tr><td>계</td><td>305</td><td>57</td><td>50</td><td>55</td><td>68</td><td>45</td><td>30</td></tr>
</table>

○ 패소에 따라 5년간 약 2,442억원이 패소금액으로 집행되어 국고 손실이 발생하였음.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h>2025년</th><th>2026년</th></tr>
<tr><td>패소건수</td><td>77</td><td>18</td><td>11</td><td>10</td><td>8</td><td>25</td><td>5</td></tr>
<tr><td>패소금액</td><td>244,172</td><td>58,766</td><td>65,088</td><td>1,956</td><td>70,585</td><td>737</td><td>47,040</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방위사업청은 패소한 사건의 원인분석을 토대로 관련 규정 개정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국고 손실을 방지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방위사업청 청사 신축사업 적기 완료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사신축(7036-305)	시정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23~'28년, 총사업비 2,452억원)은 3년 연속 대규모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25년 이월액의 90%인 공사비 166억 5,000만원은 착공 지연('25.12월)으로 연말(12.26.)에야 선금 지급이 요청되어 연내 지출되지 못함. *이월액(예산현액 대비): ('23년) 110억원(97%)→('24년) 275억원(92%)→('25년) 184억원(37%) ○ 동 사업의 누적 집행액은 338억원으로 총사업비의 13.8%('25년말)에 그치며, 추가 지연요인 발생 시 2028년 준공 목표 달성이 어려울 우려가 있음. ○ 또한, 탈락업체 설계보상비를 기본조사설계비에 편성하지 않고 2년 연속 연말에 공사비에서 세목조정하였음. *세목조정액: ('24년) 21억 7,600만원, ('25년) 13억 2,700만원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2028년 준공을 위해 착공·대금 지급 일정 관리 및 지연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이월을 방지하고, 향후 유사 사업 예산 편성 시 설계보상비를 기본조사설계비로 직접 계상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1</td><td rowspan="3">국방과학연구소
기술료 사용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기타재산이자외수입(54-547)</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방위사업청</td></tr>
<tr><td>지적사항</td><td>○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술료를 법령상 지급대상이 아닌 재직 중인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음.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는 기술료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 또는 기술의 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2023년</th><th colspan="2">2024년</th><th colspan="2">2025년</th><th>2026년</th><th rowspan="2">합계</th></tr>
<tr><th>1차</th><th>2차</th><th>1차</th><th>2차</th><th>1차</th></tr>
<tr><td>간접기여자
기술료 집행금액</td><td>980</td><td>1,159</td><td>1,159</td><td>1,296</td><td>1,485</td><td>1,458</td><td>7,537</td></tr>
</table>
○ 또한, 기술료의 40% 이상을 연구개발 재투자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기술료 수익이 연구개발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음.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는 징수한 기술료의 40% 이상을 연구개발 재투자에 사용하도록 규정</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방위사업청은 기술료 징수·사용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료 내용을 포함하는 등 실효적인 통제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2</td><td rowspan="3">위약금 부과·징수 체계 개선</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위약금(57-572)</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방위사업청</td></tr>
<tr><td>지적사항</td><td>○ 방위사업청 위약금은 수납액을 상회하는 과오납 반환으로 인해 순수납 실적이 부진한 상황임.
<table><tr><th>회계연도</th><th>2023</th><th>2024</th><th>2025</th></tr><tr><td>수납률
(수납액/징수결정액)</td><td>△11.8%</td><td>△7.0%</td><td>△8.7%</td></tr></table>○ 2025회계연도 과오납 반환금은 989억 7,700만원으로, 부과한 지체상금이 소송에서 업체 귀책사유 불인정·법원 감액 등으로 대폭 감액된 데 따른 것인바, 최초 부과 단계의 귀책사유 판단 및 계약 해석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됨.</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방위사업청은 현재 진행 중인 위약금 소송 등에서 법적 타당성을 적극 분석·대응하여 미수납 채권을 회수하고, 과오납 반환 사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방산업체의 귀책사유 판단 및 계약 해석에 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할 것</td></tr>
</table>

3. 부대의견

○ 국방부는 GDP 대비 3.5%의 국방비 확대 방침과 관련하여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규모 확대에 그치지 않도록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전략적 재원배분 방안을 강구한다.

○ 국방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연말 국고자금 소요 집중에 따른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금배정·지출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미지급으로 인한 거래상대방 피해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국회에 보고한다.

○ 국방부는 다음연도 완공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요청 기한을 준수하고, 당해연도 완공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을 최소화하여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한다.

○ 육군은 동원참모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원/예비군 분야 감사를 육군 감찰실에 별도 조직을 편성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국방부는 국방부 직속 부대 등에서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 국방부(육군)는 육군 장병 등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시설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